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방위원회 소관)

2026. 4.

대 한 민 국 정 부

'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 황

(단위 : 건)

국 방 위 원 회					
계	국방부	합참	육군	해군	공군
275	93	15	28	12	18
해병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병무청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1	11	24	49	9	2 / 3

□ 국방위원회 소관 : 275건

가. 국방부(93건)

1. 군 의료체계의 기능 약화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군의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인력 · 시설 · 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5

2. 인력부족 상황에서 유휴시설 관리 부담이 일선 간부, 병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유휴시설 정리 및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6

3. GOP 급여 소령 · 대위 간 급여 역전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군인 가족 일자리 · 교육 · 돌봄 지원체계를 포함한 병영 처우 전반을 점검하여 조직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수 · 수당 · 가족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 ····· 6

4. 주한미군의 공여지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군사적 필요성이 낮은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위하여 노력할 것 ····· 7

5.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조사 및 치유 비용분담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7

6.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 유지·인력 확충 및 임관율 개선을 위해 특수직무수당·교육·경력 인정 등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8

7.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을 위해 공통 운영·정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기체계 전과정(소요-획득-전력화-폐기)을 통합 조정하는 국방부 컨트롤타워 기능과 범정부 연계체계를 강화할 것 ····· 9

8. 군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기술·관리적 조치를 강화하여 병영 내 불법도박 근절대책을 추진할 것 ····· 10

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미순직 처리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 ····· 11

10. 민간위탁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업체 선정·계약 단계에서 국내산 식재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관리체계 및 기본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할 것 ·· 12

11. 취사장 폭발·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조리기구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각군 취사 시설의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13

12. 군인공제회 렌트 차량 계약 종료·연장 과정과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계약 지연·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운행일지·하이패스 기록 등 차량 운영 기록관리 및 옵션 선정·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 ····· 14

13. 방첩사령부가 인지전을 수행하는 것이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 15

14. 전장망 · C4I · 데이터센터 보호를 위해 DR(재해복구) 체계에 대한 예산 확충을 포함하여 보강 및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 ····· 16

15. 노후된 재외 무관부의 대도청 장비 교체와 신규 장비 확보를 추진할 것 ····· 17

16. 간부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18

17. 군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10년간 자살 비율이 높은 원인을 포함하여 자살 원인분류 및 Ⅲ형 순직 기준 등을 전면 재정비할 것 ····· 19

18. '도움간부 · 배려간부' 제도의 운영실태와 자살사례를 점검하여 고위험군 장병이 위험 환경에 재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 21

19. 국군복지단이 군납 계약 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벤더사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제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2

20. 12 · 3 불법계엄 동원 장병에 대한 2차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23

21. 특정 군 및 사관학교 출신 편중과 국방대 총장 문민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에 대한 균형인사를 강화할 것 ····· 24

22. 군 사격장 전반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 24

23. 군 주둔지 · 시설 위치 · 배치 등 군사기밀이 상업 · 오픈소스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 ····· 25

24. 장기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로카우스 호텔의 중장기적 재정 문제 해결과, 장병 및 예비역의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26

25. 군 수당이 '주먹구구식'으로 신설 · 증액되면서 14종 60가지로 세분화된 만큼, 과거에는 필요했으나 현재는 불필요한 수당을 포함해 수당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위험도, 근무지 여건, 자격, 계급, 복무기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 · 직군이 등장 시에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당체계를 운영할 것 ····· 27

26. 구글이 독도박물관을 '김일성 기념관'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와 같이 글로벌 플랫폼의 지명 誤표기는 국가 이미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 ····· 28

27.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고정밀 지도반출 여부 결정 시 안보를 중요 고려요소로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 ····· 29

28.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관리하는 자원관리체계는 시스템 복구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서버 방식으로의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29

29. 군무원 대상 정책 및 복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0

30. 군관사 및 간부 숙소 대안인 민간주택 입주 시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 기준(5인 이하 가구도 지원 가능)을 명확히 하달할 것 ····· 30

31. 드론센터를 통한 대규모 인력양성 계획을 교육 인원·강사·시설·예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추진할 것 ····· 31

32. 군인의 교육과 주거 지원 등 복지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 32

33. 새로운 부대·사령부 창설 시 기존 야전부대 단순 인력 차출을 지양하고, 정원·조직 재조정을 통해 야전 전투력 보호 및 초급간부 전역·사기 저하 요인 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것 ····· 33

34. 상비예비군·퇴역 군인 등의 숙련인력 재활용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34

35. 저연차 군무원의 이탈 원인을 분석하여,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을 국방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명확히 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5

36. 군 병력 감소에 따른 비전투분야 업무 아웃소싱과 연계된 제도 정비 요소 등을 검토할 것 ····· 36

37. 국군의무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정원·예산·교육 및 실습 등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 ····· 36

38. 특정 시기 전문약제병 모집 경쟁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37

39. 불용군수품 매각 경쟁계약 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감정평가와 매각가의 현실화, 시가 형성 물품에 대한 개별 매각 방식으로의 전환, 시가 미형성 물품에 대한 총액 계약 방식으로 전환, 실제 수량을 바탕으로 한 매각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38

40. 군무원 임무의 특수성과 전시 임무를 감안하여, 군무원 채용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39

41. 여군 및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상시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0

42. 병사 휴대폰 충전보관함 수요가 많은 육군부대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실효성 및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정식 도입을 검토할 것 ····· 41

43. 법무부와 연계하여 장병 무단 출국 사전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단 출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42

44.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GPS 기능 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외부앱 기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보안체계를 마련할 것 ····· 43

45. 광명 시흥 신도시 추진과 관련 군사철도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44

46. 민간위탁 업체가 사후정산 시 면세제품인 식자재 원품에 대해 부가세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국방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45

47. 병사들은 간부와 같이 보충 피복 선택권이 없으므로 전산 피복비 형태로 보충보급 하는 방안 또는 속옷, 운동복 등은 개인이 상용품을 자율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6

48. 초급간부들의 예식장 대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쟁기념관에 야외 결혼식장 설치를 검토할 것 ····· 47

49. 미국에서는 병 출신 장교들도 장군이 된 경우가 있는 만큼,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군인으로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48

50.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한 의성 · 고성 등 시험장에서 대드론장비 등 군용장비를 개발 및 시험 절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절차는 개선할 것 ····· 49

51. 총기 관리 규정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규정 미준수로 군 총기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바, 총기관리 전반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50

52.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간 방위분담 및 전력 운용의 균형을 맞출 대책을 검토할 것 ··· 51

53. 소음이나 도비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사격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스마트 과학화 사격장 도입을 검토할 것 ····· 51

54. 주요 보안시설內 실효성 있는 영상 차단 및 보안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52

55. 군마트 제품 재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 인증절차 강화 및 민간 플랫폼 협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53

56. 국방 광대역 통합망 3공구 중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구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조사할 것 ····· 54

57. 기본 병과 통폐합, 첨단 병과 신설, 인력 운용 구조 개편을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하여 검토할 것 ····· 55

58. 합참, 국직부대 등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 준수를 위해 반기별 국방개혁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 56

59. 56사단장 등 경호가 필요하지 않은 지휘관에 배정된 특수자동차를 회수 조치할 것 ····· 56

60. 충실하고 올바른 예비군 안보교육을 위해 안보교육의 온라인 교육 운영, 국방부 자체교육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 57

61. 허위로 군수품 손망실 처리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관련 증빙 의무를 강화할 것 ····· 57

62.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장병에 대해 단기간 내 전역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책임 방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역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장병 보호·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 ····· 58

63. 식약처 고시에 따라 군 식용 얼음을 점검하고, 살균 가능한 제빙 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방부 훈령을 개정할 것 ····· 58

64. 군 장병 AI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위한 AI 교육 · 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AI기초교육을 넘어, 실제 직무와 연계된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 59

65.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급식 정책은 정책 당위성이 떨어지므로 군무원 또는 국방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 60

66. 총기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RFID,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통제 플랫폼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 60

67. 군 주거안정을 위해 관사 및 간부 숙소 확충,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에 대한 연차별 계획수립,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단가 및 주택 수당 현실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61

68. 기본급식비에서 가공품 및 원물(농 · 축 ·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 변동 현황 및 적정 급식비율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61

69.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한 군인 자녀 학교에 대한 사업을 국방부가 지원하거나, 필요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군인 자녀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62

70. 업체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요건 제한은 완화하고, 수의계약과 기한 보장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연구개발 성과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할 것 ····· 63

71. 난연소재 개발에 민간업체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64

72. 비상계엄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군의 불법적인 관여 방지를 위해 충무8000 계엄기본계획, 계엄실무편람 등 하위문서 개정을 검토할 것 ····· 64

73. 상관의 정당하고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명령에 한해 복종하도록 명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 ····· 65

74. 군의 신뢰 회복 관련,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 ····· 65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정이 미국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민 재산권 존중을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 ····· 66

76. 예비전력 발전을 위해 국방비 대비 예비전력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 ····· 67

77.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 협의에서 접점을 마련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 ····· 68

78.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포함된 군사합의를 새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69

79.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 69

80. 별내역 군 전용철도를 육로수송으로 전환이 가능한 지 임무 수행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것 ····· 70

81. 국방부가 임명권을 가진 한민고 이사장·임원의 비리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핵심 비리 관련자에 대한 퇴진 조치 및 학교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추진할 것 ····· 71

82. 예비군 부대의 총기 관리 인력 부족과 관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기 자동화 손질 · 세척 장비 도입과 민간용역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72

83. GP·GOP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헬기 · 수송차량 예산 반영 및 거점병원 연계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 73

84. 응급헬기의 실질적인 공동 운영을 위해 지휘체계 조정 권한 명확화, 무선통신망 재정비 등 운영기반 개선을 검토할 것 ····· 74

85.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상임위원회를 재개최하고 공정성 우려가 있는 노무법인 선정 및 교체 절차와 재조사 추진 여부 등 사건처리 절차를 재점검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사 및 「계약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 ····· 75

86. 급변하는 한반도 위협 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비핵화 지수를 다시 산출·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 ····· 76

87. 병 병역처분변경 심사를 총장 직속으로 하여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것 ····· 76

88. 구직휴가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인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 ····· 77

89.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위로 휴가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할 것 ····· 77

90. 군사용 무인기의 연구개발, 시험비행, 훈련 등을 비상활주로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78

91. 나형윤 증인의 전역 과정간 의무조사의결서 조작 등 행정 오류와 보상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 ····· 79

92. 평택 미군기지 공여 구역(CPX훈련장)이 지역민들의 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환 시기를 조속히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 ····· 80

93. 특정 화장품 업체의 국군복지단 납품 과정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국군복지단의 화장품 군납업체 선정 심사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81

나. 합동참모본부(15건)

1. ‘23년도 계엄실무편람 개정으로 비상계엄 시 국무총리 및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회에 대한 ‘통고’가 ‘통보’로 변경된바, 해당 개정내용을 원상 복귀할 것 ····· 85

2. 서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조성할 경우 레이다 난반사, 소음 · 진동 발생 등으로 아군 장비 운용 및 전투 실험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작전성 검토를 실시할 것 ····· 85

3. 미국 등에서 초소형 SAR 상용 위성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 군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정찰 전용 위성 사업에 대해 전환적인 접근을 할 것 ····· 86

4.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감축 · 재배치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는바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군사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평가)하고 미측과 조율해 나갈 것 ····· 86

5. 훈련 위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전 전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설계 · 수집 · 분석하고, 이를 우리 전투체계에 반영할 것 ····· 87

6. 드론 전력 보강을 위해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가 중심이 되어 방위사업청과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연되고 있는 드론 도입 · 전력화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 ····· 88

7. 12·3 내란 등 군령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일벌백계할 것 ····· 88

8. 북한의 신형 무기의 전력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 ····· 89

9. 전략사령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개념을 체계화할 것 ···· 89

10. 국군심리전단이 민간단체로 위장하여 북한에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부족한바 이를 조사할 것 ····· 90

11. GPS교란 대응능력 향상 훈련에서 3개 기관 간 정보 연동이 미흡한 문제가 확인된바, 소액 예산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인 만큼 중기 계획이 아닌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즉각 보완할 것 ····· 90

12. 중동정세 불안에 대비해 해외파병 부대 대비태세 및 군사적 지원 태세를 잘 유지할 것 ····· 91

13. 비상계엄 관련 드론사가 정상적인 군령(軍令) 및 작전 지휘 계통을 거쳤는지 조사할 것 ····· 91

14. ISR 및 해상 정찰 자산이 대중국 견제 임무로 일부 전용된다면 대북 방어선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용방지 및 보충계획 등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할 것 ····· 92

15. 경계작전 개념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서북도서 과학화 경계 강화 부분을 검토할 것 ····· 92

다. 육군본부(28건)

1.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하여 각 군이 체계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육군에서도 통합사관학교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마련할 것 ····· 95

2. 3사관학교 생도들의 안보견학·중요시설 방문 시 교육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해 방문 장소를 신중히 선정·조정할 것 ····· 95

3. 사관학교 교수에 극단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인사가 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 ····· 96

4. 군(육군) 법무관 인사에 불공정 요소가 없도록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 · 보완할 것 ····· 96

5. 정책 부서의 소령 편제를 재검토하고 소령 경력관리 모델 지침이 진급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침으로 피해입은 대대급 소령에 대해 향후 진급 선발 시 고려할 것 ····· 97

6. 군의 총기 · 탄약 관리체계를 즉시 점검하고,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군 실탄 분실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 · 회수 및 관리 허점 보완을 실시할 것 ····· 98

7. 총기 불출을 위해 필요한 5개 무기고 열쇠가 따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1개 통합보관함에 동시에 들어 있는 등 부적절한 총기 보관 방식을 개선할 것 ····· 99

8. 대대 인원은 사단에 파견되고 사단 인원은 군단에 파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파견에 따른 인력 비편제 운영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100

9. AI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를 구축하여 경계작전 투입 병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AI · 드론으로 대폭 보강된 전방 경계 체계(2개 사단 중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01

10. 후방지역 군사시설 경계작전에 PMC를 활용한 민간용역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103

11. 제대별 지휘관을 보좌하는 인력편성 수준을 재검토하고, 간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104

12. 육군 ROTC 학군장교의 복무기간(2년 4개월)이 타 군 대비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을 검토할 것 ····· 105

13. 육군 경비정의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조하므로 노후 육군경비정을 대체하고 고속기동능력과 주 · 야간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한 신형 육군경비정을 확보할 것 ····· 106

14. 회전 관성력 탄약의 K-201 유탄발사기 적용시험(K-201 실사격평가) 및 기능검증을 신속히 실시하고 새로 개발된 탄약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것 ····· 107

15. 먼저 구축된 과학화예비군훈련장도 현재 구축 중인 과학화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개선할 것 ····· 108

16. 병력감축에 따른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109

17. 육군항공 숙련 조종사 유출을 막기 위해 항공수당 · 연장복무수당 등 보상체계를 포함한 처우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 110

18. 대대장 · 중대장 · 행보관 · 주임원사 등 육군 주요 직위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해 전출 시 유급휴가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 111

19. 부사관 퇴직 시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12

20. 파주 포병부대 폭발사고(피해 현황 · 사고원인 · 저장수명 초과 여부 · 처리대상 탄약 등)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탄약 안전관리 위반 · 탄약고 노후화 문제와 폐기시설 부족 및 폐기탄 분해 기술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탄약폐기 ·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113

21. 관사 · 간부 숙소의 부족 및 노후화 문제와 육군의 관사 리모델링 물량 · 예산 부족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115

22. 국비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급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 116

23. 육군 불용군수품 매각 경쟁입찰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 후 수정계약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것 …… 117

24. 군 장병 전용 사이버 도박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도박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117

25. 현재 베레모 · 전투모 중복 착용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입이 10억이 넘어가고, 베레모 제작 가능 업체가 한 곳뿐이라 조달 지연이 빈번하고 품질개선이 어려우므로, 베레모 폐지를 검토할 것 …… 118

26. 독립군 · 광복군 및 신흥무관학교 출신 육사 졸업생에 대한 연구 성과를 육군사관학교 정과교육에 반영할 것 …… 119

27.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이전 및 통폐합되는 대전광역시 5개소와 충남 금산구의 지역별 예비군 훈련장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 ····· 120

28. 장병의 생명과 임무수행에 관련된 화생방 보호장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121

라. 해군본부(12건)

1. 군 법무관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군 법무관 제도 재시행, 민간 장기 법무관 임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26

2. 함정 부사관(특히 하사) 충원율이 저조한바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 ····· 126

3. 해군 부사관 함정근무 기피에 대응하여 승선 장병 삶의 질 개선 사업(함정 통신장비 설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것 ····· 127

4. 전문특기 중심 보직 편중을 완화하고, 병과 특성에 맞춘 기능별 인사 · 보직 운영을 강화하여 내부 현안 해결과 전군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 ····· 127

5. 군인의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군인기본법」 제16조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128

6. 중국 함정이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왔을 때 비례성의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 128

7.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군사기지로 확장 ·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국방부, 외교부, 해경 등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할 것 ····· 129

8. 해군 호텔은 관리위탁방식 재개정을 포함하여 수익비율·영업 운영비 유용 등 부적절 운영 문제에 대한 조치를 병행할 것 ····· 129

9. 해군을 중심으로 해군 맞춤형 군사회복지 시범사업을 검토할 것 ··· 130

10. 전 장병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 131

11. 타군 대비 해군의 가혹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것 ····· 132

12. 함정 탑승 장병 및 해병대 장병의 미래도전휴가는 육군, 공군과의 형평성 문제, 30일 전 전역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검토할 것 ····· 133

마. 공군본부(18건)

1. 포천 지역 오폭 사고 등 공군 관련 일련의 사건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군 기강 확립을 점검할 것 ····· 135

2. 공군 수송기가 군수물자 수송이라는 본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근 증가하는 군용 수송기의 휴양 목적 탑승에 대해 세부 목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정기공수 운영 기준을 정비할 것 ····· 136

3.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휴가 등으로 자연 분리된 경우라도 소문 유포, 탄원서 강권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 역시 원소속 부대에서 분리되도록 할 것 ····· 137

4. 2025년 공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문에 '각종 회의 · 모임 등 다수 인원 집합 시' 등 시기 표현이 불명확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바, 공문에 시기 · 주기 ·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전 장병 교육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체계화할 것 ····· 138

5. 故 이예람 중사 추모비 건립 등 예우방안을 마련할 것 ····· 139

6. 불법 드론 조종자 탐지 장비 도입과 대드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철통 같은 영공 방위를 실현할 것 ····· 140

7. KF-16 성능개량 사업 시 예산 부족으로 HMD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141

8. KF-21 전투기의 미사일 탑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작전성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142

9. 조종사 유지비행이 전투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점검할 것 ····· 143

10.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명예와 자부심을 부각시키는 등 조종사 유출 방지 대책을 보완할 것 ····· 144

11.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군의 스텔스기 탐지·추적 능력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노력할 것 ····· 145

12. 지속적인 무인항공기 조종사 확보를 위해 공정한 보상과 합리적 수당체계 확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146

13. 북한의 기습공격 및 저고도 침투전술에 대비한 방공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장기운용 중인 장거리 항공통제 레이다를 적기에 교체 할 것 ····· 147

14.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 주변국 방공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위해 다양한 방공위협 및 복합상황 모사가 가능한 차세대 전자전 훈련체계의 적기 교체를 추진하되, '31년 전력화 목표에 따른 훈련 공백을 메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 ····· 148

15. 추경에 반영된 기지 전력망 비상전환체계 보강사업은 '25년~27년 다년도 사업인데, 당해년도에 종결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한다는 추경안 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149

16. 비행장 내 비행 안전구역에 설치되어있는 시설 통제 대책을 마련할 것 ····· 150

17. 공군 수송기의 일본 비상착륙 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비행 허가요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체크리스트 운용, 각종 규정 준수 강조, 국내 훈련 시에도 국제표준용어 사용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 ··· 151

18. 위규비행 항공기에 대한 식별체계 및 절차가 미흡하므로 식별요격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 ····· 152

바. 해병대사령부(11건)

1. 서북도서 해병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MRI 기기 구매 등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할 것 ····· 155

2. 해병대의 준4군체제 독립과 관련하여 13개의 권한 위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156

3. 부사관 충원율 감소로 인해 해병대 본연의 임무인 작전 훈련, 교육 훈련 수행이 제한되고 있는바, 해병대는 부사관 충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157

4. 교육생들의 안전과 산악전훈련의 완성도를 위해 산악전훈련장 시설 개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158

5. 서북도서 전문상담관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59

6. K-2 탱크 계열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방어력도 보완할 것 ····· 160

7. 해병대를 상징하는 상륙돌격장갑차 KV-Ⅱ 사업이 지연되어 주력 무기의 노후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 ····· 161

8. 추가 운용인력 증원 없이 현 해병 항공교육대 자체 운용병력으로도 해병대 조종사 교육소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용 헬기 도입을 검토할 것 ····· 162

9.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필수 방공전력을 보강하여 상륙작전 지원능력 약화를 방지할 것 ····· 163

10. 구 해병대사령부 본관을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것 ····· 164

11. 전 해병대사령관의 석좌교수 연임 여부 협의 당사자로서, 12월 말까지 김계환 전 사령관의 석좌교수 연임에 대해 단국대에 '연임불가' 입장을 전달할 것 ····· 165

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11건)

1. 북한 신형 방사포 및 군집 드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169

2. K1E1 전차 성능개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170

3. AI 기반 경계작전체계(LIDAR) 기술 관련 주요 소요와 관련하여, 소요군인 지작사와 육군·합참 간 소요제기 및 결정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171

4. 전방지역 군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처우개선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2

5. 취사장 가스시설에서 화재·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병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바, 인덕션 조리 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 ····· 173

6. 전방에서 수행되는 불모지 작전이 해당 지역과 무관한 타 지역 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접경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구조의 개선을 검토할 것 ····· 174

7. 최근 6년간 GP·GOP 부대에서 보안 위규가 다수(71건) 발생했으며, 보안 위반 사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일관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향으로 인해 보안 위규가 반복되고 있는바, 징계기준의 강화 및 보안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것 ····· 175

8. 최근 2작전사 예하 부대에서 사격훈련 중 도비탄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만큼, 총기·실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 ····· 176

9. 최근 집중호우로 군수품 피해가 다수 발생한바, 자연재해에 대비한 군수 · 장비 관리 및 복구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 177

10. 장병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 구조체계 개편 및 응급구조사 충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 ····· 178

11. 탄약 관리에 있어 장부 허위기재, 요식 점검 관행을 근절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79

아. 병무청(24건)

1. 병무청의 신체 치수 정보가 각 군에 제대로 전달되어 신병들이 입영 초기에도 적정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183

2. 병역이행자 예우제도가 지자체별 편차가 크고 적용 기준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184

3. 사회복무요원의 근태기록을 복무 기관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185

4. 이중국적을 가진 병역의무대상자 중 국적을 포기하고 40세가 넘어 입국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 186

5. 병역 면탈 조장 범죄 수사 등을 위한 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증원 및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187

6. 동원훈련 응소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188

7. 사회복무요원의 시설 이용자 가혹행위 방지를 위하여 복무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189

8. 지방이양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가 장기대기 사유 병역 면제 인원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90

9.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부적합한 업체가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및 점검을 강화할 것 ····· 191

10. 병무청 보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담조직 상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192

11. 상근예비역 제도, 귀화자, 탈북주민 병역면제 제도, 여성 복무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에 대응할 것 ··· 193

1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병역 면제자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95

13. 대체복무제도 복무기간 단축, 복무기관 추가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96

14. 예술요원 편입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와 전통대회에 편중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197

15.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방안을 마련할 것 ····· 198

16.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대상 복무지도교육 미이수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것 ····· 199

17. 정신질환 사유 판정자 중 속임수를 사용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 200

18. 예비군 소집 관련 행정업무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 ····· 201

19.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한국어 소통 가능 외국인 군 복무 후 시민권 부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202

20. 정신질환 악용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203

21. 해외동포의 병역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한 병역 이행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204

22. 병역면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 ····· 205

23. 병역명문가 선정에 따른 혜택이 지자체 따라 상이한 점은 문제가 있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 206

24. 잠복결핵 양성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 ····· 207

자. 방사청(49건)

1. AI무기체계는 데이터 확보와 학습이 중요한 체계로 기존 획득절차를 동 무기체계의 성격에 맞게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211

2. AI무기체계는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데이터 축적 등 알고리즘 고도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212

3. AI 무기체계 개발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애자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범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할 것 ····· 213

4. 신속획득 제도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군 소요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214

5. 현재 AI·드론·우주·사이버 영역에서 새로운 획득방식 도입 및 보완 방안을 강구 할 것 ····· 215

6.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4)와 국방부 내부감사(2023)에 따르면 '신속획득절차' 확대 시 사업 실패 가능성이나 예산 낭비 위험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 ····· 216

7. 선도적 국방우주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찰 및 감시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미국 우주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을 노력할 것 ····· 217

8. 자폭 드론의 적극적 예산투자, 시험평가체계 구축, 조기 전력화 로드맵 수립, 전용 시험장 확보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 218

9. 부정당 거래는 K-방산 신뢰성과 국가브랜드에 악영향을 주므로 부정당 비리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실히 할 것 ····· 219

10. 현재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완성형 사업도 향후 진행할 예정이므로 두 사업에서 연동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220

11.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중 UH-60 헬기 화재진화장비 사업과 같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221

12. 군단정찰용UAV-II Block-1사업의 시제기가 모두 파손되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222

13. 무기체계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223

14.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방산업체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전략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24

15.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업체비축'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정부비축'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방산업체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 등을 정비할 것 ····· 225

16. 특수침투정 사업은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31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226

17.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이 성능확인 관련 지연되고 있는데, 후속사업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능확인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 227

18. 소요군에 인도된 이후 사용자 불만 제기 전까지는 방위사업청의 국내구매사업 대상인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소요군의 성능확인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28

19. 2026년 3축 체계 예산을 약 22% 증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 준비 및 관리를 강화할 것 ····· 229

20.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절충 교역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 230

21. 신속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종결정 평가계획 수립을 명확히 하고, 국가공인기관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31

22. 환리스크 대응을 위해 업계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것 ····· 232

23.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데, 국방사업들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 ····· 233

24.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예산 300억원 삭감되었는데, 작전요구성능(ROC)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ROC에 따라 AI기술을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적용방안 등을 검토할 것 ····· 234

25. 배터리 안보를 위해 표준화 규격 추진 및 군용 배터리의 국산 조달과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것 ····· 235

26.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A gain) 프로젝트나 T-50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체결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236

27.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237

28.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방산 중소기업들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보다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할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238

29. 폴란드 등 일부 국가의 초대형 단일 계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주요 수출국의 정책변화나 지정학적 변수 발생 시 국내 방산업계 전체가 휘청일 수 있으므로 방산 수출국의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 ····· 239

30.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하므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입체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240

31. 방산기술혁신펀드는 적극적 투자와 신속한 자금 공급이라는 펀드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질 없는 투자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 ··· 241

32. 현재 구축함은 해외에 수출 전례가 없는데, 국내 기술력을 결집해 수출연계형 모델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242

33.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의 전례를 참고하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43

34. K-2전차 등 방산물자에 희토류 사용하는데,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일정 물량을 비축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할 것 ····· 244

35. K-9 등 수출 무기에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45

36.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탐지 시스템 구축 현황 파악 후 소관 규정 관리기관(방첩사, 국정원)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246

37. AI시대를 대비하여 국방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 방산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방산 클라우드의 체계적 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 247

38. 방산 클라우드 사업은 현재 「방산보안업무훈령」과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관리 지침」에 근거해 추진되는데, 방산업체 등과의 협업 등을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248

39. 방산클라우드 사업을 국방 R&D·정보화 예산과 연계하거나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249

40.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협력업체라도 방산 공급망에서 비중이 큰 경우에는 방산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노력할 것 ···· 250

41.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는 방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51

42. 현행법상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렴 서약서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하므로 청렴서약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거나 업체 명의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252

43. 인도네시아와 북한이 방산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KF-21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253

44. 2023년 기준 80억 넘게 방위산업진흥회에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방위산업진흥회의 방만한 운영과 내부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254

45. 선진국의 국방우주체계를 따라잡기 위하여 예산과 인원 확보에 노력할 것 ····· 255

46. 블록화되고 있는 유럽 방산분야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컨트롤타워와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을 검토할 것 ····· 256

47.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일회성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금 마련하여 제도적 유연성과 재정적 지속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57

48. 방위산업 분야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부실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258

49. 정부의 지역공약과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이전 및 통합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을 보고할 것 ····· 259

차. 국방과학연구소(9건)

1. 국방과학연구소는 미활용 특허를 정리하고 기술이전 및 무기체계 적용 등 실질적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63

2. 국방연구개발 시험장 이용 애로사항 중 1순위는 시험평가 관련 기관 협조의 어려움(사전 예약 등), 2순위는 시험평가에 적합한 시험장비·시설 및 시험장소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 264

3.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등이 공동기술개발을 한 후 기술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소유권이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265

4.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사격 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상풍력발전 조성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와 조정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 ····· 266

5.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신속 사업의 소요기간과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의 근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267

6. 감사원의 무인기 관련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연구개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징계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할 것 ··· 268

7. 고성능 무기체계, 신규 무기체계 시험장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 협력을 추진할 것 ····· 269

8.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 특수조건을 개선하도록 표준지침 개정 또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270

9. 시험평가 과정에서 연구원이 잠수함과 비행기 탑승 시 위험수당 인상을 검토할 것 ····· 271

카. 국방기술품질원(2건)

1. 국방 AI의 예측 불가능성은 실전 상황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향후 AI 적용 무기체계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은 AI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국방인공지능 안전 연구조직'등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275

2. 탄약시험장 인프라 부족 및 해외·해상 시험의 한계(기술 유출, 비용 상승, 시험 제한 등)를 고려하여, 국방기술품질원 고성능 탄약 전용 시험장 구축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을 추진할 것 ····· 276

타. 국방기술진흥연구소(3건)

1. 정부가 강조하는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업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44.5%로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279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단계적 독립법인화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280

3.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서 심사기준인 '군 운용성 향상' 평가 항목 추가 이후 부품국산화 과제선정에서 탈락한 단종부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81

국방위원회 소관

국 방 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군 의료체계의 기능 약화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군의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인력·시설·진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 內 **숙련 의료인력 확보** 및 군의관 **인력운용 효율화** 추진(진행) • 민간 숙련 의료인력인 **전문임기제군무원(가급 의사) 채용정원 확대** * ('25년) 36개 → ('26년) 48개 • 군의관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26년 군의관 인력운용지침」 하달**('26.1월) - 전문의는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부대에 배치하고, 일반의는 여단·대대급 이하 배치 - 군의관 배치는 진료실적, 군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직위부터 보직 ○ **격오지 장병 진료여건 강화**(진행) • 격오지(함정, 잠수함 포함) **원격진료체계 확대** * ('25년) 168개소 → ('26년) 197개소 예정 • 진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진 셔틀버스 증편** * ('25년) 93대(88.5억원) → ('26년) 101대(111.5억) • **격오지 민간 위탁진료비 확대** - 지원대상에 '1차 전문진료 제한 부대' 추가 ○ **군 응급후송체계 강화**(진행) • 응급환자 신속 후송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신고접수, △현장 응급처치 지도, △후송 편성, △관계기관 상황 공유 등 주요기능 통합 운영 •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운영 - △응급환자 이송 지원, △군·소방 합동훈련 등 추진 ○ 의대생 현역병 입영 선호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군의관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실시**(~'26.3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숙련 의료인력 확보, 장병 진료여건 강화 등 지속 추진 ○ 군 의료체계 기능 유지를 위한 과제 지속 발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인력부족 상황에서 유휴시설 관리부담이 일선 간부, 병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유휴시설 정리,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부대 이전사업 추진 시 기존시설 철거를 동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유휴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부대이전 등으로 활용이 종료된 유휴지는 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 향후 유휴지 발생 시 조속히 시설본부로 인계되어 군의 관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사용부대 등에 안내하였음.
3. GOP 급여 소령·대위 간 급여 역전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군인 가족 일자리·교육·돌봄 지원체계를 포함한 병영 처우 전반을 점검하여 조직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수·수당·가족 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소령 직책수행경비** 신설 (완료) • 부서장 5만원, 단독직위 3만원 ○ 특수업무수당인 **중요직무급**을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과 **병급 가능**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 • '26년부터 중요직무급과 특수지근무수당을 함께 지급 **나. 향후 추진계획** ○ 경계부대 영관장교 처우개선 추진 • 현재 2~6만원인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을 영관장교는 10~12만원 지급토록 추진 • 현재 봉급의 9%를 지급 중인 관리업무수당을 경계부대 영관장교에게는 추가 지급율을 반영토록 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주한미군 공여지 실태를 정밀조사 하고, 군사적 필요성이 낮은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위하여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주한미군 공여지 내 군사적 필요성이 낮아 반환하기로 한 80개소 대상기지(YRP, LPP 등) 중 69개소 기지(14,275만㎡)가 반환완료 되었음. ○ 용산기지 잔여구역 포함 11개소 기지도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5.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및 치유 비용분담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및 치유 비용분담 협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이 되는 업무로서, 필요 시 국방부도 적극 협조하겠음.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및 치유 비용에 관한 협의는 SOFA 환경분과위원(미측 : 주한미군공병참모, 한측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이 실시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 유지·인력 확충 및 임관율 개선을 위해 특수직무수당·교육·경력 인정 등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이버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사이버 전문직위를 선정하고 관리*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25.9.8.)을 통해, 사이버분야 장기보직 근거 마련 ○ 사이버 '역량강화비'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완료)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량강화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역량강화비 **지급기준, 지급액 등 역량강화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이버 기술전문직위 선정 : '26.6월 ○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개정* : '26.12월 * 사이버역령강화비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 ○ '사이버 역량강화비', '사이버 직무역량강화 교육' 관련 예산 반영 : '26.12월 ○ 임관율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 등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 '27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을 위해 공통 운영·정비·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무기체계 전 과정(소요-획득-전력화-폐기)을 통합 조정하는 국방부 컨트롤타워 기능과 범정부 연계체계를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국방부는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을 위해 범정부와 연계하여 획득·운영 전 과정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체계로 재편을 완료하였음 ○ **(국방부 조직개편)** 국방인공지능기획국 및 차관보 신설('26.1.2.) • 기존 첨단전력기획관실을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확대 및 개편 • 전력·군수·정보화 등 국방 AI 도입이 필요한 전 영역 관할을 위해 차관보 신설 ○ **(AI획득절차 신설)** 국방인공지능법과 S/W중심 무기체계 획득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 발의 완료 • 국방인공지능법 : 1.27. 입법 발의 • 방위사업법 개정(안) : 2.13. 입법 발의 ○ **(범정부 연계체계 강화)** 중기부, 과기부, 방사청, 각 군 등과 협력하여 민간이 혁신적인 기술과 장비를 군에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함으로써 민간의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하는 '한국형 피치데이' 신설, 운영 • 제1회 개최 : 2. 24. / 육군 교육사령부 (완료) - 국방부·과기부·중기부 공동 주최 - 항우연, 기계연, 코메스타 등 25개 산·학·연 참여 • 제2회 개최 : 3. 31.(화) / 36사단 (완료) - 국방부, 방사청, 국과연, 국기연, 육군 등 참석 - 네드솔루션스 등 13개 업체 참여 * 제3회 개최 : 5월 말(예정) / 55사단 **나. 향후 추진계획** ○ AI, 데이터 등 국방첨단체계 분야 재원 확대 및 법령, 제도개선 지속 (하위법령 구체화) ○ 범정부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피치데이' 정례화 (분기 1회 이상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군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기술·관리적 조치를 강화하여 병영 내 불법도박 근절대책을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 도박문제 게이트키퍼 교육 시행 및 불법도박 예방콘텐츠 제작·배포 등 도박예방 교육 강화('25년) ○ 도박문제 장병 조기 식별 및 관리를 위해 병 심리검사(동료보고식)에 도박 관련 문항 추가('25년) **나. 향후 추진계획** ○ 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박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민·군 협의체 구성(~'26. 6월) * 국방부, 각 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군 장병 휴대전화 유해 사이트 차단 앱 도입 검토(~'26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미순직 처리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미순직 처리자 약 3만 8천명의 명예회복과 국민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재조사 방안 정책 연구용역 시행 • 연구주제 : △ 3만 8천명의 재조사 당위성과 재조사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예상 및 해결방안 제시, △ 3만 8천명의 재조사 방법과 이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 제시, △ 재조사 기간 단축방안과 공신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연구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연구기간 : ’25. 9월 ~ ‘26. 1월 (4개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직 설치, 시스템, 근거 법 제도 개정 등 국방부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방안 마련 검토 중 • 연구용역 결과(요약) - **(조직 설치)** 국방부장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국방부 본부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공신력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로 검토됨. - **(재조사 기구 편성)** 現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18명)을 포함한 단급 총 68명 규모로, 조사 등 有경험자 전문인력 및 지원 조직(심의위원회, 법무지원, 홍보, 대외협력 등) 확충안이 제시됨. - **(법 제도 개선사항)** ①서류조사 등을 통해 식별된 조사대상을 ‘직권 조사’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3.8만명의 미순직자들의 유가족과 참고인을 찾기 위한 행안부 및 대법원의 인적사항 검색 행정체계 이용여건 보장, ③ 사건조사 등에 필수적인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권한 부여 등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민간위탁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업체 선정·계약 단계에서 국내산 식재료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관리체계 및 기본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할 것	❍ **민간위탁 국내산 식재료 사용기준 구체화** **가. 시정·처리결과** ○ 민간위탁 급식부대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각 군 본부 및 해부대와 국내산 식재료 사용기준 토의 ('25.9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을 통해 적절한 식재료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조건에 반영 예정 • 연구용역 추진계획 - '26. 5월 : 계약 체결 - '26. 5 ~ 8월 : 용역 수행 - '26. 9월 : 적정 식재료 기준 마련 ❍ **민간위탁 표준관리체계 및 기본매뉴얼 마련** **가. 시정·처리결과** ○ 표준화된 민간위탁 계약조건을 마련하여 '26년 급식방침에 반영 • △위탁업체의 위법행위 및 사고발생시 계약해지 기준 강화, △불시 위생점검 및 관계 행정기관과 수시 합동검사 실시, △자료제출 의무 명시 등 ○ 민간위탁 급식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26년 급식방침에 반영 • 급식 과정별로 식자재 검수 관리, 급식정량 준수 여부 확인, 위생/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부대에서 관리할 기본매뉴얼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취사장 폭발·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조리기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각 군 취사시설의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	❍ **군 취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가. 시정・처리결과** ○ 각 군별 화재사고 예방활동 강조 지시를 통해 미흡사항 조치 및 차상급부대 현장 확인 실시 ('26. 1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내 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하여 제정 추진 (~'26. 6월) * 제5조(위생·안전관리기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방법에 대해 규정 (입법예고 前 법제처 사전법무심사 예정) ❍ **군 취사시설의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 확대 적극 검토** **가. 시정・처리결과** ○ 전기식(인덕션 등) 조리기구 순차 확대·보급 • 신축·리모델링하는 취사장에 전기식(인덕션 등) 조리기구 도입 및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 취사장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 현황(1,042 개소) * 전기식 취사장 비율 47.6% (취사장 총계 : 2,186개소) (군별 전기식취사장 : 육군 840, 해군 198, 공군 1, 해병대 3) - '26년 취사장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 추진(72개소) * 육군 64, 해군 4, 공군 1, 해병대 3 (47.6→51%로 확대) **나. 향후 추진계획** ○ '27~'31 중기계획에 전기식(인덕션 등) 조리기구 확대·보급 반영 • 신축·리모델링하는 취사장에 전기식(인덕션 등) 조리기구 도입 및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확대 - 취사장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 계획(376개소) * 전기식 취사장 보급률(51%→ 68.2%로 확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1. 군인공제회 렌트 차량 계약 지연 및 관리부실 방지	**가. 시정・처리결과** ○ 군인공제회 렌트차량 계약 종료·연장 과정과 운용실태 점검 및 지연·관리 부실방지 대책 마련 ○ 렌트차량의 계약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만료전 해지 및 신규차량 교체 불가 ○ 차량운영지침 제13조(차량교체) 준수 • 최소 4년 이상 운용 -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차량교체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개정 완료(’ 26. 2. 23.) - 기존 3년 계약 차량 또한 만기시 1년 연장 운용
12-2. 차량운행관리 (일지, 하이패스) 및 옵션 선정 등 계약절차 투명성	**가. 시정・처리결과** ○ 군인공제회 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 등 차량 운영기록관리 및 옵션선정 등 계약절차 투명성 대책 마련 **• 차량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운행 일지 및 하이패스 기록 / 관리** - 차량운행일지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 운행일지 기록 : 운전자 * 운행일지 관리(월간/주간) : 차량운영부서팀장 및 담당 * 차량운행일지에 하이패스 기록(이용금액) 추가완료(’26. 2. 23.) **• 차량 옵션 선정 등 계약 절차 투명성 확보** - 신규 차량 렌트시 견적단계에서 기존 차량 옵션과 상응한 차량으로 선정, 출고 후 추가 옵션 설치 금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방첩사령부가 인지전을 수행하는 것이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방첩사 내부적으로 법무질의 등을 통해 인지전이 방첩사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 • 인지전은 '22년 러-우전쟁 이후 중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군이 '23년 이후 연구를 시작한 최신 작전수행개념이기에 방첩사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실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다만, 방첩사가 국방부 주관 통합정보대응 업무 관련 허위정보 분석·평가 임무 등을 전담하는 점을 고려, 인지전이 방첩업무규정에 명시된 방첩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임 • 그럼에도 방첩사는 현재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지난 1.20일 부승찬·추미애 의원실 요청에 따라 '對인지전 수행방안 연구용역' 관련 사항을 대면설명 後 해당 자료 사본 등도 제출하여 종결한 사안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전장망·C4I·데이터센터 보호를 위해 DR(재해복구) 체계에 대한 예산 확충을 포함하여 보강 및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장관리체계 • 서버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사시 신속한 복구 가능 • 다만, 유사시 체계 중단 최소화를 위한 보강 소요 식별 ○ 자원관리체계 • '26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해복구체계 고도화 1단계 사업 추진 중 * 예산 / 사업기간 : 181억원 / '26. 5월 ~ 12월 * 대상체계 : 인사·군수·동원정보체계 등 12개 • 재해복구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협의 요구 : '26. 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전장관리체계 • 운용시설 및 환경개선 : '26년 • 성능개량 사업 시 재해복구체계 보강 : '29년 ○ 자원관리체계 • 재해복구체계 구축 계획 재검토* : '26년 *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체계 구축 목표 관련 고시 제정('26. 4월)에 따른 국방부 추진계획 재검토 • 재해복구체계 2단계 사업예산 소요제기 및 반영 : '27년 • 재해복구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 : '28년 ~ '30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노후 대도청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확보	**가. 시정・처리결과** ○ 노후 대도청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에 '26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25. 6월) 국방부(안) 반영, 기재부 제출 * 반영요구액 1.19억 / 6개소 • ('25. 8월) 기재부 정부(안) 미반영 • ('25. 11월)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추가 반영 * 예산반영 추가요구 (부승찬 의원실) • ('25. 12월) 국회 예결위 미반영 * 예산규모 및 정부예산 내 우선순위 고려 기재부 미동의 ○ '27년도 대도청 장비 교체 관련 예산 편성 추진 (2.26억) • 미설치 및 장비 노후화 등 11개소 우선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 건의 * 신증설 무관부 및 주요국가 순차적 교체 **나. 향후 추진계획** ○ 대도청장비 구입 및 교체 등을 위한 예산편성 반영 지속 추진 • 국방부 예산안 편성 및 기재부 승인을 위한 유기적 협조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6. 간부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간부들의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제적 보상확대,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사기 및 복지향상, 자아실현 기회보장 등 4개 분야 15개 과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 초급간부 기본급 6.6%인상,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인해 학군·학사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이 전년 대비 향상 되었으며, 중·상사 희망전역자가 감소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여 간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인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복무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1. 군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10년간 자살 비율이 높은 원인을 포함하여 자살 원인분류 및 Ⅲ형 순직 기준 등을 전면 재정비 할 것	❍ **군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예방대책 마련**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 시달(2.10.) • 주요 군기사고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선제적·구체적·유형별 예방대책 수립 ○ '26년 군 자살예방 대책 수립(2.10.) • 예방적 차원의 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수용 캠페인 • 심리검사체계 개선,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고위험군 식별 강화 • 지휘관의 심리검사 결과확인 및 후속조치(지속),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여건 보장 등 관리 강화 • 자살사고 발생 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하는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이행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각 군별 자체 시행계획(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자살예방 대책) 수립 및 이행('26.3월~) ○ 사고예방 및 자살예방 대책 이행실태 점검 • 군기강 확립 정기협의체 회의(분기별) • 군기강 확립 특별 강조기간 시행(분기별) • 병영문화혁신통합솔루션 부대방문(상·하반기) • 자살예방 집중활동기간(4월, 8월) 운영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2. 군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10년간 자살 비율이 높은 원인을 포함하여 자살 원인분류 및 Ⅲ형 순직 기준 등을 전면 재정비 할 것	❍ **순직 기준 전면 재정비** **가. 시정·처리결과** ○ 순직유형 구분 및 예외사유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 ('26. 3. 16.) • 순직을 기존 3개 유형(Ⅰ·Ⅱ·Ⅲ형)에서 2개 유형으로 구분 (순직Ⅰ형에 Ⅱ형 요건 포섭 등) - 순직Ⅰ형에 Ⅱ형요건을 포섭, 인정범위 확대 - 순직유형 분류기준번호 삭제, 유가족 차별감 해소 • 의무복무 중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순직 예외사유 개선, 자해사망자 순직인정범위 확대 **나. 향후 추진계획** ○ 법률안 개정 예상추진 일정 : 상임위(4~5월), 법사위(5~6월), 본회의(6월 이후) ○ 시행령 개정 :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한 「군인사법」 개정과 연계,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8. ‘도움간부·배려간부’ 제도의 운영실태와 자살사례를 점검하여 고위험군 장병이 위험환경에 재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자살예방 대책에 도움·배려제도 실효성 개선 관련 내용 반영 • 각 군별 도움·배려제도 운영실태 점검 후 개선 소요제기, 국방부에서 종합 검토 **나. 향후 추진계획** ○ 도움·배려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행 안내(‘26.3월) • 군별 관리·운영실태(도움·배려간부 중 자살자 현황 포함) 자체점검(~’26.6월) • 개선계획(소요)이 포함된 점검결과 국방부 제출(’26.7월) ○ 국방부 개선방안 검토(’26.10월) • 각 군 점검결과를 고려, 대책 수립 시 필요한 추가 조치 등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국군복지단이 군납 계약 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밴더사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제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납품업체 대상 안내) 월 2회 '업체와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밴더사 부당이득 취득 방지 강조 • 밴더사 입찰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입찰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및 절차 상세 안내 • 가격 변동소요 발생시 정직한 변경신고 독려 - 원자재 가격하락이나 공정 개선,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한 원가 절감 요인 발생시, 이를 은폐하지 않고 규정(계약서)에 따라 가격변동 요청 • 증빙자료 보관기관 5년 안내 -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거래 명세표, 송금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최소 5년 이상 엄격히 관리하므로 필요시 과거자료 확인・제재조치 시행 • 밴더사와 복지단 내부인사의 부정의혹 식별시 복지단 감사실에 제보하도록 안내 **나. 향후 추진계획** ○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보완을 통한 재발방지 ('26. 5월) • 공고문 및 계약서 신청자격 보완 - 군마트에 직접 납품 가능한 자 또는 그와 유사한 이행을 할 수 있는 물류 유통업체와 계약한 자 - 업체 서류심사 자료로 물류 유통라인 증명 必 * 자체 물류 유통체계 보유증명, 물류유통계약서 • 납품업체 및 밴더사의 부당이득 취득 방지를 위한 계약조건 수정(안) 마련 - 물류유통라인 증명 등 업무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때 "업체"는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 12·3 불법계엄 동원장병에 대한 2차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 협조하 정신건강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자문 실시 • 신변 노출에 대한 부담 감소위해 무기명, 비대면 설문 필요 ○ 모바일 설문 통한 무기명 정신건강평가 시행 * '25.10. 20.(월) ~ 10. 31.(금) / 1,631명 시행 ○ 평가 결과 환류 및 상담·진료 연계 • 본인의 정신건강 평가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 상태 인식을 강화,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에 따라 상담·진료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고위험군이 적정 서비스를 인지하고 필요 시 스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신건강 주간 등 활용하여 정신건강 관리방안 및 지원사업 홍보 ○ 국가트라우마센터·전문기관과의 협업 통한 정신건강지원(마음안심버스, 숲치유 프로그램 등)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 특정 군 및 사관학교 출신 편중과 국방대 총장 문민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에 대한 균형인사를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각군 균형편성을 위해 합참 및 국직부대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 비율을 조정하여 보직하고 있음. ○ 균형인사 구현을 위해 '25년 후반기 인사간 국방부, 합참 등 정책부서 내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특정 출신 장교가 지속 보직되는 직위는 타 출신 장교로 순환하였음. • 육군의 대령 경우, 정책부서 내 비사관학교 출신 보직율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군 인사 간 군별, 출신별 균형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
22. 군 사격장 전반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격장 외곽부지에 대해 3년마다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 중이며, '26년에는 404개소 검사 예정임. * 토양오염도검사 : 오염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 탄두회수대 설치, 탄두회수활동 등을 통해 토양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3. 군 주둔지·시설 위치·배치 등 군사기밀이 상업·오픈소스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내기업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지도에 대해서는 보안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 오픈스트리트맵과 같은 외국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지도서비스는 국내법 적용이 제한되어 중요시설의 보안처리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 제한사항 내재 **나. 향후 추진계획** ○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 중요시설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정보 서비스 기업을 관리하는 국토부 주관 공간정보보안 협의체에서 유관부처와 관련 사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4. 장기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로카우스 호텔의 중장기적 재정문제 해결과 장병 및 예비역의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로카우스호텔의 중장기적 재정문제 해결** **가. 시정・처리결과** ○ 로카우스호텔 개발비용 상환계획의 적절성 검증을 위한 분석평가 의뢰(육군 분석평가단, '26. 1월) • 최초 상환계획의 30년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일부 조기상환 방안에 대한 분석평가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육군 분석평가단 분석평가 결과('26. 5월 예정)에 따라 상환계획 적절성 판단 및 상환을 위한 복지기금 예산편성 / 중기계획 반영 ❍ **장병 및 예비역의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 **가. 시정・처리결과** ○ 육군은 복지시설의 특성 고려 수익, 복지를 함께 고려한 이용요금 적용을 지속 검토 중으로, 회원 복지와 수탁사의 자구 노력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재 수익 개선 노력과 비용 재분석 중임. ○ '26년 전반기 분석을 완료 후 인상 필요 시 중앙복지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여부 판단 예정 * 이용요금 인상이 모든 현역 및 예비역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검토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로카우스호텔의 자구 노력, 비용 분석 후 중앙복지이사회 안건 상정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 군 수당이 '주먹구구식'으로 신설·증액되면서 14종 60가지로 세분화된 만큼, 과거에는 필요했으나 현재는 불필요한 수당을 포함해 수당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위험도, 근무지 여건, 자격, 계급, 복무기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직군 등장 시에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당체계를 운영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현재도 군인의 수당은 계급과 복무연수, 근무지, 직무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반영하여 지급되고 있음. 수당 중 장려수당은 계급 및 복무연수에 연동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근무지의 특수성은 특수지근무수당에, 직무의 난이도와 위험성은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수당에 반영되고 있음 ○ 항후 국방개혁 과제로 수당제도 제설계를 선정하여 현행 수당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행 수당제도의 적절성 검토 • 첨단 과학기술 적용 이후 변화된 직무를 분석하여 수당 신설 및 폐지 소요 판단 **나. 향후 추진계획** ○ 현행 수당제도의 개선소요 도출 * KIDA 연구용역 (~12월) ○ 수당 신설 및 폐지 소요 판단(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 구글이 독도박물관을 ‘김일성 기념관’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와 같이 글로벌 플랫폼의 지명 오표기는 국가 이미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구글 지도서비스에서 독도박물관이 ‘김일성 기념관’으로 잘못 표기된 것은 유관부처에서 시정 조치를 요청하여 정정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 다만, 민간 지도서비스 영역에서 지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유관부처의 의견 조율과 협력이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공간정보 서비스 기업을 관리하는 국토부 주관 공간정보보안 협의체에서 관련사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고정밀 지도반출 여부 결정 시 안보를 중요 고려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는 안보위해요소 최소화를 위해 ① 주요시설 보안처리, ② 지도상 좌표 표시 제한을 지도반출의 선행조건으로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며, ○ 구글사의 지도반출 요청에 대해 '26. 2. 27.(금) 국토부 주관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지도반출 조건에 포함하여 '조건부 허용'을 결정 **나.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애플사 지도반출 등에서도 안보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 주요시설 보안처리, ② 지도상 좌표 표시 제한을 지도반출의 선행조건으로 일관되게 제시할 예정
28.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관리하는 자원관리체계는 시스템 복구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서버 방식으로의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해복구체계 고도화 1단계 사업 추진 중 * 예산 / 사업기간 : 181억원 / '26. 5월 ~ 12월 * 대상체계 : 인사·군수·동원정보체계 등 12개 ○ 재해복구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협의 요구 : '26. 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재해복구체계 구축 계획 재검토* : '26년 *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체계 구축 목표 관련 고시 제정('26. 4월)에 따른 국방부 추진계획 재검토 ○ 재해복구체계 2단계 사업예산 소요제기 및 반영 : '27년 ○ 재해복구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 : '28년 ~ '30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9. 군무원 대상 정책 및 복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직, 복지, 인사관리, 교육, 채용 등 분야별 과제를 염출하여 매년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관리 중 ○ 특히, 격오지 군무원 주거 지원 및 군무원 복지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소관부서(군주거정책과, 복지정책과)와 협업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추진(복지정책과 협업) • 적용대상에 '군무원' 포함 ○ 군무원 주거 지원 및 복지체계 마련 과제는 '26년 군무원종합발전 과제로 반영하여 지속 추진 예정
30. 군관사 및 간부숙소 대안인 민간주택 입주시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기준(5인 이하 가구도 지원 가능)을 명확히 하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강조사항 하달('25. 12. 2.)하였음.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지원하도록 재강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1. 대규모 드론 인력양성을 위해 드론센터를 통한 드론 교관 양성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육군,「50만 드론전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방향 수립('26. 3. 19.) • 드론 조종자 양성 전망('28년~) - 全 양성교육간 드론자격 취득 - 드론 강사 가능요원(軍 3종이상 자격) 최소 2만명 이상 보유 • 드론교육센터 운영계획 정립('29년~) - 중앙센터(정보학교): 전문교관 양성교육 - 지역센터(군단급 10개소): 조종자격 취득 교육 - 교육장(사단급 이하 22개소): 조종술 숙달용 • 기반 체계 확보계획 수립(~'30년) - 드론: 장병 10명당 1대 보급 - 시뮬레이터: 대대 단위 20set 보급 - 훈련장: 전술종합훈련장 추가 구축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드론 교관 양성프로그램 마련: '26. 6월 • 육군 시범운영 성과 분석('26년) 포함 및 육·해·공군·해병대 확장 계획('27년) • 드론사 조직 개편계획 반영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2. 군인의 교육과 주거 지원 등 복지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육군과 연계한 군 가족 복지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 연구 용역(국방대) : ′25. 9. 25. ○ ′26년 군인복지기본계획 추진현황 점검 * 주거/생활복지, 교육복지, 문화/여가복지, 가족복지 분야 종합적으로 점검, 개선사항 반영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군인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시행 * ’28～’32 군인복지기본계획 작성 ○ 군 가족 지원센터(가칭) 건립 및 운영 추진 * 육군 2군단 대규모 주거시설 사업과 연계 시범운영 준비 중 * 부대 단위 관사 밀집지역에 설치, 종합 지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3. 새로운 부대·사령부 창설 시 기존 야전부대 단순 인력 차출을 지양하고, 정원·조직 재조정을 통해 야전 전투력 보호 및 초급간부 전역·사기 저하 요인 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지휘통제부대 및 직할부대 최적화 방안 검토 • 각군본부를 비롯한 지휘통제부대 및 직할부대의 지속적인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휘조직 전체 규모를 현 수준에서 관리 - 단, 지휘조직 총원 범위 이내에서의 정원 관리는 각군에 대폭 위임하여, 각군의 특성 및 환경에 따른 현안 대응여건 보장 ○ 국방중기계획 추가 지침 하달('26. 2. 10.) • 각군의 지휘조직 정원이 각군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방중기계획(부대계획분야) 추가지침 하달 **나. 향후 추진계획** ○ '27~'31 국방중기계획 수립 • 지휘조직 정원이 국방중기계획 지침상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4. 상비예비군, 퇴역 군인 등의 숙련인력 재활용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퇴역 군인의 예비역 편입 방안 마련 • 퇴역 군인이 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 개정('25.1월) • 개정 「군인사법」에서 위임한 지원 요건, 절차, 복무기간 등 구체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25.7월) • 지원에 의한 예비역도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 병역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26.2월) ※ '26. 2월 부, 퇴역 군인도 예비역으로 편입한 후 상비예비군으로 지원하여 군 복무 가능 **나. 향후 추진계획** ○ **상비예비군 확대 운영 방안 마련 및 이행** • 국정과제, 국방개혁 과제 등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와 연계, 상비예비군 확대 추진(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5. 저연차 군무원의 이탈 원인을 분석하여,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을 국방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명확히 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가. 시정・처리결과** ○ 저연차 군무원의 주요 이탈원인 분석/확인 • 원인 : 숙소 미지원, 낮은 보수, 근무지 생활여건 열악, 높은 업무난이도와 책임, 장래성/발전 가능성 저조 ○ 군무원 이탈 대책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직, 복지, 인사관리, 교육, 채용 등 분야별 과제를 염출하여 매년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관리 중 • '26년 군무원 종합발전 추진과제 수립 중 - 조직분야 : 군무원 정의 관련 법령 개정, 군무원 정원구조 개선 등 - 복지분야 : 군무원 맞춤형 복지 확대추진, 수당 등 처우개선 **나. 향후 추진계획** ○ 군무원 정의 군무원인사법 개정 추진 예정 • 군무원의 신분과 역할 명확화 ○ 처우개선 과제는 '26년 군무원종합발전 과제로 반영하여 지속 추진 예정 •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추진(복지정책과 협업) - 적용대상에 '군무원' 포함 • 군무원 주거 지원 및 복지체계 마련 과제는 '26년 군무원종합발전 과제로 반영하여 지속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6. 군 병력 감소에 따른 비전투분야 업무 아웃소싱과 연계된 제도 정비 요소 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분야 민간 아웃소싱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체계 구축방안 연구('25. 12. 27.) • 전시 임무강제 및 손실보상, 민간군사기업 인증제도, 종사자의 법적 지위·의무 규정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요소 포함 **나. 향후 추진계획** ○ 「가칭 민간군사기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 입안 및 관계기관 협의 후 연내 입법 목표
37. 국군의무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정원·예산·교육 및 실습 등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는 의료계와 협업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관련 연구를 수행 완료 * 장기군의관 인력양성모형별 편익분석 및 군병원 발전방안 연구(한국 의과대학 협회, '25. 6월 ~ '26. 2월) * 중장기 군의관 수급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8월 ~ '26. 2월)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할 경우에 필요한 법률 제정안도 검토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시설사업 선행연구 실시 ○ 학교정원 확보 관련 관계기관 협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8. 특정 시기 전문약제병 모집 경쟁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문약제병 모집 관련 국방부·병무청 - 약대생협회 실무 간담회(1.14./성일종 의원실) • 전문약제병 운영 현황 및 전문약제병 지원자격 완화 관련 국방부 검토의견 설명 - 전문약제병 지원자격 완화는 무자격 의료행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 약대생협회는 약사면허 발급 전이라도 약사시험 합격시 전문약제병 지원 가능토록 지원자격 완화 요청 • 군 내 마약류 관리 등 약제인력 필요성 고려 추가 전문약제병 소요 검토 논의 **나. 향후 추진계획** ○ 전문약제병 추가 소요 검토(연중/국방부·각군) • 약제인력(장교, 군무원, 병) 현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소요 및 증원 가능 여부 논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9. 불용군수품 매각 경쟁계약 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감정평가와 매각가의 현실화, 시가 형성 물품에 대한 개별 매각 방식으로의 전환, 시가 미형성 물품에 대한 총액 계약 방식으로 전환, 실제 수량을 바탕으로 한 매각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불용군수품 매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각군 의견 및 관계부처 유권해석 수렴 • 각군/부대의 건의사항 반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 * '26년 불용군수품 매각 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실무회의 안건 제출 요청('25.12.1.) • 국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재정경제부 등) 유권해석을 통한 제도의 적법성·합리성 확보 * 불용군수품 관련 질의 회신(기획재정부, '25.12.11) **나. 향후 추진계획** ○ 불용군수품 매각 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불용군수품 매각방침' 수립 및 각군 하달(~'26년 상반기 내) • 헐값 및 특혜매각 차단을 위한 할인매각 금지 원칙 수립 및 감정평가 심사필증 의무화 등 • 계약물량의 예측도 제고 및 계약물량 변동 시 수정계약 범위 기준 마련 • 품목별 매각단가 산정 기준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0. 군무원 임무의 특수성과 전시 임무를 감안하여, 군무원 채용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은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타 기관과 다르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조정 및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법령 상 신분에 따른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무원 직위 중 일부**를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경찰, 소방, 군인 등은 고용대상에서 제외 ** 군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범위가 아니므로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전환된 직위 및 위험을 수반하는 현장업무 수행이 많은 기술직군 직위 등 제외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1. 여군 및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상시 불법촬영 팀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및 각 군은 주기적으로 예방활동 강화기간을 활용하여 군기순찰대 및 군사경찰 주관으로 여성 및 공용시설 불법촬영 탐지활동을 시행 중에 있으며, ○ 군 시설내에서는 사진촬영, 녹음, WIFI 전송 등의 기능을 차단하는 국방모바일보안앱을 사용하여 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제하고 있음. ○ 이에 상시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도입사항은 군내 시설운영, 보안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예산반영, 설치장소, 운영인력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정기·불시 불법촬영 탐지를 통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2. 병사 휴대폰 충전보관함 수요가 많은 육군부대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실효성 및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정식 도입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 휴대전화 충전보관함 시범운영('26.2월~3월) • 육군 3개 군단(3개 대대) 대상 상이한 업체 물품 시범운영으로 실효성 및 가격 적정성 등 판단 • 자동 개폐기능을 활용한 관리 편의성, 화재 예방 등 안전성 등 검증 **나. 향후 추진계획** ○ 시범운영 결과 분석·평가('26.4월) ○ (정식 도입 판단 시) 전력지원체계 심의 반영('26.5월~6월) 및 예산 확보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3. 법무부와 연계하여 장병 무단 출국 사전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단 출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무청에서는 「병역법」에 의거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등에 대해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과와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해 국외여행을 허가하고, 법무부에 통보하여 출국심사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군인은 이미 현역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중인 자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 관련 규정에 의한 내부 통제절차가 구비되어 있음. ○ 최근 10년간 군인의 미승인 국외여행 현황이 최소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실제 미승인 국외여행 현황을 고려 시 무단출국 사전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행정적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10년('16년~'25년)간 미승인 국외여행 현황 : 10명 **나. 향후 추진계획** ○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사적 국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장병에게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4.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GPS 기능 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외부 앱 기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보안체계를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국방보안업무훈령 내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 중 (제115조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 군사작전 관련 위치정보 노출 금지 * 필요시, 개인휴대폰 GPS기능 차단 ○ 사이버·보안 진단의날 행사 운영간 추진 중점을 통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 시 위치정보 노출방지 및 SNS 사용간 위치정보 노출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을 지속 강조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부대 출입시 GPS기능 끄기 생활화 등 지휘관(부서장) 중심의 교육강화 및 이행을 강조하고, 군사작전 및 훈련시 부대 위치·이동 경로 등 위치 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 예정 ○ 외부 앱 기능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응하겠으며 상시적 보안관리 역량을 지속 강화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5. 광명 시흥 신도시 추진과 관련 군사철도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용부대(육군) 연계하 군 전용철도 활용 필요성 검토('26. 4월) • 전·평시 서부축선 원활한 작전임무수행을 위해 군 전용철도 존치 필요 * 운행중지('16. 9월) 이전 이용실적 : 연 63회 / 173량 • 폐선시 대체 가능시설(갈매역 등) 원거리(90km) 이격으로 비효율성 증대 * 소요 시간(5H), 인원(3명), 차량(3대) 증가 * '25년 대체시설(갈매역 등) 이용현황 : 54회 / 109량 • 현행 관련법(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40톤 이상 K계열 특대화물은 육로수송이 제한되어 철도수송 반드시 필요 ○ '25년 유관기관 협조토의 실시(2회) • 기관별 의견 - 육군(사용부대): 군 전용철도 존치 필요하며, 폐선시에는 반드시 대체시설과 운행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이 반드시 필요 - LH 토지주택공사: 군 전용철도 폐선 요구, 계획지구 내 대체시설 제안 **나. 향후 추진계획** ○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전용철도의 지속운용 필요성 제시 ○ 철도 정상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해소(철도 주변 민간시설 정비 및 산책로 운용방안 / 한국철도공사, 구로구청) 후 대체시설 설치(LH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평가 후 추진 ○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육로수송 전환시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 제시 ○ 국방부 주관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현황 관리 및 조치(분기단위) * 2분기 점검회의: 4. 30.(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6. 민간위탁 업체가 사후정산 시 면세제품인 식자재 원품에 대해 부가세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국방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업체에서 일일 식자재 입고내역서를 부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 업체에서 제출한 입고내역서를 바탕으로 급식부대에서 부가세 부당청구 사례를 검수하도록 표준관리 매뉴얼에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7. 병사들도 간부와 같이 보충 피복 선택권이 없으므로 전산 피복비 형태로 보충보급 하는 방안 또는 속옷, 운동복 등은 개인이 상용품을 자율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사 보충보급품을 초도보급으로 통합지급 하는 것으로 '26년 국방부 피복방침 반영 완료 • 런닝, 팬티, 양말, 수건은 초도보급 수량이 부족하다는 의견 다수 접수('24~'25 피복 만족도 조사) * 초도보급으로 일괄보급하는 수량 	구 분	통합지급 수량	구 분	통합지급 수량
---	---	---	---
런닝	10매	면양말	10족
팬티	10매	면수건	7매
단양말 (해·공군)	8족	방한양말 (육군, 해병대)	4족 | • 대부분 軍 피복류는 지급기준이 1~2벌이므로 세탁 및 정비여건 보장을 위해 초도에 일괄보급이 바람직함. | 구 분	수 량	구 분	수 량
---	---	---	---
사계전투복	2벌	하계전투복	상의 1벌, 하의 2벌
컴벳셔츠	2벌	춘추운동복	2벌
하운동복	2벌	동운동복	2벌
전투화	2족	운동화	2족
방상외피	1벌	방상내피	1벌	 • 육군의 경우, 전산피복비 형태로 보충보급을 하기 위한 보급단의 인원과 시설 저장능력은 간부 12만 명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음. * 전투근무지원부대 인력 감축계획 및 現 물류시설의 저장능력 고려 시 병사 32만 명 분량의 추가적인 물량까지 취급은 제한됨 * 병사들도 간부처럼 전산피복비 형태로 보충보급 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보강 예산소요가 과도함 ○ 속옷류, 내의류, 양말류는 초도보급을 하되, 개인 기호에 따라 상용품 구매가 가능함. • 다만, 운동복은 전투복과 같이 유니폼(uniform)의 의미로 착용해야 하므로 군인복제규정상 주둔지 단위로 통일해서 착용해야 함 → 운동복은 軍 보급품 착용 필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8. 초급간부들의 예식장 대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쟁기념관에 야외 결혼식장 설치를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장소 제공 가능성 검토 후보지**(안) • 평화의 광장 • 어린이박물관 전면 광장 • 잔디녹지 • 동측 옥외전시장 보행로 ○ **주요 제약 사항** • **전사회 설립목적에 미부합** - 설립목적 :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전쟁의 교훈을 통해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 • **관람객 동선 방해 우려** : 평화의 광장 추모 상징성과 충돌, 잔디녹지의 경사 및 진입제한과 보행로의 협소한 폭(7m)으로 인한 관람 동선 방해 우려 • **관람객 혼잡** : 연간 관람객이 약 366만명(2025년 기준)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 - 23년 286만 → 24년 307만 → 25년 366만 명 • **운영 인프라 미비** : 야외 결혼식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재 • **규정 부재** : 장소 제공(무상 또는 할인) 관련 구체적인 운영 지침 및 근거 미비 • **민원 발생 우려** : 예식 진행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식사(주류 포함) 관련 민원 제기 가능성 ※ 상기 공간에 대해 후보지별 특성 및 운영을 고려한 추가검토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제한사항 추가 검토 • 관련 규정, 예산 등 검토 • 설문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9. 미국에서는 병 출신 장교들도 장군이 된 경우가 있는 만큼,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군인으로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출신별 보직, 진급 등 인사관리 상 출신별 차이를 두고 적용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장성 진급선발은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최적임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 군의 경우에도 병 복무 후 임관한 간부사관, 육군3사관학교 및 학사장교 출신 중에서 장성으로 진급한 사례가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군인을 진급 선발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0.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한 의성·고성 등 시험장에서 대드론장비 등 군용장비를 개발 및 시험 절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절차는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그동안 대드론 장비(전파차단장치) 시험을 위한 군 전용시험장이 없어, 공공과 민간이 같이 사용 가능한 정부(국토부, 과기정통부 등) 지정 '국가 안티드론 시험장'을 이용하였으나, ○ 과기정통부와의 전파차단장치 시험장 지정 협의 및 심의를 통해 현재는 군 대드론 장비(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시험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군 훈련장' 2곳을 지정하여 사용 추진 중 • 육군 다락대훈련장('25. 12월), 육군 승진훈련장('26. 2월) 지정 완료 • 전파차단장치(대드론체계) 군 훈련장 운영지침 수립('26. 3월) **나. 향후 추진계획** ○ 대드론 장비의 시험평가 및 운용 요원의 교육·훈련 숙달을 위해 '전파차단장치 군 훈련장' 추가 지정을 검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1. 총기 관리 규정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규정 미준수로 군 총기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바, 총기 관리 전반 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군 총기·탄약 관리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실시('25.10.15.) • 후속조치로 국방부 주관 전군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 현장 점검 실시(300여개 부대) * 장비관리과-7319('25.12.29.) '25년 후반기 총기·탄약 관리시스템 점검결과 하달 ※ 관리체계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노력 경주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전반기 총기·탄약 현장점검 실시 • 기간/부대 : 3. 9. ~ 5. 14. / 전군 300여개 부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2.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간 방위분담 및 전력 운용의 균형을 맞출 대책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제57차 SCM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핵심국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에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 **나. 향후 추진계획** ○ 필요시 다양한 협의체(KIDD, SCM 등) 및 리더십 간 수시 소통(아웃리치, 공조통화) 계기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
53. 소음이나 도비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사격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스마트 과학화 사격장 도입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육본 주관 기초자료 수집 및 실효성 검토 • 전문가(육사 물리학교수) 의견 청취 : ’26. 3.10. * 광학센서 기술수준, 실전성 검증 방안 등 • 관련업체(3개소) 방문·확인 : ’26. 3월 * 업체별 탄도구현방식, 알고리즘, 센서정밀도, 기술 수준 및 특성 등 확인 **나. 향후 추진계획** ○ 업체별 기술 수준 및 탄도구현방식을 고려한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 : ’26. 4월 * 기술 검증을 통한 실효성 및 적합성 평가 ○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 방안 검토 : ’26. 5월 * 시범사업, 국방실험사업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4. 주요 보안시설 내 실효성 있는 영상 차단 및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부대별 임무 및 특성에 따라 촬영 통제가 필요 시 적합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국방보안업무훈령에 규정하여 시행 중 • 각 부대별 연간 보안업무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부대 보안관리 활동을 시행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를 통해 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대책을 수립/ 보완하도록 조치 • 군사보호시설은 적에게 파괴 또는 피탈 시 국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하여「군사보안시설 현황 및 존안표」를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보안순찰을 실시 * 가급(월1회), 나급(분기1회), 다급(반기1회) •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군사보안시설 노출 여부를 매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삭제 요청 등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수행 **나. 향후 추진계획** ○ 4월 사이버·보안진단의날 행사 시 군사보안시설의 블랙박스 촬영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대책 마련 강조 지시 하달 예정 ○ 미래 보안환경 변화와 새로운 보안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보안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군사보안시설 보호대책을 수립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5. 군마트 제품 재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및 민간 플랫폼 협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군마트 제품 재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제재 근거 마련** **가. 시정・처리결과** ○ 군 매점 상품 등 재판매금지 조항 신설(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 **나. 향후 추진계획** ○ 재판매 위반자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 일부개정안) ○ '26년 군마트용 제품 경고문구 표기 추진 * 관련사항 '26년 위/수탁거래계약서 반영 실시 ○ '26년 재판매 집중 단속기간 추진 : '26. 6월한 ❍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및 민간 플랫폼 협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가. 시정・처리결과**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업무협약('25. 6. 19.)을 통해 온라인 상 재판매 행위 식별시 군마트 제품 판매 차단 조치('26. 4월 기준 1,100건 조치) ○ 온라인 상 재판매 사업자 현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국세청이 세원을 추적, 관리·감독하도록 지원('25. 후반기~/반기 1회) **나. 향후 추진계획** ○ 플랫폼사별 군마트 제품 재판매 추가 협의 ○ 마트이용시 모바일 인증체계 마련으로 회원자격 확인 강화 및 구매수량 제한 • QR코드 출입 인증시스템 시범 적용 : '26. 5월 * 영외마트 대상 우선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6. 국방 광대역 통합망 3공구 중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구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조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3공구 공사현장(옥계휴게소 등 2개소) 점검 ('25. 11. 10.) • 시공사가 해당 구간은 휴게소 진출입로를 굴토를 못하는 상황에서 감리단으로 '설계변경' 건의없이 우회경로로 공사한 사실을 확인함. • 준공 간에도 해당 공사에 대해 감리단은 '설계변경'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관로보수' 건으로 처리되었음. ○ 사업시행사에 준공도면 불일치에 대한 추가의견 및 후속조치 계획 제출 지시 ('25. 11월) * 의견서 및 후속 조치계획(도면 수정) 회신 ('25. 11월)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이 있어 조정 진행 중 •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및 검토('26. 3. 4.) 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 **나. 향후 추진계획** ○ 준공도면과 실제공사의 차이에 대한 해당 사업시행사와 감리단의 법적 책임소지 여부 확인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7. 기본 병과 통폐합, 첨단 병과 신설, 인력 운용 구조 개편을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하여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및 전쟁양상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병과 통·폐합 및 신설 등을 포함한 병과체계 개선(안) 수립을 추진 중임. * △ 병과체계 개선 추진 회의 ('25년 2회 / 7·11월), △ 병과체계 개선 정책연구용역 추진(~'26년 전반기) **나.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간, 각 군의 고유특성(임무, 영역, 무기체계 등)과 군사력 건설 방향, 미래 군구조 설계 추진 등을 고려한 병과체계 개선(안) 수립 및 추진을 개혁과제로 포함하여 검토하겠음. ○ 또한, 병과체계 개선 범위와 연계,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소요를 검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8. 합참, 국직부대 등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 준수를 위해 반기별 국방개혁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합참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 비율은 '25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및 대령 인사 이후 법정 기준에 따른 적정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군으로 3회 이상 보임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있음. ○ 장성급 국직부대 지휘관의 군별 편성 비율도 인사 이후, 육군의 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음. •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직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은 군을 달리하여 보직 * 각군 인력운영, 임무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 일부부대는 동일 군으로 보직 • 특히, 각군 균형편성을 위해 국직부대 대령급 부지휘관(참모장)의 비율을 3 : 1.5 : 1로 조정 **나. 향후 추진계획** ○ 장성급 국직부대장의 직위에 대해서도 각군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공군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9. 56사단장 등 경호가 필요하지 않은 지휘관에 배정된 특수자동차를 회수 조치할 것	**가. 경호가 필요하지 않은 지휘관의 특수자동차 회수 조치 완료** ○ 소장급 이하 지휘관의 경호목적의 특수자동차 운영은 불필요 한 것으로 판단 ○ 52사단장, 56사단장 특수자동차 일반번호판 회수 완료('25.11.24.)
60. 충실하고 올바른 예비군 안보교육을 위해 안보교육의 온라인 교육운영, 국방부 자체교육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예비군 안보교육 표준교안 제작 완료 (동영상 강의방식 / '26. 2. 26 부) • 내부감수 (총 3회) : 정신전력정책과, 대변인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 북한정책과, 정책기획과 등 • 자문회의 (총 4회) :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보고회 등 4차례 검토 ○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함으로써, 안보교육 강사에 의한 부적절 발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으며, 연중 균등한 교육내용 제공 가능 **나. 향후 추진계획** ○ 전반기 성과분석을 통해 동영상 강의방식에 대한 평가 / 환류
61. 허위로 군수품 손망실 처리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관련 증빙 의무를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전비품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추진 중 • 증빙서류 제출 강화(사고조사·감찰조사 결과보고서 추가) 및 지연·허위보고에 대한 처분 조항 마련 **나. 향후 추진 계획** ○ '26년 훈령 개정 추진 중이며, 전반기 개정 완료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2.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장병에 대해 단기간 내 전역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책임 방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역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장병 보호·관리체계를 점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간부 심신장애자의 경우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소견을 참고하여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으며, ○ 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단위 전역보류 조치가 가능함. **나. 향후 추진계획** ○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 대해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지속 보장하도록 하겠음.
63. 식약처 고시에 따라 군 식용 얼음을 점검하고, 살균 가능한 제빙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방부 훈령을 개정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른 군 제빙기 식용얼음 검사 시행 방안 검토 ○ 식용얼음 검사 시행을 위한 '27년 예산 요구 **나. 향후 추진계획** ○ 식용얼음 검사 실시 의무를 반영한 「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 개정(~'26년 상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4. 군 장병 AI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위한 AI 교육·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AI 기초교육을 넘어, 실제 직무와 연계된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민군 협력을 통한 전문교육 추진) 군 내 AI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SW중심대학*)과 교육협력체계 구축 * SW중심대학 : SW 전문·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정('26년부터 AI중심대학 지정 예정) • SW중심대학과 교육 연계하여 대학의 AI 기술 역량·전문성을 활용, 국방 AI 연구 활동 활성화 및 실무중심 AI 교육* 지원 * 드론·로봇 기술, 코딩 전문과정 실습 교육 등 ○ (실제 직무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통해 임무별 전문성 함양) 센터별 교육·개발예산(연 1억 원)을 신규편성·지원, 부대 환경과 직무에 맞는 프로젝트*를 연 2회 진행하여 부대·임무별 AI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치 * PoC(Proof of Concept) 프로젝트 : 아이디어, 기술이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지 소규모로 테스트·검증 • GPU서버, AI개발 플랫폼 등 인프라 지원으로 교육·개발을 위한 최적 환경 조성 • '25년까지는 신청 센터를 대상으로 연 1회 진행했으나, '26년부터 全 센터로 필수 참여·확대시켜 각군·장병 간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성과물 포상(장관 표창)을 통해 적극 참여 유도 < '25년 우수프로젝트 > 부대 / 프로젝트 주제 육.6사단 / AI 기반 군수 물품 불출/반납 자동기록 및 검증 시스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군부대 경계 강화를 위한 저비용 음향 기반 실시간 드론 위치 추적 AI 시스템 **나. 향후 추진계획('26년 계획)** ○ 부대 맞춤형 AI 프로젝트 추진 : '26. 4~11월 ○ 우수성과 평가 및 장관 부대표창 : '26. 11~12월 ○ 부대-대학 간 교육협력체계 결연(신규 5개소) : '26년 하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5.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급식 정책은 정책 당위성이 떨어지므로, 군무원 또는 국방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급식은 높은 장병만족도 및 병력 부족 대응과 군부대 급식 운영 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큼 * '24년 민간위탁 급식만족도는 4.27점으로 군 직영급식(3.47점) 대비 0.8점 상회(5점 만점) • 특히, 병력 감소 상황에서 군의 비전투분야에 대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66. 총기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RFID,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통제 플랫폼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AI 총기탄약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개념 토의 실시 • 사업추진 방향, 예산확보 방법, 중기계획 반영 * 1차 보고 ('26. 1. 7.), 2차 토의 ('26. 1. 27.), 3차 현장토의('26. 2. 12.) ○ 군수관리국 AI 군수혁신 과제로 선정 관리 중 ○ AI 총기탄약 시범사업 경과 보고 : '26. 4. 1. • 각 군 및 해병대 진행 경과 확인 및 애로사항 현장토의(해군 3함대사) **나. 향후 추진계획** ○ AI 총기탄약 시범사업 경과 보고 : '26. 4. 1. • 각 군 및 해병대 진행 경과 확인 및 애로사항 현장토의(해군 3함대사) ○ 시범사업 종료 : '26. 10월한 * 각군별 1개부대에 시범사업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7. 군 주거안정을 위해 관사 및 간부숙소 확충,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단가 및 주택수당 현실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전세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군 주거지원 발전방안' 마련 • 관사는 정주여건이 좋은 거점도시에 타운화, 간부숙소는 '27년 상반기까지 1인1실 기준 확보, 전세이자 지원 인원 확대 및 단가 현실화 등 * 국회(황희 의원실) 대면보고('25.11.5.), 관계부처 공유(국조실, 기예처, 국토부/'25.12.) **나. 향후 추진계획** ○ '군 주거지원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추진 • '27년도 예산편성, '27~'31 중기계획 수립(~'26.12.) • 훈령 개정 등 제도개선(~'26. 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8. 기본급식비에서 가공품 및 원물(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 변동 현황 및 적정 급식비율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기본급식비 內 식재료 비율 변동 현황 검토 결과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원물(농·축·수산물)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가공품 : ('21) 25.6% → ('22) 29.5% → ('23) 54.3% → ('24) 56.5% → ('25) 57.9% ※ 원물 : ('21) 74.4% → ('22) 70.5% → ('23) 45.7% → ('24) 43.5% → ('25) 42.1% • 현재 조리병이 줄어들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리병 업무경감 및 부대별 맛의 표준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공식품을 사용 중임 ○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급식비율을 검토하겠음 • 연구용역 추진계획 - '26. 5월 : 계약 체결 - '26. 5 ~ 8월 : 용역 수행 - '26. 9월 : 적정 급식비율 검토
69.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한 군인자녀 학교에 대한 사업을 국방부가 지원하거나, 필요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군인자녀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교육부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추진 업무협약 체결 : '24. 3월 ○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1호, 경상북도 영천고 개교(설립) : '26. 3. 3 * 국방부 예산(복지지금, 장학사업) 1억원 지원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경기도 송담고, 강원도 화천고 개교(설립) 준비 확인 : 교육부, 국방부 ○ 경기도 송담고('28년), 강원도 화천고('30년) 순차적 개교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0. 업체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요건 제한은 완화하고, 수의계약과 기한 보장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연구개발 성과를 더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할 것	**❍ 업체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요건 제한 완화** **가. 시정・처리결과** ○ 요건 제한 조항 개정 검토중 • 훈령 제125조 제1항 '업체투자연구개발은 최근 5년 내 조달실적이 없는 신규품목 또는 복수의 경쟁적 조달원이 없는 품목 등에 한한다.' 삭제 -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19년 일부 업체의 특혜를 및 부적절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를 고려하여 각 군 검토사항 구체화 **나. 향후 추진계획 ('26년 내 개정추진)** ○ 각 군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 후 개정 추진 • 해당 조항 삭제 및 심의 과정에서의 검토사항 구체화 방안 의견수렴 • 군의 소요기반 업체투자 연구개발 절차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 예정 **❍ 수의계약과 기한보장을 적절하게 조정** **가. 시정・처리결과** ○ 수의계약 횟수 및 기한 개정 검토 중 • 훈령 제139조 제2항 '수의계약 가능횟수는 개발 완료 후 5회로 하며, 수의계약 가능 기한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장기적 조달 독점 방지를 위해 3회 및 최장 10년 등으로 수의계약 보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나. 향후 추진계획('26년 내 개정추진)** ○ 각 군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 후 개정 추진 • 적정 수의계약 보장에 대한 검토 필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1. 난연 소재 개발에 민간업체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군에 도입하기 위해 민·군기술협력 사업,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등을 시행중임. ○ 특히, 노멜트노드립(No Melt No Drip)* 소재 전투복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적용 중임 * 전투복에 불이 붙었을 때 섬유가 녹아서 피부에 들러붙지 않고, 재가 되거나 탄화되어 전투원의 2차 화상 위험을 최소화함 **나. 향후 추진계획** • '26. 6월 : 군 시범사용 소요결정 심의 • '26. 7월 ~ '27. 3월 : 각군 시범사용, 군 운용적합성 평가 • '27년 전반기 :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상용전환 심의 • '27년 후반기 : 구매요구서 작성 • '28년 : 전력화
72. 비상계엄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군의 불법적인 관여 방지를 위해 충무8000 계엄기본계획, 계엄실무편람 등 하위문서 개정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계엄법 개정('25.7.22.) 연계 계엄법시행령 개정 진행 중 * 입법예고('26년 5월), 최종개정('26년 6월) 예정 ○ 계엄법 추가개정 필요 여부 확인 및 보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진행 중(7월 한) **나. 향후 추진계획** ○ 계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무8000 계엄기본계획, 합참 계엄실무편람 개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3. 상관의 정당하고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명령에 한해 복종하도록 명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연구용역('25. 3월~10월), 내부 세미나('25. 7월), 국회 토론회('25. 10월) 등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법제화 검토 ○ 국방위 법안소위 개최 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와 관련된 의원발의안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의견 제출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검토의견 수정·보완 및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 대상 적극적인 설명·소통 추진 ○ 국방부 검토의견 제출(국방위 법안소위 개최 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지속 추진
74. 군의 신뢰회복 관련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회, 언론 등 외부지적 의견을 수렴한 **경청과제**와 내부적으로 발굴한 **자체과제를 선정** • 경청과제 2건, 자체과제 4건 ○ 월 단위로 주요성과 점검 중('26.2~현재) **나. 향후 추진계획** ○ 과제별 **이행성과 지속 점검** 및 추가 **과제 지속 발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정이 미국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민 재산권 존중을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현재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은 미국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국내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을 고려 7구역 미적용 * 미국은 비행안전구역 7구역(9.1km) 설정 • 국내·외, 민간·군 막론하고 5구역은 고도제한 높이를 활주로 기준 45m로 설정하고 있으나, 군공항은 지표면 기준 45m까지 완화하여 적용 ○ 또한 현행법상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고도제한 이상 건축물 등 건축을 허용 ※ 일률적인 고도제한 완화는 제한되며,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을 통한 개별적 고도제한 완화 검토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비행안전구역 내 개별 사업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요청 시 적극 검토(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6. 예비전력 발전을 위해 국방비 대비 예비전력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예비전력 발전을 위해 국방비 대비 예비전력 투자 비중 확대 • '30년까지 예비전력 관련 예산이 국방비 총액 대비 2%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 증액 편성 * 2027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반영 완료 ○ 예비군 훈련참가비를 '26년 최저임금(10,320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음. • 동원훈련 I·II형 33만원, 지역예비군 기본훈련 8만원, 작계훈련 16만원으로 인상 추진 * 약 3,382억원 소요 예상 ○ 상비예비군 정원 확대 및 보상비 인상 추진 • 현재 3700여명 수준의 상비예비군을 5만명까지 확대하고, 보상비를 18만원으로 인상 추진 * 약 3,780억원 소요 예상 ○ 훈련을 잘시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훈련에 관련된 투자를 지속·확대하겠음. • 마일즈장비 도입 • 과학화 동원훈련장 구축 (27년~) • 드론 교육훈련 등 예비군훈련체계 개선 **나. 향후 추진계획** ○ 예비전력 예산 반영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기획예산처, 국회 등) 설명·협조 등 예산 획득 노력을 지속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7.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 협의에서 접점을 마련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5년 11월 한미 양국은 정상간의 공동설명서(JFS)를 통해 2006년 이래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양해를 확인한다고 강조 ○ 또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6 ~ '30)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상호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추후 별도 재협상 요청은 없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체(KIDD, SCM 등) 및 리더십 간 수시 소통(아웃리치, 공조통화) 계기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 ○ 또한, 2006년 한미간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원칙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협력해 나갈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8.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포함된 군사합의를 새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안보상황,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후 추진 필요
79.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 공개 여부는 통일부 주도 하 부처간 협의 필요 - 통일부: 정부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관계부처 조정·통제 - 원안위, 기후부, 해수부: 예성강 하류지역 해수 채취 및 분석 - 국방부: 민통선 이북지역 해수채취 필요시 출입조치 협조 **나. 향후 추진계획** ○ 정부 합동 특별 실태조사 업무 관련 적극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0. 별내역 군 전용철도를 육로수송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임무 수행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용부대(육군) 연계하육로전환시(갈매~덕산기준) 가능성 검토('26. 4월) • 운용측면 - 현행 관련법(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40톤 이상 K계열 특대화물은 육로수송이 제한되어 철도수송 반드시 필요 * 25년 철도수송 126량 중 96량이 K계열 특대화물 - 지작사 군용 HET 차량 지원이 가능하나, 각종 훈련전개 등 지원소요 대비 가용차량(60대) 부족으로 장거리 수송지원 제한 및 비효율성 증가 * 장거리 지원시 소요기간, 인원 증가 * 소요기간 증가시 계획된 일자에 창정비 제한 - 해당 전용철도는 광명·시흥지역 군 전용철도 사용중단('16. 9월 이후)에 따른 대체시설로 지속활용 필요 • 예산측면: 육로수송으로 전환시에도 톤당 수송비용 증가(약 20,920원)로 비효율적 * 25년 수송실적(45회 / 126량 / 약 5,000톤) 고려시 연간 1.04억 추가 소요 **나. 향후 추진계획** ○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전용철도의 지속운용 필요성 제시 ○ 퇴계원역 등 주변 가용지역 내 대체시설 설치 등에 대해 관련기관(LH 토지주택공사), 지자체(구리시)와 충분한 논의 및 평가후 추진 ○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육로수송 전환시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 제시 ○ 국방부 주관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현황 관리 및 조치(분기단위) * 2분기 점검회의: 4. 30.(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1. 국방부가 임명권을 가진 한민고 이사장·임원의 비리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핵심 비리 관련자에 대한 퇴진 조치 및 학교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경기도교육청 협조 특별감사 실시 : '25. 5월 ~ 7월 • 관련 이사장 및 이사 승인취소 처분 • 급식업체 부당계약 및 특혜제공 확인 ※ 한민고 이사장·임원은 국방부가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만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되, 추천된 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선임됨. ○ 비리 책임 이사장, 이사 승인취소 및 신임 이사장 선임(교체) 완료 : '25. 12. 1 * 신임이사장 : 46대 국방부 장관 정경두 ○ 문제 급식업체 계약해지, 신규업체 선정 : '아워홈' **나. 향후 추진계획** ○ 한민고를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로 전환을 추진하여 경기도교육청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사립학교 법인 해산,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2. 예비군 부대의 총기 관리 인력 부족과 관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기 자동화 손질·세척 장비 도입과 민간용역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시범사업)** 2작전사 예하 지역방위사단 내 7개 대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24년 8~11월) • 총기손질 및 실효성 면에서 성과 달성 - **(총기손질 측면)** 총기 주요부위 먼지 또는 이물질 등 효과적 제거, 총기 발청 방지를 위한 주유 가능, 자동화 손질 이후 총기의 변형·탈색 없이 정상적인 기능발휘 등 가능 - **(실효성 측면)** 일(6H) 500정 손질이 가능, 기상 및 장소의 제약 없이 상시 자동화 손질 장비 운용이 가능 ○ **('26년 확대 추진안 마련)** • '24년 시범사업 결과 고려, '26년 국방부 예산 반영 노력 및 '26년 이후 확대 추진부대(안) 마련 **구분** / **확대 부대** '26년 / 2작전사 예하 2개 사단(35·37사단) '27년 / 2작전사 예하 全 사단(31·32·35·37·39·50·53사단) '28년 / '27년 7개 사단 + 수방사 예하 全 사단(52·56사단) '29년 / '28년 9개 사단 + 지작사 예하 17·36·51·55사단, 1·2·3·5군단 ※ '26년 예산(안)은 기재부단계에서 미반영되어, 국회단계 증액 추진하였으나 최종 미반영 **나. 향후 추진계획** ○ **('27년 예산반영)** '27~'31 국방중기계획(안) 및 '27년 연도 예산 반영 추진 중 * '26년 약 4억원 → '27년 약 6억원(육군(안)) ○ '27년 예산반영과 연계하여 '27년 이후 확대 추진부대 수정(안) 마련 **구분** / **확대 부대** '27년 / 2작전사 예하 2개 사단(31·32사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3. GP·GOP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헬기·수송차량 예산 반영 및 거점병원 연계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민간위탁진료비 확대 등 전방부대 의료여건 개선 방안 추진(진행) •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확대 * ('25년) 84개소 → ('26년) 96개소 • 진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진 셔틀버스 증편 * ('25년) 53대(64억) → ('26년) 55대(78억) • 민간병원 위탁진료비 확대 - 지원대상에 '1차 전문진료 제한 부대' 추가 • 노후 구급차 교체를 위한 '27년 예산 반영 추진 (303대, 303억) ○ 의무후송항공대 작전대기 근무자 처우개선 추진(완료) •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개정 : '26년 2월 - 의무후송항공대 응급후송 작전대기 근무자(조종사, 의무요원, 정비사)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대상 포함 • 의무후송항공대 의료인력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 '26년 2월 / 121명 **나. 향후 추진계획** ○ ('27년 예산반영) '27~'31 국방중기계획(안) 및 '27년 연도 예산 반영 추진 ○ 전방부대 장병 진료여건 보장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4. 응급헬기의 실질적인 공동 운영을 위해 지휘체계 조정 권한 명확화, 무선통신망 재정비 등 운영기반 개선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군의무사령부는 응급의료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25년 3월부터 지역 소방(인천소방본부)과 MOU를 체결하여 임무수행 시 양 기관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형태로 공동운영하고 있음. •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위한 소방본부- 의무사령부 핫라인 구축('25. 4. 23.) • 소방헬기 출동 제한 시 군 의무후송전용헬기 응급환자 이송지원('25년 민간인 후송 총 7건) • 군 헬기 민간 인계점에 착륙 시 인계점의 안전확보 및 119구급차 연계 이송 지원 • 지역소방-군 응급환자 이송 합동훈련 시행 ('25.6.11. / '25.11.4.) • 지역소방-군 응급환자 이송 합동훈련 정례화 : 강화군 및 서북도서 지역 / 반기 1회 •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공통 통화그룹 생성건의 : 인천소방 헬기 및 군헬기 현장상황 실시간 파악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공동운영을 위해 민·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군·소방청 협업 관련 실무토의('26. 1. 13.(화))를 실시하였음. •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에서 범부처 후송헬기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예정('26. 3. 1.(일) 부)에 따른 협조사항 토의 • 소방청 - 의무사 항공의무후송 절차 모의훈련 시행 ('26. 1. 21.) • 소방청 헬기망 내 교신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범부처 응급의료헬기망 가입) 구축('25. 11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실질적인 범부처 응급헬기 공동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민·군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5.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상임위원회를 재개최하고, 공정성 우려가 있는 노무법인 선정 및 교체 절차와 재조사 추진 여부 등 사건처리 절차를 재점검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사 및 「계약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	❍ **고충처리위원회 재개최 및 재조사**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종료된 사안으로 위원회 재개최 및 재조사 추진계획 불필요 * 국방부 종합감사담당관-3713(2025.10.14.)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 한국국방연구원 감사실-872(2025.12.23.) 국방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 제출 ❍ **사건처리 절차 재점검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 처분요구 조치 완료 • 고충 처리업무 부적정 부서에 경고, 주의 및 개선 조치 완료(2025.10.24.) • 「계약업무시행세칙」등 규정 미비가 아닌 미준수로 인한 것으로 개정은 불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 - 조사 및 법률대리·자문 등 용역의 경우, 사업부서에 계약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6. 급변하는 한반도 위협 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수치 기반으로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비핵화 지수를 다시 산출·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문가 견해를 수치화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패널 구성원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등 연구의 신뢰성과 효용성 등 문제가 있어 연구원 내부에서 중단 결론('20.11.) ○ 비핵화지수를 다시 산출·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유관부서에서 검토 결과, 상기 문제점과 연구의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핵화 지수 측정 재개 관련 계획 없음.
87. 병 병역처분변경 심사를 총장 직속으로 하여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는 이미 각 군 본부에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신속한 심사를 위해 육군만 육군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매주 1회 심사 시행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현역복무가 어려운 병에 대해서 적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감독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8. 구직휴가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휴가 인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구직 청원휴가 시행지침 시달('25.10.30.) • 목적에 맞는 구직 청원 휴가 여부 확인 - 취·창업 필요성 및 구직의사가 있는 병사 대상 구직활동 계획 등을 확인,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2일 통합 또는 1일씩 분할 승인 • 휴가 복귀 후 구직 활동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 -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석기간 등 증빙 - 미제출 시 개인연가로 조치 • 구직 청원휴가는 국방부 취·창업사업,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지자체 일자리 기관, 대학의 취업 상담 기관 등 사업에 참여·활용 * 구직 의사 없이 형식적 상담 등에 참여하여 허위 증빙 서류 발급 등 휴가제도 악용사례 방지 목적
89.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위로 휴가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각 군별 위로휴가 통계 분석('26.2월~3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위로휴가 제도 개선안 마련 및 각 군 의견 수렴(~'26.6월) ○ 위로휴가 제도 개선 지침 시달('26.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0. 군사용 무인기의 연구개발, 시험비행, 훈련 등을 비상활주로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시정 요구에 따라 '영주 비상활주로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진행 • 목적 : 영주 비상활주로를 활용하여 평시 첨단 무인기 시험평가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운영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연구인프라 추진사업과의 중복성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 • 제안서 평가 / 계약 : 4. 2.(화) / 4. 13.(월) • 용역 수행 및 종결 : 4. 13.(월) ~ 12. 12.(토)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진행 및 종결 : ~ '26. 12월 ○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사업 추진 여부 판단 : '26. 12월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1-1. 나형윤 증인의 전역 과정간 의무조사의결서 조작 등 행정 오류와 보상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	❍ **의무조사에 대한 전수조사** **가. 시정·처리결과** ○ 의무조사의결서 조작 관련 사실관계 확인 • 의무조사심의간 상이등급 미판정 : 사실 - 이에 따라 보상 판정을 못 받음. • "병사" 전역기준으로 의무조사 시행 : 일부 사실 - 해당인은 "간부"이므로 간부 전역기준인 '심신장애등급'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당시 의무조사의 관련근거로 "병사" 전역기준(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기재하고, 급수판정은 전역과 무관한 간부 선발에 관한 기준(육규 176 건강관리규정)을 적용하여 기재함. - 다만, 상기 의무조사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 결과 이상없이 "전역대상"으로 의결됨. * 육규176 : 181호 수근 중수골 관절부 이상 결손 • 의무조사 동의 지장 조작 : 확인불가 * 원본 보관 중이나, 누구의 지문인지 확인 제한 ○ 재의무조사 관련 국방환자관리훈령 개정 • 의무조사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에 상관 없이 재의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26. 2. 10.) * (기존) 6개월 이내 → (개정) 기한 폐지 ○ 단, 증인의 경우 의무조사와 별개로 '22년도에 상이등급(2급)을 旣 판정받아 재의무조사 불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의무조사 절차 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하달 ○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의 군인재해보상심의 신청절차에 대해 지속 안내하고 관리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1-2. 나형윤 증인의 전역 과정간 의무조사의결서 조작 등 행정 오류와 보상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	❍ **보상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가. 시정·처리결과** ○ 보상 및 급여지급내역 확인 • 장애보상금 : '07년 1,294만원 지급 • 퇴직일시금 : '07년 525만원 지급 • 공무상요양비 : '08년 1,030만원 지급 • 보훈급여(보훈부) : 월 495만원 지급 ○ 미지급 내역확인 : 상이연금, 시효도과 사유 * 나형윤 예.중사가 '22년 재해보상심의에 상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07년 퇴직일 기준 5년 시효도과로 상이연금 대상 불가 **나. 향후 추진계획** ○ 임종득 의원실,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 국가의 명백한 과오에 따른 상이연금 미지급사항에 대해 심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군인재해보상법」 개정 ○ 의원 발의 시 국방부 검토의견 및 국방부 개정안 제출 예정 (5월 중) * '26년 국정감사 전 개정 완료 목표(의원실)
92. 평택 미군기지 공여 구역(CPX훈련장)이 지역민들의 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환 시기를 조속히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와 미군간 CPX훈련장 반환 협의를 완료하였음. • 다만, SOFA 특별합동위원회(외교부) 의결 대기 중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3. 특정 화장품업체의 국군복지단 납품 과정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국군복지단의 화장품 군납업체 선정 심사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국군복지단 납품 관련 감사 旣 실시('23. 11월) • 국군복지단의 복지사업 계약 이행 및 운영 과정상 미흡 부분에 대해 처분 요구 • 벤더사의 국군복지단 납품 관여 의혹 관련 수사 의뢰('23. 12. 13.) → 국.검찰단 수사결과 '혐의없음' 내사 종결('24. 7. 25.) ○ 자체감사 시 납품 비리 의혹 규명에 대한 실효성 확보 어려움. • 주요 의혹 대상인 민간업체에 대한 국방부 감사 제한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감사대상기관) ○ 보건복지관실에서 국군복지단의 복지사업 운영 전반 관련 관리·감독 철저 * 연간 업무계획 및 주요 사업 추진 시 국방부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나. 향후 추진계획** ○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보완을 통한 재발방지 ('26. 5월) • 공고문 및 계약서 신청자격 보완 - 군마트에 직접 납품 가능한 자 또는 그와 유사한 이행을 할 수 있는 물류 유통업체와 계약한 자 - 업체 서류심사 자료로 물류 유통라인 증명 必 * 자체 물류 유통체계 보유증명, 물류유통계약서 • 납품업체 및 밴더사의 부당이득 취득 방지를 위한 계약조건 수정(안) 마련 - 물류유통라인 증명 등 업무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때 "업체"는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합 동 참 모 본 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 개정으로 비상계엄 시 국무총리 및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회에 대한 ‘통고’가 ‘통보’로 변경된바, 해당 개정 내용을 원상복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계엄실무편람에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진행 중 • 국회 ‘통보’를 ‘통고’로 수정 • 국방부 ‘국방지휘본부 운영예규’에 근거하여 합참의 역할을 명시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총리 역할을 명시 • 계엄선포 시 국방부와 행안부에 동시에 통보하고 국회 통고 시 지체되지 않도록 명시 **나.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계엄실무편람 개정본 발간('26. 9월)
2. 서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조성할 경우 레이다 난반사, 소음·진동 발생 등으로 아군 장비 운용 및 전투 실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작전성 검토를 실시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작전성 검토 기준(안) 정립 추진 중 ○ 합참 차원에서 최초토의를 실시('26. 4월) 하였으며, 각 군에서 제한사항 식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작전성 검토 기준 정립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 반영('26.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미국 등에서 초소형 SAR 상용 위성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 군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정찰 전용 위성 사업에 대해 전환적인 접근을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군 우주협력 지속 추진 ○ '26년 신속시범사업 대상 전력으로 선정('26. 4월), 군 시범운용결과를 고려하여 소요 추진 * 사업명 : 상용위성 영상 활용 체계
4.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감축 · 재배치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는바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군사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평가)하고 미측과 조율해 나갈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연합방위태세는 굳건할 것이며, 한미는 '18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주한미군의 확고한 방위공약 이행을 확인 ○ 한미 합참의장은 '25년 MCM에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고, 한미 국방부장관은 '25년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 ○ '25년 한미 정상회담의 설명자료 (Joint Fact Sheet)에서 한미는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약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감축 · 재배치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는바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군사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평가)하고 미측과 조율해 나갈 것	**나. 향후 추진계획** ○ 합참은 현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동맹 현안의 원활한 협조와 우리 군의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진력하겠음. ○ 한미는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한 가운데, 상호 합의한 COTP의 기준·방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작권 전환 달성을 위해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합참의장은 제대별 카운트파트와 정례적인 협력 채널 및 24시간 수시 소통 채널을 가동 중임. 美 합참의장과는 MCM을, 주한미군사령관과는 PMC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수시 소통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력 재배치 등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음.
5. 훈련 위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전 전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설계·수집·분석하고 이를 우리 전투체계에 반영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 전용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추진 중 * 국방데이터 접근성 확장을 위한 보안정책 검토 등 병행 **나. 향후 추진계획** ○ 군 전용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데이터 전투체계 활용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드론전력 보강을 위해 국방부·합참이 중심이 되어 방위사업청과 이견을 조정하고, 지연되고 있는 드론 도입·전력화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드론 확보 간 이견은 관련기관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 해결방안 강구 및 협업 중 * 드론 납품 지연 및 지체상금 관련 방위사업청, 업체 간 이견 발생 **나. 향후 추진계획** ○ 첨단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드론 확보 추진
7. 12·3 내란 등 군령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일벌백계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실확인 ('25.8. ~ '25.11, 1차조사)」 및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25.11~'26.2, 2차조사)」 활동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개요 - 기간 : '25. 8. ~ '26. 2. (약 6개월) - 대상 : 비상계엄 관련 24개 부대/기관, 장성 및 간부(영관, 부사관) 약 860여명 • 조사 결과 - 수사 의뢰(수사중) : 총 114명 - 징계 조치(진행중) : 총 48명 - 경고·주의처분 : 75명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는 '내란전담수사본부(조사본부)'를 통해 추가조사·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또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북한의 신형 무기의 전력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북한은 2025년 국방발전-2025 무장장비전시회 및 당 설립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였는 바, 구체적인 제원 및 성능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 하 면밀히 분석 중 ○ 김정은이 핵·상용무력 개발 병진을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에도 신형 무기 개발 및 기존 무기 개량 등의 활동이 예상 ○ 우리 군은 북한의 신형 무기에 대한 기술분석 및 전력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미 정보공조 하에 추적 중이며 실제 능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북한의 신형무기 전력화 동향을 지속 추적
9. 전략사령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개념을 체계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우리 군 주도의 북핵 억제·대응을 위한 작전·지원계획 수립, 이와 연계한 합참 및 작전통제부대와 합동연습으로 실행력 제고 ○ 한미 전략사 등 5개 사령부가 참여하여 CNI-subWG을 통해 CNI 개념 발전·구체화 • 정례적인 CNI TTX를 통해 북핵 공격 시나리오에 기반한 북핵 억제·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방안 기획 발전 ○ 비물리 수단(사이버·전자기·우주) 관련 능력 소요 기획 및 발전 **나. 향후 추진계획** ○ 북핵 억제·대응 개념 체계화를 위한 상기 시정·처리 결과를 지속 추적·관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국군심리전단이 민간단체로 위장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조사 후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 이첩('25. 12월)
11. GPS 교란 대응능력 향상 훈련에서 3개 기관 간 정보 연동이 미흡한 문제가 확인된바, 소액 예산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인 만큼 중기계획이 아닌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즉각 보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현장출동팀-국군지휘통신사 관제센터 간 정보 연동 구축을 위한 부수장비 일부 구매 완료('25. 12월) ○ 출동차량 간 연동 소프트웨어 개선 적용('26. 4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후반기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 현장출동팀-국군지휘통신사 관제센터 간 정보 연동 구축 추진(~ '26.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중동정세 불안에 대비해 해외파병부대 대비태세 및 군사적 지원태세를 잘 유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해외파병부대는 강화된 부대방호태세 적용하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경계 강화 및 대응태세를 유지 중 ○ 재외국민보호 군사지원태세 유지를 위해 외교부·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나. 향후 추진계획** ○ 해외파병부대 안전 및 재외국민보호 지원을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13. 비상 계엄 관련 드론사가 정상적인 군령 및 작전지휘 계통을 거쳤는지 조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드론사 무인기 작전' 관련 조사 완료('26. 1월) ○ 드론작전사령관 파면 조치('26. 2월) * 계획수립 관련자와 작전수행 인원은 작전지휘 계통 및 작전수행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ISR 및 해상 정찰 자산이 대중국 견제 임무로 일부 전용된다면, 대북 방어선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용방지 및 보충계획 등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한·미 ISR 자산은 對北 임무에 집중 중 ○ 미측 ISR 자산이 한반도 전구 外 임무 시에는 사전협의 및 보완대책 수립 下 시행하여 대북 감시 임무에 제한사항을 최소화 ○ 중고도 무인기, 정찰위성 등 한측의 독자적 ISR 역량 강화 지속 추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한·미 ISR 자산 협력체 운용 강화 추진 ○ 유·무인 및 위성 기반 통합 감시정찰체계 구축 추진
15. 서북도서 경계작전 개념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과학화경계 강화 부분을 검토	**가. 시정·처리결과** ○ '서북도서과학화경계시스템' 추진은 해병대 소요결정 전력으로 선정('25년) ○ 총사업비 증가(500억 이상)로 합참에서 소요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통합소요 검토회의 시 합참 소요결정 대상으로 조정('26년 전반기) 후 소요결정 추진('26년 후반기)

육 군 본 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하여 각 군이 로드맵을 준비하고, 통합사관학교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의견 제시	**가. 시정·처리결과**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운영 : ’25. 9월 ~ 12월 ○ KIDA「사관학교 통합 추진방안」정책연구 : ’25. 9월 ~ ’26. 4월(진행)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추진방향 결정(’26년 상반기 추정) 시 국방부와 연계하여 육군 추진계획 수립 예정
2. 3사관학교 생도 안보견학·중요 시설 방문시 교육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 신중히 선정	**가. 시정·처리결과** ○ 안보견학 및 중요시설 방문 장소 선정기준 정립 : ’26. 3월(완료) * 교육 목적, 교육 효과, 안전 등 고려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사관생도 안보견학 및 중요시설 방문 시 선정기준에 충족된 장소에 한하여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사관학교 교수에 극단적 정치이념을 가진 인사가 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	**가. 시정·처리결과** ○ 교수 대상 종합면접 실시 : ’25. 11. 27. • 교수부장, 외부심사위원 2명으로 구성 • 군무원으로서의 자세, 준법성 등을 평가 ○ 신원조회 및 다면적 평가 확인 •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상자의 행적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구조화된 가치관 심층 면접* 도입 검토(’26. 6월) * 행동사건 면접, 상황판단 면접 등
4. 군(육군) 법무관 인사에 불공정 요소가 없도록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보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각 군 검찰단 군검사 직무평가 관련 제도 개선안 보고 요청 : ’25년 9월 * ’25년 국감 당시 민간 검찰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시 사건평정 위원회를 거쳐 과오 식별시 인사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군검찰은 관련 제도가 미비했던 상태였음 ○ 육군검찰단 ‘무죄판결 검토보고 제도’ 시행 • 무죄사건 검토보고 제도 설문 조사 : ’25. 9. 3. • 무죄사건 검토보고 시범 운용 : ~’25. 10. 31. • 무죄사건 검토보고 제도 시행 : ’25. 11. 1.부 ① 사건처리 평가 : 군검사 과오 여부 ② 평가 결과 활용 : 평정 및 인사요소로 활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정책부서의 소령 편제를 재검토하고 소령 경력관리모델 지침이 진급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지침으로 피해 입은 대대급 소령에 대해 향후 진급 선발 시 고려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육군본부 조직진단을 통해 육군본부 內 소령 21개 직위 삭감 예정 : ’26. 12월 ○ 삭감된 21개 직위 야전부대 편성보강 : ’26년 연도부대계획 반영 완료 ○ 창끝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개선된 소령 경력관리 모델’ 정상 시행 중 : ’24. 4분기~ ○ 소령→중령 진급지휘추전 시 대대급 이하 분리 시행 중 : ’25년 진급선발시부터 적용 중 ○ 관련내용에 대해 국회 대면설명 실시 : ’25. 10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소령 경력관리 모델 효과평가 및 제도 보완/발전 : ’26. 6월 * 보직·평정·진급관리 보완, 야전부대 우수자 보직비율 확대 등 ○ 개선된 제도 적용 : ’26년 후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군의 총기·탄약 관리체계를 즉시 점검하고,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군 실탄 분실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회수 및 관리 허점 보완을 실시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상급부대(국방부)와 연계한 현장 점검 • 현장확인 : 10. 20. ~ 12. 15. / 122개 부대 * 열쇠 이원화 관리 및 수불실태, CCTV 운용 등 • 사·여단 장성급 부대 자체점검 및 미흡사항 후속조치 : 완료 / '26. 1월 ○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지속) • 국방부/육본 통합 현장점검 시행 : 연 2회 • 사·여단 장성급 부대 시스템 보완(지속) * 일일, 주간, 월간 점검항목 준수 및 실천 ○ 월 단위 육군 군수분야 사고예방 추진 평가회의 시행 • 총기·탄약 분야 규정 준수 및 사고예방활동 공유 * CCTV 녹화지역 경고문 부착 등 창의적 방안 ○ 분실 발생 시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 해부대에서 자체 해결하다, 지연 신고 및 현장 훼손으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함을 고려 인지 즉시 신고토록 강조 **나. 향후 추진계획** ○ 총기·탄약 규정 준수 문화 개선 • 총기·탄약 상벌점 제도 시범 운용: 1. 6. ~ 10.31. / 3군단 * 여단급(대령) 이상 제대 상벌점 제도 시행으로 총기·탄약관리 규정 준수문화 정착 유도 * 시범결과 적용, '26년 9월 이후 全부대 확대 예정 ○ 스마트 총기·탄약관리 시스템 적용 추진 • '26년 후반기 시범사업 추진 - 3개 부대(15·25사단, 3사교) / 6.5억(국방부 지원검토중) * 생체인식, OTP활용한 제3자관제 시스템 등 * '27년 확대 적용 • 시범사업 결과 적용, '27년 확대 추진(22개 부대, 55억원) * '27년 이후 80개부대(200억)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총기 불출을 위해 필요한 5개 무기고 열쇠가 1개 통합 보관함에 동시에 들어 있는 등 부적절한 보관 방식을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통제성 열쇠보관함 무기고 열쇠 저장 실태 확인 * 10. 20. ~ 12. 15. 122개 부대 대상 현장확인 ○ 현장 점검간 사용부대와 개선방안 현장 토의 **나. 향후 추진계획** ○ 스마트 총기·탄약관리 시스템 적용 추진 • '26년 후반기 시범사업 추진 - 3개 부대(15·25사단, 3사교) / 6.5억(국방부 지원검토중) * 생체인식, OTP(일회용 비밀번호) 체계를 활용 제3자에 의한 관제시스템을 적용하여 통제성 열쇠보관함으로 개선 (상급부대에서 확인 및 승인 모니터링 가능) • 시범사업 결과 적용 '27년 확대 추진(22개 부대, 55억원) * '27년 이후 80개부대(200억)추진 ○ 수불빈도가 적은 열쇠 봉인 등 조치방안 개선 추진 • 야전부대 의견수렴 및 법무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검토(필요시 육군규정 개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대대 인원은 사단에 파견되고 사단 인원은 군단에 파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파견에 따른 인력 비편제 운영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비편제 파견 인원에 대한 원복 및 필요한 인원에 대한 편제 반영, 업무통합 등을 통해 비편제 운영 정상화 추진 : 110명 → 51명(-59명) • 불필요 인원 파견종료 : 42명 * ASIC 지원, 인성교육담당, 사단 힐링캠프 등 • 필수인원에 대한 편제 반영 : 10명 * 드론교육센터 교관 • 타신분 미보직 직위 파견자 복귀 : 7명 * 시설보수담당, 군인가족지원, 법무·감찰담당 등 ※ 51명은 최기 내 파견종료 및 편제반영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파견인원에 대한 원소속부대 복귀 지속 관리 (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AI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를 구축하여 경계작전 투입병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AI·드론으로 대폭 보강된 전방경계 체계(2개 사단 중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가. 시정·처리결과** ○ GOP에 AI기반 과학화 경계체계를 구축하여 경계병력은 절감하되, 경계수준은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 AI경계작전통제시스템 구축 下 GOP 경계전담부대를 창설하여 효율성 제고 ○ 현재는 2차 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 중)에 의거 목표연도('40년) GOP경계병력 최적화 방안을 검토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대상부대가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은 2차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이후 GOP경계병력 최적화 전제조건인 AI기반 유무인 복합경계작전체계 도입,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 전력화 등과 연계하여 향후 구체화 예정
10. 후방지역 군사시설 경계작전에 PMC를 활용한 민간용역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27년 군사시설 경계작전 관련 민간자원 활용 시범사업(2건) 추진 예정 * 주둔지 경계작전, 통합민간위탁(민통초소) ○군사시설 경계작전 확대시행을 위해 '27~'31 국방중기계획 소요제기 추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27~'31 중기계획 및 '27 연도예산 심의 및 검토 진행 경과 확인 : ~ '26. 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1. 제대별 지휘관을 보좌하는 인력편성을 재검토하고, 간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성급 부대 지휘부 인력을 야전으로 돌려보내 전투력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 검토** **가. 시정·처리결과** ○ 군단급 ~ 사·여단급 부대 지휘부 편성 검토 • 군단급 부대 - 임무가 중복된 군단 지휘부 지휘관리부사관(상사)을 삭감하여 대대급 부대로 편성 검토(-9명) • 사·여단급 부대 - '22 ~ '25년 사·여단 개편 시 임무가 중복된 지휘관리부사관을 旣 삭감(상사 28명)하였으며, 임무소요를 고려 現 편성수준(5명) 유지 중 ※ 사·여단 개편 시 삭감한 상사 28명은 중대급 교육훈련부사관 편성 등 야전부대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군단 지휘부 삭감(9명) 예정인 직위는 야전부대로 전환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군단 지휘부 직위 감편 추진 : '26. 6월 * 야전부대 편성보강 직위 검토 병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2. 제대별 지휘관을 보좌하는 인력편성을 재검토하고, 간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간부 부족현상 해소 방안** **가. 시정·처리결과** ○ 전방군단 하사 보직률 향상방안 토의 : '26. 2월 * 육본부터 全 제대의 통합적 획득 노력 * 복무기간 단축 등 추진과제(단기, 중·장기) 선정 ○ 인력 및 획득정책 관련 제도/규정 개선 • (인력)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선발비율 확대, 부사관 복무연장 최대 복무가능 상한기간 폐지 등 • (획득) 지원자 편의성 증대, 간부 지원자격, 행정업무 간소화 등 선발 시스템 개선 ○ 간부 복무여건·처우개선 • 경제적 보상 확대 *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등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여건 개선 * 간부 급식비 지원(작전, 훈련), 간부숙소 1인1실 확보 등 • 장병 자기개발 분위기 조성 * 내일배움카드 및 구직청원휴가 단기복무간부까지 확대 ○ '26년 육군 인력획득 추진전략 토의 : '26. 3월 * 위임선발부대 선발계획보고, 추진과제 토의 **나. 향후 추진계획** ○ 야전부대 인력획득 현장 확인 : '26. 5월 * 육본 통합TF 구성, 야전 현장 방문(18개 부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제대별 지휘관을 보좌하는 인력편성을 재검토하고, 간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계속)** ○ 인력획득을 위한 육군본부 역할(컨트롤타워) 강화 • 인력/획득정책 개선 추진 *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선발제도 개선 : '26. 6월 * 부사관 인력운영 개선방안 추진(복무기간 단축 등) •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인력획득 우수부대 선정기준 정립 및 인센티브 확대 등 • 주기적인 인력획득 협의체 운영(성과분석 등) * 참모총장 : 반기 1회, 참모차장 : 분기 1회, 부장 : 격월 1회 • 온·오프라인 모집홍보 영역 및 접점 확대 * 홍보 인프라(잡월드 등) 활용 거점 단위 통합홍보 등 • 전문기관/단체 협업 및 야전부대 현장확인 강화 * KIDA, 대학별 산학협력단, 민간 홍보 마케팅 업체 등 * 야전 현장 방문 및 의견 접수 지속 • 잠재적 지원자에 대한 홍보 및 획득 노력 * 청소년 및 가족 등 지원대상자 맞춤형 홍보 * 全 장군단, 지휘관 및 주임원사 모교 방문 홍보: '26. 5월 ○ 간부 복무여건·처우 개선 • 위관장교 근속정년 폐지, 직업안정성 제고 * 국방부 건의('25. 5월), 정책설명('26. 5월) • 경제적 보상 확대 지속 추진 * 초급간부 기본급 및 수당 인상 * 숙련된 인력 보상 강화(특수업무수당 등 신설/인상) 등 • 삶의 질 향상 * 간부숙소 1인1실 확보 지속,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3개 추가 지정 등(영천고 등) • 일하는 문화 개선 * 당직근무 직위 감축(월 4~5회 → 2~3회 수준)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육군 ROTC 학군장교의 복무기간(2년 4개월)이 타 군 대비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해병대 사령부 및 해병 2사단 현장 확인 : ’26. 1월 * 학군 복무기간 24개월을 유지 중인 해병대 또한 만성적인 초임장교 부족 및 지휘공백(4개월) 문제에 직면, 대리근무 이외 별다른 지휘공백 해소대책 없음 ○ KIDA 인력정책 현안 토의 : ’26. 2월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지원율 증가 효과 기대 • 획득소요 증가, 지휘공백 발생, 타 출신과 부사관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 등 부정적 측면 있음 • 전역시기 조정에 따른 취업 여건 개선으로 지원율 향상은 미지수(공채 감소 등 취업시장 변화 고려) ※ 단축 시 불가역적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관리 **나. 향후 추진계획** ○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전문 연구기관(화랑대연구소)에 연구용역 진행 中 : ’26. 9월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지원율 상승 효과성 검증 • 학군 복무기간 단축이 학사(36개월) 선발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초임장교 지휘공백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내용 검토 : ’26. 12월 * 초군반 적정 교육기간 재설정 검토(국방부, 정작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육군 경비정의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조하므로 노후 육군경비정을 대체하고 고속기동능력과 주·야간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한 신형 육군경비정을 확보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노후화된 現用 육군경비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26년 연도예산 부처안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 미반영, 이에 국회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예결위에서 최종 미반영 ○ '27년도 연도예산 반영 노력 • 방사청, '27년 연도예산 4.63억원 요구 **나. 향후 추진계획** ○ '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해 대상 사업설명 진행 예정 : ~ '26. 8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회전 관성력 탄약의 K201 유탄발사기 적용시험(K201 실사격평가) 및 기능 검증을 신속히 실시하고, 새로 개발된 탄약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K201 유탄발사기에는 미적용 * 특수작전용으로 개발된 탄약임 ○ K201 유탄발사기용 탄약을 회전 관성력 탄약으로 성능개선 추진('26년 ~ '28년) * 업체투자 연구개발 제안서 심의('26. 4. 30.) **나. 향후 추진계획** ○ 旣 확보된 탄약은 재고(234,112발) 소진시까지 오작용 예방조치 후 사용 * 사격 前 예방정비 및 손질, 재고량 '28년까지 사용 ○ '29년부터 성능 개선된 탄약으로 조달 준비 * '28 ~ '32 중기재원 및 '29년 예산편성 반영(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먼저 구축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현재 구축중인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구축 : 40개소 구축 목표(~'32년) • 구축현황 : 29개소 완료 / '26년 신규 5개소 추진 中 * 훈련장비 설치 : 29개소 완료(시설공사 연계) ○ 旣 구축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장비 교체 : 교체주기 고려 최신모델로 교체 추진 中 * 과학화 훈련장비 수명연한

구분	훈련관리체계	영상모의사격장비	교전훈련장비
내용	7년	7년	10년

• 장비 교체사업 추진계획

구분	완료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훈련관리체계 * 수명연한 (7년)	금곡	-	-	괴산, 박달, 서초, 용인, 이천,	노고산, 성남, 옥천 원주, 충주	남원, 보령, 수원, 양양, 진주 평택,	동해, 서산, 안산, 정읍, 춘천, 합천	강진, 김해, 부산, 순천, 세종, 울산, 금곡
영상모의사격장비 * 수명연한 (7년)	금곡, 괴산	완료(4월) 서초, 원주 진행 중(5월) 옥천, 충주	노고산 성남, 용인	박달, 수원, 안산, 이천, 평택	괴산, 금곡, 남원, 양양, 정읍	동해, 보령, 서산, 진주, 춘천, 합천	김해, 울산	강진, 세종, 춘천, 부산
교전훈련장비 * 수명연한 (10년)	금곡, 만종, 괴산	-	-	금곡 옥천 충주	-	노고산 박달, 서초, 성남, 수원, 안산, 용인, 이천, 평택	남원, 동해, 양양, 정읍	-

* '26년 : 영상모의사격장비 교체(평면형 → VR) 4개소 중 2개소(서초, 원주) 완료, 2개소(옥천, 충주)는 진행 중(5월 완료예정)
* '27~'32년 : 장비 수명연한 고려 교체사업 추진(旣 계획)
  - 훈련관리체계(29개소), 영상모의(25개소), 교전훈련장비(16개소) / 약1,040억원
* '33년~ : 훈련장 구축 진행(5개소) 및 준비중(6개소)인 11개소에 대해 중기예산 소요제기 및 교체계획 수립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구축 과학화예비군훈련장(대전 등 5개소) 대상 장비 교체사업 예산반영 : '29~'33년 중기계획 중 '33년 소요로 반영

○ 과학화 훈련장비 성능고도화 추진간 장비 수명연한 고려 교체계획 수립 병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6. 병력감축에 따른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5년 민간자원활용 추진계획 旣 수립(’25. 2월)下 추진 중 • 민간자원 활용 워킹그룹 구성 하 사업선정 (25개, ’25. 3월) • 25개 사업 선정 후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해 소요제기하였으나, 미반영(’25. 8월) • 민간자원 활용 주둔지 경계사업 관련 국회 증액사업 소요제기하였으나, 국회 증액(안) 미반영(’25. 12월) ○ ’27 ~ ’31년 중기계획 및 ’27년 연도예산 소요제기 : ’25. 2월 ○ ’26년 신규사업 소요발굴 : ’26. 2월 (5건 추가) * 사고예방교육 전문교관 운용 등 5건 **나. 향후 추진계획** ○ 민간자원 활용 타당성 확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6. 8월 * 대대급 부대 비전투임무 민간위탁 등 2건 ○ 국방부 연계 하 시범사업 확인 및 보완 : ’26. 12월 ○ ’27~’31 중기계획 및 ’27 연도예산 심의 및 검토 진행 경과 확인 : ~ ’26. 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육군항공 숙련 조종사 유출을 막기 위해 항공수당·연장복무수당 등 보상체계를 포함한 처우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회전익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예산 확보 노력 • '27~'31년 중기계획 반영 : '25.12월 - 대상/지급액 : 16~21년차, 월 70만원 • '27년 예산편성 육군안 반영 : '26.2월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 '26.1월 • 응급후송헬기(24시간 대기) 조종사 시간외근무수당 月 최대 인정시간 확대(57→150H)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반영 ○ '27년 예산편성 반영 추진을 위한 국방부 사업설명 : '26.3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 '26.4월(예정) ○ '27년 처우개선(수당조정요구) 사업 병행 추진 • 국방부 및 유관기관 사업설명/검토 : '26.11월 * 국방부 정책실무회의('26.4월), 인사혁신처 사업설명('26.5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8. 대대장・중대장・행보관・주임원사 등 육군 주요 직위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전출 시 유급휴가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타 직위와의 형평성 문제, 위로휴가 제도와 중복되는 점이 있어 제도 도입시 신중한 검토 필요(국방부 의견, '24. 11월) ○ '26. 4월 야전부대(장성급) 의견수렴 결과 * 보직종료 후 추가 휴가 부여에 대해 별도로 육군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찬성 34.6%, 형평성 고려 불필요 또는 현 적용 제도와 연계한 방안에 찬성 59.6%, 기타 5.8% ○ 現 육군규정 및 지침 범위 내에서 창끝부대 주요 직위자의 휴식여건 보장이라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 종합적인 방안 검토 中 *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위로휴가 7일 이내 부여 * 보직 종료 후 새로운 직위에 보직시 부임기간 7일 이내 부여 *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 영관급 이하 지휘관 대상 월 1회 전투휴무 보장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창끝부대 주요직위자 휴식여건 보장방안 검토 : '26. 5월 ○ 예하부대 지침 하달 : '26. 6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부사관 퇴직 시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부사관의 공무원 대우급수 상향 추진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국방부는 공무원 대우 급수 상향 추진에 앞서 군무원 대우급수 상향을 우선 검토 中 * 군무원 대우급수 상향 : 원사(6급 → 5급), 상사(7급 → 6·7급) ○ 육군은 국방부와 연계하여 대우급수 상향 필요성 검토 후 건의(박선원 의원실 의견) * 대우급수 상향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후 국방부 검토 간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공 **나. 향후 추진계획** ○ 야전부대 의견수렴 : ’26. 5월 ○ 대우급수 상향 필요성 검토 / 국방부 건의 : ’26. 6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 파주 포병부대 폭발사고(피해 현황·사고원인·저장수명 초과 여부·처리대상 탄약 등)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탄약 안전관리 위반·탄약고 노후화 문제와 폐기시설 부족 및 폐기탄 분해 기술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탄약폐기·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파주 포병부대 폭발사고 신속한 후속조치** **가. 시정·처리결과** ○ 교육용 탄약 관리실태점검 및 상태검사 : ′25. 9 ~ 10월 • 대상 탄약 : 지상폭발 모의탄 등 26종 • 점검 및 검사결과 이상없음 ○ 최근 5년 오작용 발생 교육용 탄약 특별검사 시행 : ′25. 10월 * 황색연막수류탄 등 5종, 검사결과 : 이상없음 ○ 정기 기능시험 필요 탄약 추가 조치 : ′25. 11월 * 폭발효과묘사탄 기능시험 절차서 개발 및 기능시험 추진 지시 ○ 폭발효과묘사탄 취급 및 관리지침 재강조 : ′25. 11월 * 사고예방을 위한 탄약 저장관리방법, 취급 및 안전 주의사항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탄약 정기 기능시험 시행 : ′26. 1 ~ 11월 * 위험성 탄약 및 유효기간 설정 탄약 등 기능시험 대상 탄종 中 대인지뢰 등 77종 시험예정 ○ 폭발효과묘사탄 기능시험 추진 : ~ ′28년 * 기능시험 절차서 개발('26년), 특별 기능시험('27년), 정기 기능시험('28년 이후) ○ 육본 주관 탄약 취급 및 관리실태 현장확인 : ′26. 6월 * 탄약 관계관 회의 및 지도방문간 현장확인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 파주 포병부대 폭발사고(피해 현황·사고원인·저장수명 초과 여부·처리대상 탄약 등)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탄약 안전관리 위반·탄약고 노후화 문제와 폐기시설 부족 및 폐기탄 분해 기술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탄약폐기·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탄약 안전거리 위반 및 탄약고 노후화** **가. 시정·처리결과** ○ 안전거리 위반 해소를 위한 저장관리개선 추진 • 저장관리개선 : 탄약이관 등 28,000여 톤 * '25년 안전거리 위반 해소 : 약 500여 건 ○ 노후 탄약고 신축 및 보수 지속 추진 • 신축 : 이글루형 20여 동, 지상형 60여동 • 보수 : 출입문 보강 등 800여동 * '25년 탄약고 완공 및 보수실적 기준 **나. 향후 추진계획** ○ 저장관리 개선 및 탄약고 신축·보수 지속 추진 • 신축 : 이글루형 50여 동, 지상형 120여 동 * '27~'31년 국방중기계획 기준 ○ 신소재·신기술 적용 탄약고 설계기술 개발 연구용역 추진('25~'27년) • '25년 : 계약체결 및 연구계획 수립 • '26~'27년 : 국·내외 폭발 실증실험 예정 **❍ 탄약 폐기시설 및 기술 부족해소, 관리방안** **가. 시정·처리결과** ○ '25년 폐기 탄약 비군사화 처리 : 2,900톤(524만여 발) ○ '25년 비군사화 기술 연구개발 : 3종 • 유도탄 추진기관(천마, 신궁), 155밀리 RAP * 기술개발 대상 422종 중 209종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폐기탄약 처리능력 확대 예정 : ~'32년 • 완공 : 자탄 분해시설('26년), 가열형 기폭시설('32년) ○ 비군사화 기술개발 연구 지속(213종) : ~'47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 관사·간부 숙소의 부족 및 노후화 문제와 육군의 관사 리모델링 물량·예산부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확대 : '26. 2월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신청 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없는 경우 지원 가능(대기기간 삭제) • 입주 가능한 공관사의 공급면적이 93㎡미만이며 4인 가족 이상일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가능 • 유지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 등을 고려, 보유기준 대비 100분의 5 이하의 공관사가 있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연장 신청 시 근무지역의 변경이 없는 경우 공관사가 있더라도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 가능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주여건이 좋은 거점도시에 대규모 단지로 타운화 조성 * 2군단(춘천시) 국방부 시범사업 : '26～'33년 / 8년 ○ 정주여건이 좋은 기존 관사 위치에 200실 이상 규모로 단지화 : '27～'31년 ○ 수도권 지역의 군용지 위탁개발을 통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관사 확보 추진 * 위례 등 6개 지역 : '26～'31년 * 고양 등 3개 지역 : 추진 中(시기 미정) ○ 소규모 단지로 산재하거나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전세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용 中이며, 지속 확대 추진 ○ 간부숙소 대상자에게도 전세이자지원 추진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개정 추진(국방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2. 국비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급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비 지원(위탁교육)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관련 특기를 부여하여 인사관리 시행 중 ○ 특히, 진급심사 시 개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진급지시에 반영하여 인사관리 중 • 경력 : 관련학위 취득 및 연구실적, 기여도 고려 심의를 통해 우수하게 평가 • 자격화 : 위탁교육 학위 취득자는 긍정적 평가 • 지휘추천 : 특기별 추천 - 특수특기 : 특기별 추천(대령 → 준장 제외) - 정책전문인원 : 특기별 추천(중령 → 대령 이하) ○ 추가적으로 육군에 요구되는 과학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인사관리 시행방안을 검토, 시행 중 : ’25. 11월 * 과학기술전문자격(석사학위) 부여, 직위 선정 등 ○ 진급 표준평가요소 별 선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6. 4월 (분석평가단) **나.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 인재 대상 인사관리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26. 6월 * 과학기술인재 (위탁교육자) 中 특수특기 확정자, 미래연, 국방과학연구소에 보직된 업무담당자 ○ 정책전문인력 인사관리 개선 추진 : ’26. 10월 * 정책전문인력 직위 개발 등 ○ 박사학위 위탁생에 대한 인사관리 개선 추진 : ’26. 11월 * 우수 성과자에 대한 전역 보류 방안, 성과기반 평가체계 구축, 유연한 획득체계 마련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3. 육군 불용군수품 매각 경쟁입찰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 후 수정계약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매각제도 개선방안 국방부 건의 : ’25. 12월 • 낙찰율을 고려한 품목별 매각 단가 산정 방안 등 ○ 경쟁입찰 간 수정계약 관련 지침 하달 : ’26. 2월 • 매각 진행 간 수정계약 최소화 • 계측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 등을 고려하여 총 매각대금의 10%이내 범위에 한하여 허용 ○ 불용군수품 매각 경쟁계약 전수조사 : ’26. 3. 3. ~ 31. ○ 전수조사 결과(최근 5개년) • 낙찰율 이상으로 단가가 책정된 품목은 총 5,972개 중 464개이며, 이 중 물량이 수정된 품목은 총 215개임 • 이를 통한 업체의 추가 이득은 확인이 제한되나, 일반적인 계약 대비 단가 변동폭이 과도하게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매각제도 개선 추진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국방부 불용군수품 매각지침(하달 예정)과 연계하여 매각제도 개선 추진 : ’26. 6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4. 군 장병 전용 사이버 도박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도박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불법도박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여 원천적 차단이 제한됨. ○ 예방교육, 사이버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지속) ○ 적발될 경우 엄정조치하는 등 노력 강화(지속) **나. 향후 추진계획** ○ 도박 차단 및 예방활동 지속 추진
25. 현재 베레모·전투모 중복 착용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입이 10억이 넘어가고, 베레모 제작 가능 업체가 한곳뿐이라 조달 지연이 빈번하고 품질개선이 어려움, 베레모 폐지를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야전부대 전장병을 대상으로 휴가, 외출·외박 등 출타 시 베레모 및 전투모 혼용 착용 시범 적용 중 : ’25. 9월 ○ 야전부대 베레모 및 전투모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 전투모를 선호하고 베레모 폐지 및 전투모로 단일화 의견 : ’25. 11월 * 전투모 선호 : 97%, 전투모로 단일화 : 92% **나. 향후 추진계획** ○ 군인복제령 개정 국방부 건의 : ’26. 4월 ○ 육군본부 전략회의 : ’26. 5월 ○ 군인복제령 개정 이후 육군규정 개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 독립군・광복군 및 신흥무관학교 출신 육사 졸업생에 대한 연구성과를 육사교 정과교육 반영	**가. 시정・처리결과** ○ 연구성과 • ’19년「독립군·광복군·신흥무관학교 출신 육사 졸업생 조사 기초연구」수행 • ’25년 「육사 졸업생 중 독립군·광복군 출신 6·25전쟁 참전자 연구」수행 • ’26년「육사 졸업생 중 독립군·광복군 출신에 대한 추모 현황」조사(진행) ○ 교육반영 • ’25년 2학기 군사사 전공교과목 수업시 독립군·광복군 출신 육사 졸업생 및 독립영웅에 대한 현황 교육 및 추모행사 실시 **나. 향후 추진계획** ○ ‘27년 정과교육에 해당내용 반영 검토(’26.12월) * 연구결과와 개인정보 공개 등 고려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이전 및 통폐합되는 대전광역시 5개소와 충남 금산군의 지역별 예비군 훈련장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통폐합되는 대전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26. 9월 준공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26. 9월 준공 예정인 대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운영준비 후 '27. 1월부터 예비군훈련 진행 예정 ○ 대전광역시 지역예비군훈련장은 5개소가 아닌 4개소이며 동구·서구는 세입대상 종전부지*로 전환 완료, 유성구·대덕구는 현역훈련장으로 활용 예정 * 종전부지 : 부대이전·해체나 재배치로 미래에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 충남 금산군 1개소는 세입대상 종전부지로 전환 완료 ○ 세입대상 종전부지 3개소(대전 동구·서구, 금산군)는 '28년부터 유휴시설철거 및 토양오염정화공사를 진행하여 완료 후 국방시설본부로 토지를 인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 장병의 생명과 임무수행에 관련된 화생방 보호장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화생방 보호장비·물자 중 화생방보호의가 부족하며, 부족 화생방보호의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28년까지 전량 확보 추진 중 • '25년 약 15만벌 획득하여 62% 보유 • '26년 19.6만벌 획득 예정으로 연말 약 80% 보유 예상 ○ 부족 화생방보호의 획득을 위해 소요 및 예산반영 노력 지속 • '28 ~ '32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연도별 소요량 반영 : '26. 2월(완료) • '27 ~ '31년 국방중기계획 예산 반영 : '26. 5월(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28년까지 부족 화생방보호의 확보 추진

해 군 본 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군 법무관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군 법무관 제도 재시행, 민간 장기 법무관 임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법무장교 인력관리 개선방안 참모총장 보고 : '26. 1.21. • 예비역 현역 재임용 계급 확대(중·대위→소령 이하) • 단기법무관 장기복무 선발 시 임시진급 확대(3→4년) * 장기복무로 선발될 경우 후배 장기법무관과 비교해서 소령 진급시점이 늦지 않도록 개선 • 단기법무관의 장기복무 수시 심의 * 단기법무관이 장기복무 희망 시 연1회 → 연중 수시로 심의 가능토록 제도 개선 • 법무 군장학생(군가산복무자) 선발 건의 (→ 국.군사법정책과/'26. 3. 5.) * 로스쿨 입학생 대상으로 군장학금을 지원하여 중기복무자 확보 및 장기복무 전환 유도 ○ 법무장교 인력관리 개선방안 하달('26. 1.24.) * 법무병과 인력관리 개선사항 홍보/설명('26. 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현역복무규정 개정 추진 : '26. 6월 * 법무장교는 계급과 복무연차에 상관없이 수시로 장기복무 지원 가능 * 규정 개정전까지는「법무병과 인력관리 개선방안」의거 先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함정 부사관(특히 하사) 충원율 저조에 따른 제고 노력을 함께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다양한 인력획득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 양성교육 단축(11→9주), 고정획득원(POTC 등) 확대, 부사관 선발기회 확대(4→5회) 등 • 해군 모병센터 창설 : ’26. 1. 2. ○ 체감형 처우개선 추진 • 함정근무수당(10%) 및 시간외근무수당(150시간) 확대 • 국. 장기간부 도약적금 적극 홍보 (장기간부 선발 시 3년 간 약 2,300만원 마련) ○ 「함정근무 부사관 충원율」 향상 TF 운영 * 참모차장 주관 협의체 운영 중 / ’25 ~ ’26년 • 희망전역 최소화를 위한 인사운영 개선 (지역교류, 장기선발 등) • 함정 승조원 순환근무제도 시범운영 등 • 1분기 추진평가회의 : 4월 ○ 유용원 의원실 요구자료 제출 : ’26. 3. 5. **나. 향후 추진계획** ○ 부사관 지원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부대-학교 간 교류협력 활성화 •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 부사관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지속 추진 • 핵심전력(함정/항공기) 수당 인상 • 도서·격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등 ○ 함정근무 부사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 * 4~5월 중 예하부대 방문 하 의견수렴 중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3. 함정근무 기피에 대응하여 승선 장병 삶의 질 개선사업(함정 통신장비 설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것</td><td>
가. 시정·처리결과
○ 시범함정(2척)에 저궤도 상용위성 장비 및 Wi-Fi 중계기를 설치하여 항해 중 함내 휴대폰 시범운용 실시 : ’25. 9 ~ 10월
• 주관/대상 : 해본 / 천지함, 한산도함(순항훈련전단)
• 운용결과 : 함 승조원 만족도 높음
○ 2급함 이상 함정(51척) 확대설치 예산편성 요청(→ 국방부) : ’26. 2월
<table>
<tr><th>구 분</th><th>’27년</th><th>’28년</th><th>’29년</th><th>’30년</th><th>’31년</th></tr>
<tr><td>대 상</td><td>DDH 등 6척</td><td>DDG 등 11척</td><td>FFG 등 14척</td><td>LST 등 11척</td><td>AOE 등 9척</td></tr>
<tr><td>예산(안)</td><td>21억</td><td>20.3억</td><td>26.7억</td><td>22.3억</td><td>18.6억</td></tr>
</table>
나. 향후 추진계획
○ ’27년 함정(6척) 확대설치 : ’27. 2 ~ 10월
• 대상 / 예산 : DDH-II 6척, 육상기반장비 / 약 21억
○ 잔여함정(45척) 확대설치(계속) : ’28 ~ ’31년
</td></tr>
<tr><td>4. 전문특기 중심 보직 편중을 완화하고, 병과 특성에 맞춘 기능별 인사·보직 운영을 강화하여 내부 현안 해결과 전군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td><td>
가. 시정·처리결과
○ ’25년 후반기 장교·장성 정기인사 시 직위 별 병과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한 인사·보직 실시
• 대령 정기인사 : ’26. 1월
* 사이버작전단장 : 함정(항해)→정보통신 대령 보직
• 장성 정기인사 : ’26. 1월
* 해본 군참부장 : 함정(기관) 병과 출신 장성 유임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전·후반기 장교·장성 정기인사 시 병과 특성에 맞춰 기능별 인사·보직 운영 강화 예정
• 전반기 정기인사 : ’26. 5 ~ 6월
• 후반기 정기인사 : ’26.11 ~ 12월(완료 예정)
</td></tr>
</table>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5. 군인의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td><td>가. 시정・처리결과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5. 10월 (김병기 의원 등 발의안)
○ 국방부, ‘신중 검토 필요’로 검토 : ’25. 11월
* 직무상 비밀에 준하는 국방 및 군사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중 검토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 법률 소관 부서인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와 연계하여 향후 법률 개정 진행 경과 지속 확인 예정</td></tr>
<tr><td>6. 중국의 함정이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왔을 때 비례성의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td><td>가. 시정・처리결과
○ 중국 군사적 활동 관련 감시태세 유지 및 비례적 대응 중
○ 중국 군함 활동 대비 아 비례적 대응 현황
<table><tr><th>구 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h>’24년</th><th>’25년</th></tr><tr><td>중국 군함 활동</td><td>219</td><td>266</td><td>240</td><td>363</td><td>329</td><td>354</td></tr><tr><td>我 비례적 대응</td><td>181</td><td>284</td><td>339</td><td>546</td><td>447</td><td>522</td></tr></table>* CUES(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 직통전화(H/L) 이용 우발적 충돌 방지 노력 지속
○ 비군사적 활동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유지

나. 향후 추진계획
○ 中 경비/훈련 활동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응하되, 我 전력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대응방안 수립/시행</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군사기지로 확장·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국방부, 외교부, 해경 등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작전 수행간 중국 서해 구조물을 지속적 확인 * 중국 주장 관리시설 1개,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탈 확인('26. 1.29.) ○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관계부처(외교부, 해수부, 해경 등)에 관련 정보 공유 **나. 향후 추진계획** ○ 해군-해경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 • 해경청 협조 방문 : '26년 5월(정작부장) * 해경함 경비작전 간 중국 서해 구조물 지속 확인 및 정보공유 요청 • 제8회 해군 대 해경 회의 : '26. 7월(잠정)
8. 해군 호텔은 관리위탁방식 재개정을 포함하여 수익비율·영업 운영비 유용 등 부적절 운영 문제에 대한 조치를 병행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수탁자 고발 및 계약해지 * 계약해지 : 서울, '25. 3.11. / 진해, '25. 5.30. ○ 수탁자, 계약해지 무효 본안소송 제기 * 서울 : '25.11.13. / 진해 : '25. 6.17. ○ 즉시 퇴거 재요청 및 조치사항 시행 통보 : '26. 1.30. • 조치사항 - 인건비/재료비 미지급('26. 2월~), - 주차장 지원 중단 및 인트라넷 공지('26. 3월) **나. 향후 추진계획** ○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 및 퇴거 추진 ○ 관리위탁 계약 관련 식별된 문제점 개선으로 재발 방지 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해군을 중심으로 해군 맞춤형 군 사회복지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의원실 대면설명 : ’25.11월 • 군 사회복지제도 개념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 미군사례 확인 및 우리군 적용방안 검토 • 미군의 FFSP제도 목적 및 기능 * FFSP : Fleet and Family Support Program * 목적 : 해군 및 가족들의 다양한 문제 관리 * 기능 : 가족안정 → 임무집중 → 부대전력유지 • 우리군 적용방안 - 전·출입시 주거, 이사비 지원 - 군 가족 정신건강 관리, 취업 지원 등 ○ 우리군 사회복지제도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공고 : ’26. 4.28.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간 * 연구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 2개월간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 고려 군 사회복지제도 개념 정립 : ‘26. 12월 ○ 해군 시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27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전 장병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全 장병 및 군무원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 사관생도(순항훈련전단 4학년 포함) 및 양성·보수 교육생 교육 완료('25. 10월) * 국방부 표준교안 기반 해군 자체 영상교재 제작('25.10월) ○ 양성/보수교육 과정 內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의무교육 반영 : '26. 1월 * 과목명 : 정훈 '민주주의와 헌법수호'(2H), 법무 '헌법과 국방관계 법령'(2H) ○ 해군사관생도 1학년 「헌법과 민주시민」 필수 교과목 개설 및 교육 : '26. 3 ~ 12월 * 주요 내용 : '헌법적 가치', '군인 기본권 이해' 등 * 과목명 : 헌법과 민주시민(교양필수, 3학점)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신전력교육 및 군법교육 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 분기 1회 이상 全 장병 교육('26. 5. ~12월) * 함정근무자 대상 집중 정신전력교육 시 필수교육 반영('26. 5 ~12월) ○ 국방부 주관 군 內 전문교관 양성 교육참가 및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 활성화 * 대대급 안보전문강사 초빙강연 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주제 강의('26. 5 ~12월) * 국방정신전력원 개설 직무보수과정 참가('26년 후반기) ○ 全 간부·군무원 온라인교육 의무 시행 : '26년 후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타군 대비 해군의 가혹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예하부대 가해자-피해자 분리 세부지침 이행 및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추진 현장점검 : '25.12월 • 도서지역 등 소규모부대 가해자-피해자 분리 세부지침 정립/하달('25.10.14.) • 2기지방호전대 등 15개 부대 대상 현장점검, 미흡사항 시정 및 우수사례 공유 * 우수사례 : 사고예방·병영부조리 척결 확인용 자체 진단도구(Check List) 운용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부대별 자체 부조리·가혹행위 여부 진단 : 매월 * 병영생활 부조리 진단표 활용 ○ 장성급 부대 지도방문 및 맞춤형 사고예방 컨설팅 : '26. 4 ~ 6월 * 4월 : 인천해역방어사령부(4.28. ~ 29.) * 5월 : 항공사령부(일정 수립 중) * 6월 : 1함대사령부(일정 수립 중)
12. 함정 탑승장병의 미래준비휴가는 육군, 공군과의 형평성 문제, 30일 전 전역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함정근무병 미래준비휴가 재검토 : '26. 2월 • '25년 전역병사(7,729명) 중 미래준비휴가대상은 함정 만기 전역자 1,551명(20.07%) • 함정근무 만족도 제고 및 숙련된 병사의 함정 계속근무 향상 등 효과 확인 • 불성실 근무자에게 미래준비휴가 시행을 제한할 수 있어 성실 근무 유도 가능 ※ 함정근무병 미래준비휴가 계속 시행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미래준비휴가 시행 간 강조사항 하달 : '26. 5월 • 허용기간 15일 준수 * 파병 등 부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심의 후 최대 30일까지 허용 • 전역 당일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됨을 강조, 영리행위 금지 등 법규교육 철저

공 군 본 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포천 지역 오폭 사고 등 공군 관련 일련의 사건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군 기강 확립을 점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공군 관련 주요 사건 원인 파악 완료 • 주요 사건 - 포천 지역 오폭사고('25. 3. 6.) - KA-1 외부장착물 투하사례('25. 4. 18.) - KF-16 유도로 이륙 및 이탈('25. 6. 11.) ○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노력 시행 • '오폭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25. 4. 7.) - 비행절차, 지휘 관리, 임무 통제, 상황보고체계 측면에 대한 보완 및 강화 • 「비행부대 운영 및 조종사 관리제도 혁신 TF」 운영('25. 4. 1.~6. 30.) - 조직구조, 인력, 비행운영, 조직문화 등 4개 분야 24개 과제 식별 및 추진 • 특별 부대정밀진단 실시('25. 9. 17.~9. 22.) - 국방부 지침에 의거, 병영생활, 교육/작전활동 등 4개 분야 36개 항목에 대해 전 부대 대상으로 실시 - 병영혁신 지도방문을 통한 사고예방 및 군 기강 확립 노력 지속 시행 **나. 향후 추진계획** ○ 인적과실에 의한 비행사고 예방을 위한 망각방지 교육 및 군 기강 확립 노력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공군 수송기가 군수물자 수송이라는 본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근 증가하는 군용 수송기의 휴양 목적 탑승에 대해 세부 목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정기공수 운영 기준을 정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수송정보체계 휴양자 구분 기준 구체화 및 기능개선(~4월, 완료) • 정보체계 內 정기공수 탑승자의 탑승목적 시현화면 개선 * 現 체계상 탑승목적이 공무, 휴양만 시현 ⇒ 공무, 휴양 外 세부목적(도서지역 근무자, 도서지역 거주자)이 시현되도록 기능개선 ○ 정기공수 구간취소 기준 개선(~6월) • 現 구간취소 기준(공규 5-37 항공수송) - 공무(출장, 도서지역 근무자 및 거주자) 1명 미만 또는 적·하역 화물 150LBS 이하 • '23 ~ '25년 정기공수 화물적재 및 인원탑승 실적 기반 운영실태 분석 후, 구간취소 기준 개선 및 규정 개정 추진(~6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항공수송 규정 정비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6월 4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성 비위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휴가 등으로 자연 분리된 경우라도 소문 유포, 탄원서 강권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 역시 원소속 부대에서 분리되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조사신청서 접수 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호에 따라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있음. * 관련근거: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행위자 분리 원칙, 사실관계가 확정 전이라도 행위자-피해자 우선 분리 • (성폭력 발생 시)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숙소 등 실질적 분리조치 (성희롱 발생 시)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조사신청서 접수 시부터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시까지 일시적으로 근무공간만 분리할 수 있으며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이 성립된 때에는 근무지, 숙소 등 실질적 분리조치 * 단, 사건처리 부대장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와 협의를 거쳐 성폭력과 동일한 분리조치 가능 • 피해자가 휴가(휴직), 전출 등으로 자연 분리된 경우라도 소문유포, 탄원서 작성 강권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는 원 소속부대에서 분리. **나. 향후 추진계획** ○ 공군은 17전비 사건 발생 지원 간 미흡했던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건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등 적극적 피해자 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2025년 공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문에 '각종 회의·모임 등 다수 인원 집합 시' 등 시기 표현이 불명확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바, 공문에 시기·주기·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전 장병 교육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체계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공군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지침 및 '26년 공군 성인지교육 운영계획 하달 시 교육 관련하여 세부 기준 명시 • 지휘관의 지속적인 예방교육 - 시기: 월간/주간참모회의, 부서별 주 마무리 소통(교육) 시간 시 - 내용: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지 표현, 사건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례교육 등 • 지휘관(부서장) 주관 특별/기회교육 (추가) * 특별강조기간/양성평등주간 지침 문서에만 명시되어 하달하던 내용을 연간계획 문서에 포함 - 시기: 하절기/연말연시 특별 강조기간, 양성평등주간, 필요시 등 - 내용: 사건처리절차, 2차 피해,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간부), 디지털/동성 간 성희롱·성폭력(병사), 일·가정 양립제도 이해(간부) 등 - 방법: 사례 중심의 교육자료 시청, 윤독-토의-발표 진행 • 지휘관(부서장) 주관 2차 피해 예방교육 (추가) - 시기: 성희롱·성폭력 특별 강조기간 中 1시간 - 내용: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 방법: 전문가 강의, 시청각/사이버 교육자료 활용 * 각 시기에 맞는 교육 참고자료는 전자문서 및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나. 향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지침 수립 시 명확하게 지침 하달하도록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故 이예람 중사 추모비 건립 등 예우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추모비 건립 추진경과 • 유가족이 요구하는 교육사령부 내 고인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 관련 검토결과, • 합동 추모 조형물 건립(안) 제시('25. 11월) - 공군은 순직의 존엄성, 공간적 의미 등을 고려 합동 추모 조형물 형태로 건립을 제시하였으나, 유가족은 상징적이고 독립된 조형물을 바라는 입장으로 논의 시행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유가족 면담 시행('26. 4월) - 공군과 유가족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건립(안) 마련을 위해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면담결과를 고려하여 예우방안을 검토 중임 ○ 국가유공자 관련 경과 • 보통전공사망심사 순직 Ⅱ형 결정('23. 2월) • 국가보훈부 주관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보상 대상으로 의결('24. 4월) - 공군은 보훈심사위원회에 대면설명,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나. 향후 추진계획** ○ 추모비 관련은 공군의 예우방안을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공군과 유가족 간 공감대 형성 시, 시행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불법 드론 조종자 탐지 장비 도입과 대드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철통 같은 영공 방위를 실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주관 대드론전력 신속획득 TF에 공군 대드론전력(RF스캐너 등) 확보 단기 신속획득 소요 건의('26. 1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유관부대(서) 협조 下 비행기지별 무인기 대응을 위한 전력 추가도입 검토 등 입체적 감시 및 전장 가시화 확장 추진 ○ 국방부 주관 대드론전력 신속획득 TF 결과, '27년 비행기지 드론 대응을 위한 고정형 통합체계 등 대드론 전력 배치/운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KF-16 성능개량 사업 시 예산 부족으로 HMD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추진경과 • ′24. 12월: ′25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 사업으로 HMD 확보 추진 결정(방사청) • ′25. 11월: 입찰 업체와 기술/가격협상 추진, 상호 이견 발생으로 사업 중단 • ′25. 12월: ′25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 대상 사업 선정 취소(방사청) ○ 현재 ′26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 사업(긴급)을 통해 HMD 구매 재추진 중임 * ′25년부터 방사청, 기품원 및 관련 업체와 지속 협조 중으로 ′26년 계약 가능 판단 * ′26년 긴급사업 신청(공본→방사청): ’26. 3월 3주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및 계약: ～′26. 9월(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KF-21 전투기의 미사일 탑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작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력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공대공 미사일 도입 시기 단축 • 최초 공대공무장 00발 도입 조기추진 - 27년 1분기 → 26년 3분기 ○ 전력화 이후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투예비탄약(계속사업)으로 획득 추진 ○ 전시 전투기 간 상호 보완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지 무장운용능력 적기 확보 추진 • 단계별 공대지 무장시험평가 후 전력화 추진하여 공대지 능력 적기 확보 • 공대지 임무를 KF-21이 수행함으로써 공대공 임무를 다른 기종이 수행 가능 ○ 항공무장 국산화 노력 병행 ※ 탄약 확보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전력화 초기 공대공 무장 부족이 예상되는 기간에는 타기종 전투기와의 전력 배비를 통해 작전 영향 최소화 가능 **나. 향후 추진계획** ○ KF-21 항공기 및 무장 보유 수준 등 임무수행능력을 반영한 전시임무계획 작성 • 공대공/공대지 능력을 반영한 임무 배정 • 상호보완 개념을 적용한 기종별 역할 분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조종사 유지비행이 전투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점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유지비행 관련 개선사항 시행 • 유지비행 시간 최소 30분 이상 준수 - 비행 기량 유지 및 공중상황 대처능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유지비행 시간 보장 ○ 공중근무자 유지비행 시 강조사항 하달 • 공군규정 '유지비행 관리' 지침 준수 강조 • 공중근무자 유지비행 내실화 - 전투기/기동기 등 기종에 맞는 임무계획을 통한 조종사 비행숙련도 유지 - 비행결과 공유, 식별된 보완·발전사항을 개선하여 임무 수행능력 향상 **나. 향후 추진계획** ○ 공규 '유지비행 관리' 개정 시행: '26. 5월 ○ 각 비행단 유지비행 시행결과 정기적 점검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명예와 자부심을 부각시키는 등 조종사 유출 방지 대책을 보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숙련급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 재정립('25.12월) • 검토중점: 시대변화에 따른 조종사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하여 유출방지 대책 보완 • 주요 추진(안) - F/C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방식 개선 * 임관 16~21년차 월 100만원 → 의무복무 종료 후 1~6년차 월 200만원 지급 * 추진현황 ① '27년 수당 처우개선 소요 제출(→국방부): '26.3월 ② 국방부 사업설명 및 정책실무회의: '26.4월 - 항공수당 인상 형태 변경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항공수당 현실화 - 조종사 근무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 * 비행운영 소요시간 및 비행소티 운영기준 재정립 등 조종사 일과운영 지침 개선('25.7월) * 창공마루 운영방식 변경: 입주기간 기준 및 서울지역 근무자 거주기준 개선 등('25.11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숙련급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 적극 추진 등 조종사 처우개선 및 복무만족도 향상 노력 지속 ○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부처(국방부·인사혁신처·기재부) 사업설명 및 반영 협조: '26.6월~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군의 스텔스기 탐지 및 추적능력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스텔스기(저피탐) 탐지 및 추적능력 보강을 위한 감시 전력을 ’25. 12월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으로 선정 ○ 합참 주관 소요결정을 위한 통합개념팀을 운영 중임(’26. 1월~) **나. 향후 추진계획** ○ ’26. 7월 합동참모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전력을 전력화(’30년대 초반)하여 우리 군의 스텔스기 탐지 및 추적능력을 보강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지속적인 무인항공기 조종사 확보를 위해 공정한 보상과 합리적 수당체계 확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공군 수당 처우개선 요구(안) 제출(’25. 3월) • 무인항공기 전문조종사 장려수당(5-2호) 인상 - 장려수당 인상: 月 18만원 → 위관 30만원, 영관 40만원 - 무인항공기 전력화에 따른 전문조종사 획득 및 안정적 운영, 열악한 근무환경, 유인기 비행 훈련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당 인상 추진 ○ 국방부 정책실무회의(’25. 5. 29.) • ’26년 처우개선 요구사업 심의 시 국방부 편성(안) 반영 ○ 인사혁신처 사업설명(’25. 6. 20.) * 인사혁신처 미반영(’25. 11월) ○ 공군 업무보고 관련 처우개선 대면설명 • 강선영 의원실(’26. 1. 29.) • 강대식 의원실(’26. 2. 10.) • 유용원 의원실(’26. 2. 24.) **나. 향후 추진계획** ○ ’27년 수당 처우개선 소요 제출(→ 국방부): ’26. 3월 ○ 국방부 사업설명 및 정책실무회의: ’26. 4월 ○ 관련부처(국방부·인사혁신처·기재부) 사업설명 및 협조: ’26. 6월～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북한의 기습공격 및 저고도 침투 전술에 대비한 방공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장기운용 중인 장거리 항공통제 레이다를 적기에 교체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기존 장기운용 중인 장거리 항공통제레이다 대체전력 체계개발 완료('25. 1월) • '08. 5월 : 소요결정 • '11. 7월 ~ '17. 12월 : 체계개발 • '17. 12월 : 사업중단(요구성능 미충족) • '18. 1월 ~ '21. 2월 : 사업 재추진 • '21년 ~ '25. 1월 : 체계개발(요구성능 충족) ○ 현재, 양산계약 체결을 위한 방사청 주관 계약 업무추진 중임.('26. 8월 계약 예상) **나.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장비에 대한 적기 전력화와 내실있는 운용요원 교육으로 우리 군의 방공작전 수행능력을 보강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주변국 방공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위해 다양한 방공위협 및 복합상황 모사가 가능한 차세대 전자전훈련체계의 적기 교체를 추진하되, 2031년 전력화 목표에 따른 훈련 공백을 메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차세대 전자전훈련체계(지대공위협전투훈련체계) 소요 결정: '25. 12월 ○ 現 운용 위협장비 장애 복구 추진 * SA-3 대상 국외정비사를 통한 창급정비 진행 중 : '26. 2. 23.~3. 31. ○ 연합/합동자산 및 한측 미사일방어자산(천궁, 패트리어트 등) 활용 전자전훈련 대체 시행 **나. 향후 추진계획** ○ 차세대 전자전훈련체계(지대공위협전투후련체계) 전력화: '31년(예정) ○ 現 운용 위협장비 정비를 위한 국외 유지보수사업 추진 검토 * 가능 여부, 필요예산, 실효성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추경에 반영된 기지전력망 비상전환체계 보강사업은 25~27년 다년도 사업인데, 당해년도에 종결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한다는 추경안 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추경사업에 대한 한전 위탁 집행 완료('25. 9월) ○ 추경 예산편성 관련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 사업관리 담당자 교육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공군 사업관리 담당자 교육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6. 비행장 내 비행 안전구역에 설치되어있는 시설 통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제1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 비필수 시설물에 대한 철거·이전 등 단계적 조치계획 수립 및 국방부 제출을 완료하였음 * 관련근거: 기지발전과-1126('26. 2. 24.) ○ 제1구역 내 시설물 설치 최소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필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전면개정 추진 중임 **나. 향후 추진계획** ○ 관련 규정 전면개정 추진(~'26년 전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공군 수송기의 일본 비상착륙 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비행 허가요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체크리스트 운용, 각종 규정 준수 강조, 국내 훈련 시에도 국제표준용어 사용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해외 연합훈련 단계별 Check List 강조 • 각 단계별(계획수립/승인, 부대이동/전개, 훈련, 후속조치) 각 부서의 업무를 명시 ○ 해외 비행 영공통과 신청 및 승인결과 다중확인 절차 수립 • (기존) 임무부대에서 영공통과 의뢰 및 승인을 공군본부에 직접 요청 • (개선) 임무부대에서 사령부(기동사, 전투사, 작전사) 요청하여 검토 후 공군본부에 요청문서 상신 - 영공통과 요청서 내 정확한 통과지점 및 타국가 영공진입 여부가 표시된 지도 첨부 추가 ○ 해외 비행 비상선포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용어 사용 강조 • 해외비행 전 지상교육 시 해당내용 포함 * 해외비행시 '예방(Precautionary)/비상착륙(Emergency Landing)'이 아닌 'Pan-Pan'/'Mayday' 용어 사용강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8. 위규비행 항공기에 대한 식별체계 및 절차가 미흡하므로 식별요격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R-75/P-73 위규비행 항공기에 대한 MCRC의 식별 및 조치절차를 구체화하여 항공정보간행물 및 국방부 지침서 반영을 합참으로 건의하였음. * MCRC 식별 및 조치절차(R-75 / P-73) ① 비행 1일전 비행계획서 접수(수방사 승인) 및 목적지 확인 * 수방사 승인받은 긴급임무의 경우 비행 인가번호 확인 후 임무가능 ② R-75/P-73 비행 인가번호 확인(수방사 승인) ③ 비행계획서에 따른 비행 확인 ④ 위규비행 확인 시 비상주파수 경고방송 ⑤ 필요시 전술기에 의한 식별 및 요격 * 전술기에 의한 식별 및 요격은 P-73 외측에서 실시가 원칙, 수방사 요청/협조 시 P-73 내측 임무 가능 ○ R-75/P-73 침범 방지절차를 공작사 전술조치 지침서에 반영하고 작전요원들에게 강조/교육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위규비행 항공기 식별 및 요격절차를 작전요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련절차를 지속 점검하겠음

해 병 대 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서북도서 해병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MRI 기기 구매 등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서북도서 MRI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보건복지부): ’25. 12. 5, ’26. 2. 12. * 도서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MRI 설치인정기준 완화 협의 ○ ’27년 예산편성 및 ’27~’31 중기계획 요구(→국방부) : ’26. 3월 * ’27년 MRI실 신축(11.9억원), ’28년 MRI장비 도입(17억원) ○ (해본) 서북도서 영상의학과 군의관 지원방안 토의 : ’26. 3.20. * 토의결과 :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군의관(총 4명) 활용, 분기 1회 서북도서 방문 추진 ○ (국방부) 군내 특수의료장비(CT, MRI) 운영방안 검토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26. 4. 7. * 전군 영상의학과 군의관을 수도병원 등 거점에 집중 배치, 전군 CT, MRI 설치부대 (서북도서 포함) 정기적 방문(반기 또는 분기) ○ 6여단 민간인 환자 진료 확대 관련 MOU 체결을 위한 관계관 회의 : ’26. 4. 9. * 회의내용 / 참가기관 : MOU 조항 초안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 6여단(인사, 의무), 옹진군보건소, 백령면사무소 **나.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심의 : ’26. 5월 * 서북도서 지역에 대해 관련 법령 완화적용 (인력, 병상기준) 여부 심의 ○ MRI실 신축(’27~’28년), MRI 장비 도입(’28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해병대의 준4군 체제 독립과 관련하여 13개의 권한 위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해군참모총장 지시('25. 11. 5.) * 해본 관련 부대(서)는 해병대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잔여 권한에 관한 위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해군본부-해병대사 과장급 실무자 토의('25. 11. 24.) ○ 해본 정작부장 / 해병대사 참모장 부서장급 토의('25. 12. 2) ○ '25년 해군·해병대 원팀 정례 협업회의('25. 12. 19.) * 해병대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해군의 해병대 지휘 감독 13개 권한 위임에 합의 * 즉시 위임 가능한 2건 신속 조치, 상위 법령·훈령·규정 제(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상급부대 협조하 '26년 국정감사 전까지 완료 목표 ※ 2건 위임[장교(소장 이하) 진급 및 중요부서의 장 추천권, 장성 징계권] : '26년 1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및 해본 소관부서 연계하 법령·훈령·규정 제(개)정 추진 : '26년 국정감사(10월) 이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부사관 충원율 감소로 인해 해병대 본연의 임무인 작전 교육훈련 수행이 제한되고 있는바, 해병대는 부사관 충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현역병 부사관 지원대상 범위 / 횟수 확대 • 배경 : 신병교육시 부사관 관심자 다수('25년 1,049명) 이나 실무배치 후 실제 임관 5% (47명) 불과 * 현역병(양성 교육 중인 신병 포함)이 부사관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제도 시행 추진 • 주요 내용 - 대상 : 일병이상 → 신병양성교육중인 병 이상 - 지원주기 : 연 4회 → 연 12회 - 신분 전환교육 확대 : 별도 교육 추가 검토 中 ○ 수색특기 부사관 선발전형 개설 • 배경 : 타군 특수부대 일반 부사관과 별도 전형 선발로 높은 지원율 유지, 안정적 획득 中 * 해병대도 수색특기 부사관 별도 전형 선발로 지원자 관심 유도 필요 • 주요 내용 - 수색특기 부사관 별도 전형으로 선발 * 특수수색여단 주관 일반부사관과 차별화된 체력/면접 평가 시행 - 수색특기 비선 인원은 전병과 통합 전형으로 전환 / 임관 후 수색특기 지원 기회 부여 - 모집홍보도 일반부사관과 별도 시행 **나. 향후 추진계획** ○ 현역병 부사관 제도개선 시범적용 : 4월 부 * 후반기 전면시행 준비 中 ○ 수색특기 부사관 별도선발은 5월부터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교육생들의 안전과 산악전 훈련의 완성도를 위한 산악전 훈련장 시설개선 예산 반영	**가. 시정・처리결과** ○ 정밀안전진단 결과 C, D급으로 신축 필요 ○ ’26년 연도예산 편성 요구 간 미반영 ※ 국회 증액 미반영 ○ ’27-’31년 중기계획 및 ’27년 연도예산 편성 요구 완료(→ 국방부) ○ ’26년 집행잔액 가용 시 추진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검토 / 심의 : ~ ’26. 5월 ※ 국방부 1차 심의 간 반영 → 총사업비 28.53억 ○ 기획예산처 검토 / 심의 : ~ ’26. 8월 ○ 국회 검토 / 심의 : ~ ’26.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서북도서 전문상담관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가. 시정・처리결과** ○ 서북도서의 경우 도서근무 ·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공석 지속 발생 中 • 내륙 ↔ 서북도서 인사교류 제도 시행 중이나, 근무여건 제한 사유로 퇴직사례 발생 - '23년 · '24년 : 각 1명 * 최초 임용시 2년 근무 후 본인의사에 의해 내륙부대와 교류(1년) ○ '25년 서북도서 처우개선 관련 조치사항 • 특수지(가급) 근무 수당 인상 : 9.75 → 10만원 • 서북도서 근무지원금 신설 : 10만원 • 군 숙소(독신자 숙소 · 관사) 지급 완료 : 4명 **나. 향후 추진계획** ○ 서북도서 상담관 근무여건 / 처우개선 확대 • 서북도서 근무지원금 인상 : 50만원(단계적 확대) / 국방부 연계 • 이사화물비 지원 : 현역간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국방부 연계) • 가족방문 면회객 선박운임 지원 협의 : 연 4회 (옹진군 연계) • 군 관사 지급 명문화(부대 예규반영) : 26년 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K-2 탱크 계열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방어력도 보완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K2전차(소요수정) 소요제기 : ’25. 4월 • 상륙작전 수행능력(초기 취약성 극복, 상대적 전투력 우세, 敵 주력전차 위협 대응) 보강 소요 • 세부 추진일정 - 합참 통합개념팀(ICT) 1~3차 회의 : ’25. 7~11월 - 1~2차 기술검토회의 : ’25. 8~9월 ○ K2전차(소요수정) 소요결정 : ’26. 3. 23. ○ K2전차 성능개량(일반소요) 소요제기 : ’26. 3. 31. * 방어력(敵 주력전차 + 대전차화기·드론 위협 대응) 보완 ↳ AI기반 360°상황인식체계, 복합능동방호체계 **나. 향후 추진계획** ○ K2전차 성능개량(일반소요) 소요결정 : 잠정, ’26. 5월 • ’26-2차 합동전략실무회의 : 잠정, ’26. 4 . 30.(목) • ’26-2차 합동전략회의 : 잠정, ’26. 5. 12.(화) • 368차 합동참모회의 : 잠정, ’26. 5. 22.(금). ○ 해병대 K2전차 총사업비 확보 협조 지원 • 방사청, 총사업비 협조 지원 : 잠정, ’26. 4월~’27. 3월 • 양산계획 수정 : 잠정, ’27. 5월 • 예산반영 및 양산 수정계약 : 잠정, ’28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해병대를 상징하는 상륙돌격장갑차 KAAV-Ⅱ 사업이 지연되어 주력 무기의 노후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KAAV-Ⅱ 전력화사업 정상 추진 中 • 탐색개발 종료 : '25. 6월 - 체계성능시험 : '23. 2월 ~ '25. 5월 * 주관 : ADD * 총 65개 항목 중 全 항목 목표성능 충족 - 운용성 확인 : '23. 6월 ~ '25. 5월 * 주관 : 해병대 * 총 61개 항목 중 52개 기준충족, 9개 미충족 (미충족 항목은 체계개발 간 설계반영 통해 개선가능) • 탐색개발 통해 체계개발 진입에 필요한 핵심기술요소 8개 全 항목 '기술성숙도 달성' ○ KAAV-Ⅱ탐색개발 결과를 기초로 일반소요 결정 : '25. 12월 ○ KAAV-Ⅱ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 : '26. 3월 ~ 11월 * 수행 / 선정 일자 : 국방연(KIDA) / '26. 3. 23. **나. 향후 추진계획** ○ KAAV-Ⅱ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 : ~ '26. 11월 ○ KAAV-Ⅱ 체계개발 착수 추진 : ~ '26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추가 운용인력 증원없이 현 해병항공교육대 자체 운용병력으로도 해병대 조종사 교육소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용 헬기 도입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교육용 헬기 소요제기 추진 中 • 소요제기 준비 - 유사전력 소요현황 분석 : '25. 6 ~ 11월 - 해병대 소요추진방향 토의 : '25. 12월 * 소요수정 / 통합소요 추진방향 검토 - 합참 전력담당 협조회의 : '25. 1월 *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확인 - 해병대 관련부서 협조회의 : '26. 2월 * 논리 보강을 위한 관련자료 협조 • 교육용 헬기 필요성 논리 보강을 통한 통합소요 검토요청서 작성 中 : '26. 5월 限 **나. 향후 추진계획** ○ 통합소요 검토요청서 제출(→ 합참) : '26. 6월 ○ 기관별 검토 : 잠정, '26. 7 ~ 8월 ○ 통합소요 검토실무회의 : 잠정, '26. 9월 ○ 통합소요 검토회의 : 잠정, '26. 10월 ○ 합동참모회의 : 잠정, '26. 12월 ○ 소요제기서(일반소용) 제출(→ 합참) : 잠정, '27. 1월 ○ 소요결정 : 잠정, '27년 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필수 방공전력을 보강하여 상륙작전 지원능력 약화를 방지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지방공레이더(소요수정) 소요제기 : ’26. 2월 • 敵 공중 위협에 대한 24시간 운용, 감시공백 보완(군단급 정면), 정비여건 보장과 일부 노후 장비(저고도 탐지레이더) 대체하기 위한 보강 소요 ○ 30mm차륜형대공포(소요수정) 소요제기 : ’26. 2월 • 現用 발칸 노후화 대체전력으로 敵 소형무인기(드론 포함)에 대한 Hard-Kill 능력 강화 소요 • 상륙사단에 배치하여 육상작전 시 사단 자체 소형무인기 방호대책 강구 ○ ’26년 후반기 사전개념연구 대상전력 검토 요청(기동형복합근접방호체계) : ’26. 3월 • 상륙작전에 특화된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경량화된 기동부대 근접방호체계 소요 (30mm대공포(ABM탄), 전파방해장치, 자체레이더, 유도미사일) • ’26년 후반기 사전개념연구 대상전력 선정 : ’26. 4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합참 등 관련 기관 연계, 국지방공레이더 및 30mm차륜형대공포(소요수정) 소요결정 : 잠정, ’26년 內 • 소요수정 ICT 연 內 추진 : 협의 中 ○ ’27년 통합소요기획(일반소요) 소요검토요청 및 대상전력(기동형복합근접방호체계) 선정 : 잠정, ’26년 內 • 통합소요기획 선정 시 소요제기 및 전력화 추진 • 소요결정 시 전력화 시기 : 잠정, ’32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구 해병대사령부 본관을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한국자산관리공사 실무협의 : '25. 11. 27.(목) **< 협의 결과 >** ① 구 해병대사 본관 문화유산등록은 국토부 용산공원 조성 추진계획단 및 기재부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현재 기재부 건물로 되어있는 본청을 관리전환이나 사용승인 후 관련 절차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 국가 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실무협의 : '25. 12. 2.(화) **< 협의 결과 >** ① 구 해병대사 본관의 근현대적 유산가치는 충분함. ② 서울시, 용산구청을 통해 소요제기 시 심의 추진예정 ○ 국토부 공원정책과 방문 협의 : '25. 12. 23.(화) **< 협의 결과 >** ① 구 해병대사 본관은 내부적으로 존치가 검토되어 있으며,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반영은 추후 용산공원 조성기획추진단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실무협의 : '26. 1. 23.(금) **< 협의 결과 >** ① 구 해병대사 본관 건물 일시적 사용승인 건의를 위한 실무협의(국방부 국유재산과, 국방시설본부) ○ 일시적 사용승인 건의(→국방부, 재경부) : '26. 4. 1.(수) • 목적 : 시설물 노후 가속화방지, 보수 및 유지관리 • 사용승인 기간 : 2년 단위 갱신(승인일로부터) **나. 향후 추진계획** ○ 일시적 사용승인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 국가등록문화 유산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 '26년 • 사전 현장토의 : 5월 中 / 국가유산청, 서울시, 용산구청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고시(5차)에 구 해병대사령부 본관 건물 활용계획 반영 : 지속 (안보·문화 복합공간 활용 : 박물관, 전시실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전 해병대사령관의 석좌교수 연임 여부 협의 당사자로서, 12월 말까지 김계환 전 사령관의 석좌교수 연임에 대해 단국대에 ‘연임불가’ 입장을 전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특별교원(석좌교수) 연임 여부에 대한 협의(‘25. 11. 6.)를 요청하였으나, ‘25. 11. 25.(화) 특별교원(석좌교수)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 처리됨.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북한의 신형 방사포 및 군집 드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적 방사포 및 무인기(드론) 위협에 대비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를 상급부대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대드론체계 시제장비 등을 우선 전력화('26. 2월)하였음. ○ 장사정포요격체계는 체계개발 진행 중이며, 고도화되는 적 무인기 위협 대비 지작사의 대응방향을 정립('26. 1월)하였음. * 적 위협 및 대응능력, 공조체계 강화방안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대드론 능력을 보강 중이며, '26년 말부터 대드론체계(재머) 및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를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음. ○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 지작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음. • 전· 평시 구분 하 적극적 / 소극적 대응방안 발전 • 현존 전력 성능개량소요 식별 및 제안 • 대드론 전력 신규 보강소요 검토 및 제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K1E1 전차 성능개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가. 시정・처리결과** ○ ’17년 9월 합참에서 K1E1 전차 성능개량 추진을 의결하였음. ○ ’19년 ~ ’24년 사업타당성조사 및 개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전력화 준비를 마침. ○ ’26년 최초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되었으나, 관련기관(육본, 방사청, 지작사) 노력으로 국회 심의단계에 반영(’25. 11월)되어 사업이 정상 진행 중에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지작사가 필요한 성능개량 소요가 사업에 정상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사항을 지속 확인하겠음. * 방사청 사업관리 회의 참여(수시, 지작사 의견 제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AI기반 경계작전체계 LiDAR 기술의 주요소요와 관련 소요제기 및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	**가. 시정・처리결과** ○ ’26. 1~11월, 5사단 (AI 경계작전센터)에서 미래 GOP 철책의 감지시스템 개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라이다 (LiDAR) 기술 실증 국방실험사업이 진행 중임. * 주관부서 : 육.기참부 유무인복합경계전력과 ○ 지작사는 소요군으로서 국방실험사업 각 단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26년 주요활동 - 요구사항 분석회의(SRR) 참석(’26. 1. 23.) - 상세설계검토의회(CDR) 참석(’26. 3. 4.) **나. 향후 추진계획** ○ ‘26. 11월까지 예정된 국방실험사업 기간에 현장확인,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육본과 함께 지작사의 미래 GOP경계작전개념에 부합된 실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 사업 중간회의 (’26. 6월) - 시험평가 참여 / 의견제시 (’26. 9월) ○ 국방실험사업 후 라이다(LiDAR) 기술이 미래 GOP 철책의 감지시스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육본 유관부서와 함께 평가에 참여(’26. 12월)할 예정임.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4. 전방지역 군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처우개선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td><td>

가. 시정・처리결과

○ (승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평정 재조정 등

○ (보직) 정기인사 시 희망 고려 우선 보직

○ (포상) 격오지 근무자 모범군무원 선발 우선 고려

○ (주거) 격오지 독신숙소 및 관사 지원

○ (수당) 육군 연계하 전방 군무원 장려수당, 중요직 근무수당 신설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육군의 「'26년 군무원 종합발전과제」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내 용</th></tr>
<tr><td rowspan="2">조 직
(2)</td><td>① 복무의욕 고취를 위한 정원구조 개선</td></tr>
<tr><td>② 임기제군무원 전시임무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td></tr>
<tr><td rowspan="2">채 용
(2)</td><td>③ 병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 전역자 9급 경력채용</td></tr>
<tr><td>④ 공개채용 시험 응시자격 개선</td></tr>
<tr><td rowspan="4">복 지
(4)</td><td>⑤ 民·官·軍 상생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td></tr>
<tr><td>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신설</td></tr>
<tr><td>⑦ 군무원 의료혜택 제도발전</td></tr>
<tr><td>⑧ 특수근무자 증식비 지급대상 확대</td></tr>
<tr><td rowspan="3">인 사
(3)</td><td>⑨ 전방지역(비선호 지역) 근무자 인사제도 개선</td></tr>
<tr><td>⑩ 장애인 군무원 채용 확대</td></tr>
<tr><td>⑪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td></tr>
<tr><td rowspan="2">교 육
(2)</td><td>⑫ 군무원 역량강화를위한 교육체계 개선</td></tr>
<tr><td>⑬ 군무원 정책발전 홍보 전략적 소통</td></tr>
</table>

</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취사장 가스시설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병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바, 인덕션 조리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취사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튀김솥 화재사고 예방활동 강조('26. 1월) 및 자동소화설비에 대한 일제 점검('26. 1~2월)을 실시하였음. ☞ 소방설비 및 비치품목 등 이상유무 확인 및 지휘관 주도하 화재사고 예방활동(교육) 병행 **나. 향후 추진계획** ○ 인덕션 조리시설 설치 및 운용 가능한 제대 규모를 판단하여 육본 및 국방부에 신규 설치를 건의('26. 1월)하였으며, 국방부 소관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임. * 국방부 11번 과제(물자관리과) : 각 군 취사시설의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확대 적극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전방에서 수행되는 불모지 작전이 해당 지역과 무관한 타 지역발주 구조의 개선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지작사에서는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예산)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검토 후 시행토록 '26년 지침을 하달('26. 2월)하였으며, '26년 전반기 예산을 각 부대에 배정('26. 3월)하였음. • 지침 내용 : 지역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경쟁입찰' 가능 여부 검토 / 시행 * 지역제한경쟁입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대해 특별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향후 추진계획** ○ 현재 각 사단은 '26년 전반기 배정받은 불모지작전 소요경감재 예산에 대해 검토 및 계약 준비 중에 있음. ○ 지작사에서는 각급 부대에서 법령을 준수한 가운데 예산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최근 6년간 GP·GOP 부대에서 보안위규가 다수(71건) 발생하였으며, 보안위반 사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일관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향으로 인해 보안 위규가 반복되고 있는바, 징계기준의 강화 및 보안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현행작전 부대인 GP·GOP 부대 중요성을 고려,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통제하였음. ○ GP·GOP 부대 대상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준수를 강조('26. 3. 4.)하였음. • GP·GOP 부대 근무자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준수 강조(지시)를 통한 징계 수위가 일관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향 방지 • GP·GOP 부대 특성에 맞는 보안점검 및 교육을 통한 보안위규자 발생 방지 - 독립주둔지 특성 고려 병사 휴대폰 무단반입에 따른 내부침해 행위, 보안통제체계 미실행 등 작전 및 사이버 보안 측면의 보안점검 및 교육 - GP·GOP 임무 특성상 관리되는 비밀을 다수 보유 중이나, 경험이 적은 인원 (소대장 등)이 투입되어 비밀관리 시 비밀 오인 및 지연파기 발생 등에 대한 보안 점검 및 교육 **나. 향후 추진계획** ○ 지작사 정기 보안감사간 GP·GOP 부대 보안위반자 처리 확인을 통한 보안점검 체계를 지속 정비하여 GP·GOP 부대 근무 장병의 보안위규 발생을 방지하겠음. * '26년 지작사 정기보안감사(6.23.~11.1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2작전사에서 사격훈련 중 도비탄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만큼, 총기・실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훈련주기를 고려하여 개인화기사격 안전관리 지침(2회)을 하달하고, 지작사 / 연지구사 부대훈련지침을 보완('26. 1월)하였음. ○ 훈련간 선제적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시행 중에 있음. • '25년 조치사항(총 630개소 : 6억 8,450만 원) - 피탄방지용 차단벽과 하향사격을 위한 방호벽 구축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탄지 일대 복토 및 탄두회수대 등을 교체하였음. • '26년 정밀진단 진행(총 597개소 : 6억 1,825만 원) -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진단을 통해 피탄방지용 차단벽과 옹벽 구축, 총기안전틀 교체·보완, 도비탄 위험성 간판 추가 설치 등을 진행 중임. **나. 향후 추진계획** ○ 정기 위험성평가 현장확인('26. 4월, 33개소)을 통해 사고예방 조치와 부대별 제한사항을 확인할 예정임. ○ 계절·시기적 요인을 고려, 분기별 사고예방 지침을 하달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하겠으며, ○ 육본과 연계, 부대별 제한사항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사격장 도입(소요제기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최근 집중호우로 군수품 피해가 다수 발생한 바, 자연재해에 대비한 군수·장비 관리 및 복구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집중호우·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각급부대에 하달 및 강조하였음. • 호우 대비 분야별 지침 하달(3회) - 응급복구지역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철저 - 병력 안전지역 대피 및 주요 장비 안전조치 등 • 대설 대비 분야별 지침 하달(2회) - 취약지역 사전 예찰 및 안전조치, 위험 우려 시 통제 및 대피 철저 - 강설 예보지역 중심의 선제적 대비 강조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 재난예방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 지작사 하계 재난 취약지역(1,078개소) 관리 중 • 위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선별(83개소)하여 '26. 6월 한 공사 예정(예산 108억원) ○ 호우경보 발령에 따른 모의훈련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예보 시 저지대 장비를 고지대로 이동 조치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장병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구조체계 개편 및 응급구조사 충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영상통화로 신속한 영상 의료지도 및 처치 / 후송 안내가 가능토록 응급환자 신고앱 체계 개선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25. 6월)하였음. ○ 의무후송헬기 출동 시 기상확인 및 출동물자 탑재, 이륙지시가 동시에 진행토록 출동절차 개선('25. 4월)을 통해 출동시간을 단축하였음. ○ 헬기 이·착륙 불가지역 환자 발생 대비 응급환자후송 FTX(반기 1회)를 통해 호이스트 운용 능력을 숙달 중임. **나. 향후 추진계획** ○ 육본 정작부 및 의무실과 연계, 전방 대대급 의무반 응급구조 부사관의 적시보직을 위해 '27년까지 임기제 부사관에서 일반하사로 편제조정을 추진하겠음. ○ 육본 인참부 및 의무실과 연계하여 응급구조사 충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 부사관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선발, 군가산복무제도, 응급구조사 면허 보유자 군사특기 변경 등을 추진 중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탄약관리에 있어 장부 허위기재, 요식 점검 관행을 근절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형식적인 탄약고 안전점검 관행 근절을 위해 훼손 상태의 예시 사진을 활용한 '탄약고 육안 체크리스트'를 제작·적용('25. 10월)하고, 관계관 간담회 및 소집교육('26. 2월)을 강화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육본의 '총기 · 탄약 관리시스템 개선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체계 개선을 추진 중임. • 현재 총기 · 탄약관리 상벌점제도가 시범적용 중으로 후반기에 전부대 시행 예정이며, 탄약 수불영상 채증용장비(69대)는 11월 보급 예정임. • 탄약고 비상벨 시스템 및 CCTV 개선, OTP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한 열쇠 보관함 관제체계 구축 등을 중기계획('26~'30년)에 반영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병 무 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병무청의 신체치수 정보가 각 군에 제대로 전달되어 신병들이 입영 초기에도 적정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역의무자의 정확한 신체치수 정보 파악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25. 12. 24.) • 병역의무자 신체치수 정보 입력 안내 강화 - (검사장) 수검자 대상 신체치수 입력 교육 철저 - (누리집) 신체치수 입력 홍보 및 안내 •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항목 개선 - 신체치수 입력문항에 허리·가슴둘레-신장 반영 - 신체치수 선택항목 세분화 * 상의(12개 → 21개), 하의(22개 → 24개) - 신체치수 필수입력 유도를 위해 '사이즈 모름' 선택문항 삭제 * 전체 수검자의 10~20%가 '사이즈 모름'으로 입력 - 신체치수 입력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투복 치수표' 팝업 표출 **나. 향후 추진계획** ○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의 신상명세서 내 신체치수 입력항목 개선('26. 4월) ○ 각 군에 훈련병 피복 지급 시 신체치수 정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26. 4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병역이행자 예우제도가 지자체별 편차가 크고 적용 기준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병역명문가** **가. 시정・처리결과** ○ 병역명문가 지방자치단체 예우조례의 혜택범위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병역명문가 예우조례의 혜택이 관내 거주하는 명문가로 한정하고 있어 전국 명문가로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우조례의 개정 필요 • 추진사항 - 지자체협의회 협조('24. 11월, '26. 2월)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방문 협의, 협조공문 발송 - 지방청장 관할 지자체 방문 협조(수시) * '26년 사업계획 포함·추진 ※ 혜택범위 확대(관내명문가 → 전국) 지자체 지속 증가 중 - '25. 8월, **34개** → '25. 12월, **40개** → '26. 2월, **42개** ❍ **나라사랑가게** **가. 시정・처리결과** ○ 롯데시네마 나라사랑가게 사업 협약 연장 (전국 가맹점 122개, '26. 1월) • 기존혜택 : 2D영화 1만원 관람(월6회), 콤보 3천원 할인(월3회) • 추가(개선) - 적용관람관 확대(일반 → 모든 스페셜관) - 할인쿠폰 현장결제(POS적용) 가능토록 개선하여 예비군 이용편의 제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사회복무요원의 근태기록을 복무기관과 연동하여 근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중('26.1월~) • (현행) '일일복무상황부' 수기 서명 후 사회복무포털 시스템에 출근 입력 •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한 본인인증으로 출·퇴근 자동 등록 ○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안)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이 전자적으로 근태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 유용원 의원 병역법 개정 발의('25.1.6.), 법사위 계류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근태관리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26년) ○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운영('27년)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4. 이중국적을 가진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을 포기하고 40세가 넘어 입국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td><td>

가. 시정・처리결과

○ 복수국적자 등이 병역의무 종료연령이 지난 후 입국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

* 유용원의원 발의('24.11.15.), 김병기의원 발의('25.8.29.)

* 국방위 전체회의 의결('26. 4.14.)

• '입영의무 면제 및 병역의무 종료 연령 등 상향'

조항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병역법 제71조)	병역의무 종료 연령 (병역법 제72조)	허가의무위반자 취업, 관·허업 등 제한 연령 (병역법 제76조)
연령	38세 → 43세	40세 → 45세	40세 → 45세

나. 향후 추진계획

○ 법사위 등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적극 협조

</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병역면탈 조장 범죄 수사 등을 위한 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증원 및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기구 및 인력 확대 추진 •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 1개 신설 추진 * (기존) 3개 광역수사청, 11개 현장청 → (개선) 4개 광역청, 10개 현장청 • 병역면탈·기피자 수사 및 포렌식 전문관 인력 증원 추진 * 총17명(병역면탈 예방·단속인력 9명, 기피자 단속인력 6명, 디지털포렌식 2명) ○ 디지털포렌식 노후 장비 교체(본청·서울청) 및 신규 도입(경북청·경인청) 추진 • 포렌식 최신장비 4대 도입('26. 6월예정) ○ 광역수사청 신설 및 인력증원에 대한 직제 요구서 제출('26. 3월) • 광역수사청(광주전남청) 병역조사과 1개 및 특사경 수사인력 17명 증원 요청 **나. 향후 추진계획** ○ 조직 및 인력 획득을 위한 행안부 등 유관기관 적극 설득('26. 4월~) ○ 디지털포렌식 최신장비 신규·교체 설치(~'26. 6월), 과학수사 강화('26. 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동원훈련 응소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동원훈련 응소율 향상 대책 • 동원훈련 참여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 강화 - 훈련 무단불참 시 처벌 등 안내 확대('25.10.~) 구분 / 기존 / 추가 대상 / 동원훈련 대상자 / 예비군 편성자 시기 / 입영 전 2회 / 매월 방법 / 알림톡 / 알림톡, 우편 - 홍보 콘텐츠 다양화 * 동원훈련 참여 필요성 등 포함, 카드뉴스 제작 및 SNS 홍보('26.2.) * '26년 동원훈련 달라진 제도 등에 대한 정책브리핑(국장, '26.2.) • 지방병무청 연기처리 실태점검 및 교육('25.10.) • 예비군 자원정비 철저로 연차이내 동원지정률 제고(수시) → 통지율 향상 ○ 위법 행위 시 법적조치 대책 •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동원훈련 1회 무단불참 시 즉시 고발 조치(연중)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응소율 향상 및 위법행위 법적조치 대책은 연간 지속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사회복무요원의 시설 이용자 가혹행위 방지를 위하여 복무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시설이용자 학대 시 처벌 기준 강화 (병역법 개정 '24. 2. 6., 시행 '24. 5. 7.) • 시설이용자 학대 시 고발 기준 강화 (기존) 경고 처분 4회 이상 → (강화) 3회 이상 ○ 시설이용자 학대 시 복무지도교육 대상으로 우선 선발순위 개선(3월) (기존) 3순위 → (개선) 2순위 **나. 향후 추진계획** ○ 시설이용자 가혹행위자 포함 복무의무위반자 제재 방식「병역법」개정 추진 • (현행) 연장복무 → (개선)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 박선원 의원('25.11.7.), 임종득 의원('25.12.10.) 발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지방이양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가 장기 대기 사유 병역면제 인원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지자체 전환사업 보전금 운용기간 연장 관련 부처* 합동회의('26.1.14.) • 지자체 전환사업 보전금 운용기간 연장 필요성 전부 동의 • 행안부 주관, 운용기간 연장 타당성 검토 신속 진행('26년 상반기) * 참석 :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병무청 **나. 향후 추진계획** ○ 지방이양기금 용도를 정한 유효기간 연장('26년→'30년) 및 국비 보전 등 복무기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연중) ○ 또한, 복지・돌봄・안전 등 국가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분야를 중점 발굴해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노력(연중) * 사회서비스 배정률 : ('25년) 77.8% → ('26년) 78.7%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부적합한 업체가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및 점검을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실태조사 및 평가 계획 수립·시행('25.12월) • 지정업체 선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강조 등 ○ 실태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 실태조사관 영상회의 개최('25.12월) - 실태조사 시 선정 관련 서류 확인 강조 * 실태조사관 등 35명 참석 • 상반기 실태조사관 집합 회의 실시('26.3월) - 컨설팅 사례 전파로 부적합 업체 선정 예방 교육 - 지방청별 현장 실태조사 경험 및 기법 등 공유 * 실태조사관 등 39명 참석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5월) • 추천기관(과기부, 중기부 등)에 각종 인증서류 확인 강조 협조 ○ 선정 실태조사 매뉴얼 수정·보완(9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병무청 보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담조직 상설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027년도 정기직제 요구서 제출 시 병무청 정보보호과 신설 요구 포함(행정안전부, ’26. 3월) • (현) 정보보호팀(임시기구, ’26. 6. 30.까지 존속) → (요구반영 시) 정보보호과(정규기구, 상설) **나. 향후 추진계획** ○ 정기직제 요구(안) 설명회 개최(’26. 4. 24.) ○ 요구(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와 적극 협의(’26. 4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상근예비역 제도, 귀화자, 탈북주민의 병역 면제 제도, 여성 복무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에 대응할 것	❍ **상근예비역 제도** **가. 시정・처리결과** ○ 수형사유 상근예비역 폐지 추진('25. 11. ~ 현재) • 각 군과 합동평가회의 안건으로 토의('25. 11월) • 수형사유 상근예비역 우선선발 폐지 관련 각 군 동의('25. 12월)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4급 보충역 확대 추진 • 현역병 자원 확보를 위해 상근예비역 선발체계를 개선하고, 보충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 개편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와 협의, 수형사유 폐지여부 결정('26년 상반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26. 7월) ○ 보충역을 활용하여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가능하도록 선발체계 개편 추진 ○ 관계부처 협의, 제도 정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여성복무제도 관련 사항** **가. 시정・처리결과** ○ 여성 병 복무제도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여성의 현역병 복무관련 의원 입법안 발의·계류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국회 논의 동향 및 국민여론 변화 종합 모니터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상근예비역 제도, 귀화자, 탈북주민의 병역 면제 제도, 여성 복무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에 대응할 것	❍ **귀화자, 탈북주민의 병역면제 제도 검토** **가. 시정・처리결과** ○ 고아·귀화자·탈북주민 병역감면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26. 2. 2.) •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 개선 방향 마련 ○ 「고아·귀화자·탈북주민 출원 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26. 2. 23.) • 병역감면제도 개선 타당성 및 대안 분석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용역 추진('26. 3~11월) • 의뢰기관 선정 등(3~4월), 연구용역(5~11월) ○ 출원 병역감면제도 개선 추진('27년~) • 제도 개선(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병역 면제자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 인원 감축 • 각 군 협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 처분 인원 감축('22년~) * ('22) 2,515명, ('23) 2,294명, ('24) 1,590명, ('25) 1,438명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 확대·발굴 • 철도공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 확대('25년) * 철도공사 배치 : ('24) 917명 → ('25) 1,027명 ○ 사회복무요원 적기 소집을 위한 제도 개선 • 장기간 소집대기자 소집순위 조정(3→2순위), 일반순위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감축('25년) * ('24) 417명 → ('25) 37명 • 정신건강사유 보충역 중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소집순위 조정(5순위 제외) 제도 시행('26년) **나. 향후 추진계획** ○ 현역복무부적합자 보충역 처분 감축 지속 및 소집 순위 조정(5→1순위)을 통한 적기 소집('27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대체복무제도 복무기간 단축, 복무기관 추가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대체역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속 검토 • 현행 제도에 대한 '24.5.30.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취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핵심 복무조건 변경은 중장기적 검토 필요 • 다만 정책환경과 국민인식 변화, 타 병역과의 제도적 형평성 제고 등 반영한 발전적 제도개선 모색 지속 ○ 대체복무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분할복무제 시행('25. 9월) • 현역병 등과의 형평성 보장 위한 청원휴가 사유 신설·확대('25. 7월) **나. 향후 추진계획** ○ 대체역 제도 복무형태 개선 검토 • 자녀 있는 대체복무요원 출퇴근 복무 검토(~3분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관계기관 협의 지속 • 예비군대체복무 5~6년차 출퇴근 복무 검토(~3분기) - 세부지침 마련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속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복무여건 개선 추진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10일 이내) 도입(~2분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편입심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대체역 편입신청자에 대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범죄·수사경력조회 권한 부여 검토(~3분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예술요원 편입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와 전통대회에 편중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정비를 위한 문체부 협의('26. 3. 20.) ○ 예술·체육요원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계획 보고('26. 3. 11.) •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나. 향후 추진계획** ○ 문체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개선방안 마련(~'26년 6월)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제3조 개정 (~ '26년 10월) ○ 정책연구용역 추진('26년 4월 ~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근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중('26. 1월~) • (현행) '일일복무상황부' 수기 서명 후 사회복무포털 시스템에 출근 입력 •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한 본인인증으로 출퇴근 자동 등록 ○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안)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이 전자적으로 근태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 유용원 의원 병역법 개정 발의('25.1.6.), 법사위 계류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근태관리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26년) ○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운영('27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6.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대상 복무지도 교육 미이수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복무규정위반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지도교육 개편안 마련('25. 12월) • 복무지도교육 확대 및 개선('27년)을 위한 예산 증액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개편안 : ① 갈등・고충사례별 행동매뉴얼 교육 ② 그룹별 문제해결 상담 ③ 교육인원(800 → 1,000명) 증원 ④ 교육기간(2박3일 → 4박5일) 확대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복무지도교육 예산증액 요구('26. 1월~) • 예산증액 중기사업계획 제출('26. 1월) - 예산총액 236,940천원(증 146,980천원) = 강사료 718백만원(4박5일) × 33개반(1,000명) * '26년 예산총액 89,960천원 = 강사료 346백만원(2박3일) × 26개반(800명) ○ 복무지도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26.4월~) • (현행) 2박3일 과정 → (개발) 4박5일 과정 • 개발 방향 : 갈등・고충사례별 행동매뉴얼 교육 및 그룹별 문제상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정신질환 사유 판정자 중 속임수를 사용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추진 • 병역면탈 악용 우려 질환에 대한 평가기준 적정성 검토 ○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 등 전역자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병역법」등 개정 추진 • 각 군 전역 심사자료 등 요구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개정 중 * 「병역법」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25.7.3.) •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자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개정 중 *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회부('26.3.13.) **나. 향후 추진계획**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추진 • 개정소요 발굴(3월), 의견수렴 및 회의(4~8월), 입법예고(11~12월), 시행 및 적용('27. 1월) ○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 등 전역자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전역심사 자료 범위 및 절차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후속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8. 예비군 소집 관련 행정업무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병무청 간 '정책협의체' 구성('25. 12월) • (목적) 예비군행정업무 병무청 일원화를 위한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협의 • (운영) 실무회의 실시(매월 1회) ○ 동원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30년 목표) • (병역법 개정 검토) 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병무청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도개선안 마련) 동원훈련Ⅱ형 제도 개선과제 선정 및 개선안 검토 • (시스템 구축) 동원Ⅰ형 시스템 기반 동원Ⅱ형 시스템 구성안 마련, 개발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 훈련신청·통지·연기 등 단위업무별 행정기준 정립, 훈련Ⅱ형 제도개선안 마련(~9월) • 동원훈련Ⅱ형 병무청 수행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6월), 국회 발의(~12월) ○ 동원훈련Ⅱ형 병무행정시스템 개발 예산확보 • 사업계획 수립(2~4월), 예산안 제출(5월), 기재부·국회 심의(6~9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한국어 소통 가능 외국인 군 복무 후 시민권 부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외국인의 군복무 활용 등은 국방부, 한국국적 부여는 법무부 정책결정 사항임. ○ 국가안보 및 국민 공감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인사 정책 등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등의 정책추진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 정신질환 악용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디지털포렌식 노후 장비 교체(본청·서울청) 및 신규 도입(경북청·경인청) 추진 • 포렌식 최신장비 4대 도입('26. 6월 예정) ○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양성 • 대검찰청 포렌식 전문교육 과정(3개월) 연계 **나. 향후 추진계획** ○ 디지털포렌식 최신장비 활용, 과학수사 강화('26. 7월~) ○ 신속한 과학수사 지원체계 마련('26. 4~8월) • 포렌식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제작 ○ 자체 포렌식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27년 예산 확보 및 전문분석관 증원 추진(~'26.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 해외동포의 병역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한 병역 이행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유관기관 협업으로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 마련 • 국방부 협업,「군 적응 프로그램」내실화 추진 - 다문화장병 정책개선, 한국어 학습정보 제공 및 병영생활 컨텐츠 개발(~'26. 5월) ○ 재외국민 병역정보 제공 매체 다양화(연중) • 다국어 버전 홍보 자료(영상물, 리플릿) 제작 - 다국어 가이드북 등 제작('26. 3월) - 기존 영상 영어 더빙 및 자막 추가('26. 4월)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MZ세대 선호매체 활용 광고 - (기존) 일반영상 → (개선) 숏폼영상('25. 7월) ○ 재외국민 대상 현지 병역제도 설명회 개최('26.3~4월, 2회) •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 (3월) 베트남, (4월) 일본, 홍콩 **나.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업, 병역이행 지원방안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2. 병역면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역면탈 범죄 형사처벌 강화 위한 '양형기준' 설정 추진 • 양형위원회, 범죄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도 등 고려 후순위로 불채택('23년/'25년) ○ 병역면탈자 형량 강화방안 연구 추진 • 연구주제 :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 연구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연구기간 : '25. 5. 1. ~ '25. 11. 30. • 연구내용 :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병역면탈 범죄 외 병역기피자 등 포함하여 양형기준 설정 권고 **나. 향후 추진계획** ○ 병역면탈 범죄 양형기준 설정 추진('26년~) •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등 방문 설명('26년~) • 양형기준 설정 신청서 제출('27. 5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3. 병역명문가 선정에 따른 혜택이 지자체 따라 상이한 점은 문제가 있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역명문가 지방자치단체 예우조례의 혜택범위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병역명문가 예우조례의 혜택이 관내 거주하는 명문가로 한정하고 있어 전국 명문가로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우조례의 개정 필요 • 추진사항 - 지자체협의회 협조('24. 11월, '26. 2월)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방문 협의, 협조공문 발송 - 지방청장 관할 지자체 방문 협조(수시) * '26년 사업계획 포함·추진 ※ 혜택범위 확대(관내명문가 → 전국) 지자체 지속 증가 중 - '25. 8월, **34개** → '25. 12월, **40개** → '26. 2월, **42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4. 잠복결핵 양성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무청, 국방부,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검사 치료정보 공유체계 마련('18. 8.) • 입대 전 - (병무청) 잠복결핵검사결과 양성자 대상 '검사결과 통보서' 등기 발송 및 휴대폰문자 발송, 잠복결핵검사 양성자 명단 질병청 통보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 치료현황 국방부 통보 - (질병관리청) 잠복결핵양성자 치료현황 및 현역병 입영자 중 양성자 치료현황 병무청에 통보 • 입대 후 - (국방부) 잠복결핵양성자 치료현황 관리 및 미치료자 치료 지원 **나.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치료지원 등 관리('26년~) • 자원관리 담당부서와 양성자 명단 공유 • 결핵검진 '공가' 부여 안내(주기적 검진 유도) •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현황 모니터링

방 위 사 업 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AI 무기체계는 데이터 확보와 학습이 중요한 체계로 기존 획득절차를 동 무기체계의 성격에 맞게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기존의 획득절차는 하드웨어 중심의 획득절차로 AI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기체계를 위한 별도의 획득절차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을 제정('25.12.)하여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에 적합한 획득절차를 마련하였음. *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중('26.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AI 무기체계는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데이터 축적 등 알고리즘 고도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AI 무기체계의 경우 지속적인 학습과 데이터 축적 등 알고리즘 고도화가 필수적으로, 전력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을 제정('25.12.)하여 전력화 이후 지속적 업데이트 제도를 마련하였음. *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중('26.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AI 무기체계 개발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애자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애자일 개발 등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앞서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문제점을 보완·조치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무인기 간 협업, 자율 운용 등 AI 파일럿 기술 개발’ 사업 등 애자일 개발 우선 적용 사업(시범사업)을 선정(’26. 2.)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신속획득 제도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군 소요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민간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업체 자체개발 완료품도 신속소요로 결정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함. • 신속소요 요건(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2) - (현재) 민간이 자체개발한 제품을 개량하여 군수품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 (개정) 업체자체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무기체계로 도입하거나 완료된 제품의 성능을 보완하여 무기체계로 도입하는 경우 ○ ’26. 3월 개정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현재 AI・드론・우주・사이버 영역에서 새로운 획득방식 도입 및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AI·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의 특성에 적합한 획득 절차를 신설하는 「(가칭)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음. • 획득 절차 구체화 및 법률(안) 마련(~'26. 3월) - 내·외부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한 보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안) 보완 •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획득체계 개선 등 법률(안) 검토 ○ 입법 추진(~ '26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4)와 국방부 내부감사(2023)에 따르면 ‘신속획득절차’ 확대 시 사업 실패 가능성이나 예산 낭비 위험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5. 9월, 12월, “신속시범사업 추진평가회의”를 개최(방사청·신속원 공동주관)하여 전체 사업 진행사항 보고, 현안사업 집중토의, 업무발전 방안 토의를 통해 수요군 - 방사청 - 신속원 간 제도 전반 및 사업관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 “신속시범사업 추진평가회의”를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반영하여 분기 1회 정례화하여 사업 진행 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나갈 예정임. **나. 향후 추진계획** ○ 신속시범사업 추진평가회의 개최 : 분기 1회 ○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개정안 마련 : ~ ’26. 6월 • 신속시범사업 추진평가회의 정례화 실시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선도적 국방우주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찰 및 감시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미국 우주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을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독자적인 정찰 및 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21~'25년 간 497억원을 투자하여 차기 군 정찰위성(425-II) SAR 안테나 핵심 구성품 개발 기술 확보 완료 ○ 미국 우주군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주한 미 우주군사령관 면담('25. 10월) 및 미 우주군사령부 최고과학책임자와 협조회의 개최('26. 3월) **나. 향후 추진계획** ○ 425-II 사업 착수('27. 1분기) ○ 한미 우주과학기술 실무협의 정례화 및 상호 연구시설 방문 등 협력 지속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자폭드론의 적극적 예산투자, 시험평가체계 구축, 조기 전력화 로드맵 수립, 전용 시험장 확보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중기계획(안) 마련('26.3.) • 적극적인 중기계획 예산요구 완료 : 4,043억원 ○ 시험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국방 드론 품질 인증 방안(기품원)」 수립 완료(26.3.) • 현실태 분석 • 드론 품질인증 제도 구축 방안 ○ 군용 소형드론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완료('26.3.) • 드론 산업의 기반 수준 조사 • 필수/우선 국산화 품목 및 범위 도출 • 로드맵 작성 ○ '국과연 인프라 보강사업' 계획 검토('26.3.) **나. 향후 추진계획** ○ 시험장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 : '26.4.~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부정당 거래는 K-방산 신뢰성과 국가브랜드에 악영향을 주므로 부정당 비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실히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가별 처분 기준(사유, 기간 등) 상이, 해외 제재 및 소송 정보의 실시간 확보 제한 등의 사유로 타 국가의 부정당 제재 결과를 국내 입찰에 적용하는 것은 제한 • 타 국가 부정당 제재의 국내 적용 불가 사유 강대식 의원실 자료 제출('26.1.15. / '26.1.20.) ○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정당 거래 건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하겠음.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현재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다출처영상융합 체계 완성형 사업도 향후 진행할 예정이므로 두 사업에서 연동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초소형위성체계-다출처영상융합체계 연동통제문서(안) 검토 회의('25. 12월) 실시 •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의 운영간 문제점 식별 및 개선사항 협의 ○ 초소형위성체계-다출처영상융합체계 간 연동장비 개발 관련 기술검토('26. 2월) 실시 • 연동메세지 포맷 기준 관련 검토 진행(국통사) **나. 향후 추진계획** ○ 초소형위성체계-다출처영상융합체계 연동통제문서(안) 검토 2차 회의('26. 4.) 예정 ○ 초소형위성체계-다출처영상융합체계 연동통제문서(안) 확정('26. 6.)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중 UH-60 헬기 화재진화장비 사업과 같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가. 시정처리 결과** ○ 현존사업 수행기관을 기품원으로 일원화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25.12월)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비용분석 및 무기체계별 전문센터 등 내부조직**을 활용한 사전분석 정교화 * 비용검토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 20%이상 포함토록 규정 ** 관련근거 : 성능개량연구실-68(2026.1.8) 품질연구본부 내 Matrix 조직 운영 성과 및 확대계획 보고(원장)  ○ 사전분석 간 비용분석 이외 효과분석 수행절차 신설 관련 제도개선 추진 중 • 비용-효과분석 필요사업 선정기준, 필요시 외부 사전분석 수행 방안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비용-효과분석 수행방안 검토 및 규정 개정 추진 ○ 기존 사업에 대한 성능검증 절차 준수하여 사업관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군단정찰용 UAV-Ⅱ Block-1사업의 시제기가 모두 파손되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시제기 파손 원인분석 후 개선사항 조치 완료 * 국회(유용원 의원실) 서면질의 답변 제출('26. 3.) ○ 군단정찰용UAV-Ⅱ Block-1 체계개발 사업 중단 • 시제기가 모두 파손되어 사업 계속 추진 제한 * 제133회 분과위원회 보고('25. 12.) **나. 향후 추진계획** ○ 체계개발간 획득한 기술은 Block-2 등 차기 UAV 개발시 안정적 사업관리에 활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무기체계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한 공급망 관련 업무 추진의 기틀 마련 • 관련기관에 공급망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 공급망 관련 업무 추진의 근거 마련 ○ ’26년 신규 비축예산 확보(7.5억원)로 방위산업 추가대응능력 확보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100대 무기체계 조사·분석 및 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방위산업 공급망 데이터 및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능력 확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방산업체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전략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수출통제로 인한 자재 수급 발생 시 유관부처 정보 공유를 통해 필요 물자 방산업체 대여 추진 • 유관부처와 유선, 대면 회의를 통해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하였고, 필요 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안건 상정, 정보 공유하여 필요 원자재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 **나. 향후 추진계획** ○ 공급망 관리를 통해 방산업체가 필요한 물자 실시간 식별 ○ 해당물자가 신속히 공급되도록 유관부처간 협조/협력 제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업체 비축’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정부비축’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방산업체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 등을 정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정부비축’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3.31.) •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 추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후 국회 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 연내 개정 추진 • 방위사업법, 관련법령 및 내부지침 개정으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 및 방산업체 지원 제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6. 특수침투정 사업은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31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지연사유) 탐색개발 ('16.12.~'19. 4.) 종료 이후, 사업타당성 재검증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업추진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여 선행조치 수행 후 추진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 • 추진방법 등 검토를 위해 선행연구('22.), 합참 소요수정('22.), 사업분석('24.), 기술성숙도평가('25.) 등 선행조치를 수행하였음. ○ (대책) 소요수정 반영 및 사업분석, 기술성숙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 완료 ('25.12.)하였고, 예산 확보 후 적기 전력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하겠음. • 국내기술 수준, 전력화 시기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획득방법을 국외구매로 변경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업타당성 재검증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 '26. 12. ○ 구매계획 수립 및 공고 / 계약체결 : '27. 2. / '27. 12. * 추진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조치완료일** : '25. 12.(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심의·의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이 성능확인 관련 지연되고 있는데, 후속사업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능확인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성능확인 기준 마련 완료('26.2.24.) • 성능확인 대상 항목*에 대해 유관기관 및 입찰참여 업체와 협조회의(2회/국감 이후), 현장확인(1회), 기술검토위원회(1회)를 통해 기준 마련 * (기품원 수행) 원격제어, 감시장비 (국과연 수행) 적재중량, 최고속도, 항속거리, 연속운용시간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8. 소요군에 인도된 이후 사용자 불만 제기 전까지는 방위사업청의 국내구매사업 대상인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소요군의 성능확인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기품원은 해당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을 현 제도* 내에서 수행중에 있음. •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 품질보증 및 해외구매사업 기술지원을 수행 • 국내구매 전력지원체계는 소요군 기술지원 형태로 업무 지원 - 단, 무기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규격이 있는 일부 사업은 기품원 품질보증 수행 * 항공기 급유차('23년, 약 300억원) 등 •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제도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0조(민간에서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4조(추진대상) -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 제68조의2(무기체계 구매시 품질보증) **나. 향후 추진계획** ○ 소요군 성능확인 시험지원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2026년 3축 체계 예산을 약 22% 증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 준비 및 관리를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예산 증액 편성에 따른 사업준비 및 관리 강화 • 사업 점검회의를 통한 3축체계 사업 지연요소 사전 식별 및 중점 사업 관리 강화 **나. 향후 추진계획** ○ 3축체계 사업 준비 및 관리 강화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5.12.) 절충교역 추진 예외의 경우로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구매시'를 삭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개정 ○ ('26.1.) 절충교역 지침 개정으로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시 절충교역 적극 추진관련 조항 구체화 • (지침 제4조) 절충교역 추진원칙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 • (지침 제8조) 외국정부와 계약 체결하여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추진 예외 조항 삭제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 신속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종결정 평가계획 수립을 명확히 하고, 국가공인기관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기종결정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성능확인 기준 마련 완료('26. 2. 24.) • 성능확인 대상 항목*에 대해 유관기관 및 입찰참여 업체와 협조회의(2회/국감 이후), 현장확인(1회), 기술검토위원회(1회)를 통해 기준 마련 * (기품원 수행) 원격제어, 감시장비 (국과연 수행) 적재중량, 최고속도, 항속거리, 연속운용시간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2. 환리스크 대응을 위해 업계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환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함. • 방산관련 기업대상 환리스크관련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방위산업진흥회, '26. 3.25) - 긴급경영안전자금, 수출바우처,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약 보증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3.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데, 국방사업들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업타당성조사(이하 '사타') 기준금액 조정은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협의 중 * 3.24.(화), 기획처 방위력강화예산과장 주관 사타 제도개선 추진방향 토의 (방사청, 국방부, KIDA, KISTEP 참석) **나. 향후 추진계획** ○ 사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4월 2주 * 국방부, 합참 등 유관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4.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예산 300억원 삭감되었는데, 작전요구성능(ROC)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ROC에 따라 AI기술을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적용방안 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ROC 변경 관련 관계기관/소요군 의견수렴 완료 • 現 ROC 적정하며, 현 과학화경계시스템 수명주기 고려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 AI 기술이 적용된 과학화경계시스템 확보 추진 * '26.2.23.(월) 입찰공고(재공고)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제안서평가 및 대상장비 선정 : '26.4월 ○ 시험평가 : ~ '26.11월 ○ 기종결정/계약 : '26.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 배터리 안보를 위해 표준화 규격 추진 및 군용 배터리의 국산 조달과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무기체계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배터리 및 하위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음. * 'KSS-II 용 연료전지모듈' 등 2개 과제 개발성공, '유도무기용 열전지 2종' 등 5개 과제 개발 진행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신규과제 발굴 : ~ '26. 3월 ○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 ~ '26. 9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A gain) 프로젝트나 T-50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체결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트럼프 정권 교체 이후 RDP-A 관련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에서 지속 검토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한.국방부를 지원하여 미측에 한-미 RDP-A 체결 필요성 제기 • 한측의 우수한 조선공급망 활용을 통한 미.조선업 발전 가속화 등 상호호혜적 이점 강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트랙' 제도* 신설, 관련 규정** 개정 완료 * 중소기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방식으로,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모두 중소기업으로만 구성하는 제도 ** 방사청훈령 제937호('26. 1. 12.)「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 제도 신설 이후 '26년부터 과제 공모 완료 및 선정 절차 진행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방산 중소기업들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보다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할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위산업 상생수준 평가 신설 ('26년 신규사업 반영) • 체계기업 대상 상생수준을 평가하고 수준별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방위산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나. 향후 추진계획** ○ 평가계획 수립 : ~ '26. 4월 ○ 상생수준 평가실시 : ~ '26. 11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9. 폴란드 등 일부 국가의 초대형 단일 계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주요 수출국의 정책변화나 지정학적 변수 발생 시 국내 방산업계 전체가 휘청일 수 있으므로 방산 수출국의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폴란드, UAE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현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권역별 전략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수출확대 추진 중 * 주요 수출국가('25년 16개국) 및 수출품목(K2, 천궁-II, 신궁 등) 다양화 • (북미) MASGA 프로젝트와 연계한 한-미 조선협력 확대 및 캐나다 잠수함 사업 범정부적 협력방안 제시 • (중동) 상대국 방산육성계획을 고려한 맞춤형 방산협력 제안 및 현지 협업으로 핵심 파트너 국가 입지 구축 • (유럽) EU, NATO의 역내국 중심 방산 협력 채널 선제적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럽 진출 기반 구축 **나. 향후 추진계획** ○ 한미 조선협력 Working Group 개최(26년 하반기), 한-NATO 방산협의체(26년 상반기) 개최, 한-유럽 개별국간 방산 군수공동위 개최(연중) 등 다양한 국가와 방산협력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0.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하므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입체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7년 전시회 지원사업 예산액 증액 추진 ○ 통합한국관 설치 · 운영 및 타국가 정부홍보관 벤치마킹으로 개선보완요소 지속 식별, 발전적 운영방안 강구 * '26년 통합한국관 운영일정 : 말레이(4월), 프랑스(6월), 폴란드(9월), 미국(10월) ○ 전시회 참가 중소 · 중견기업 현장 지원 및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전시회 참가 중소 · 중견기업 애로사항 점검 • 현지 KOTRA 무역관과 합동 간담회 및 현지 방산시장 동향 분석 ※ 관련기관과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방산전시회 기획 · 조정 역량 강화 **나. 향후 추진계획** ○ '27년 예산안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1. 방산기술 혁신펀드는 적극적 투자와 신속한 자금 공급이라는 펀드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질 없는 투자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방산기술혁신펀드는 현재('26.3월) 총 28개 방산관련(진출희망) 기업에 530억원 투자집행 중 • 이는 방위산업 관련(진출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목표금액(780억원)*의 약 68% 수준으로, 투자기간 경과율(49%) 고려 시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 중 * 총 조성규모 1,300억원 중 60%(주목적 투자비율) ○ 차질없는 투자집행을 위한 운용사 협조 및 집행현황 점검('25.12월 / 반기별)을 통해 적극적 투자와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한 노력 지속 **나. 향후 추진계획** ○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집행 : 계속(수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2. 현재 구축함은 해외에 수출 전례가 없는데, 국내 기술력을 결집해 수출연계형 모델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26~'32) 사업 진행 간 국내 기술력이 결집된 수출연계형 모델로 확대 추진 •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입찰공고('26. 3.~5.), 제안서 평가/협상 후 계약 체결('26. 7.) **나. 향후 추진계획** ○ 상세설계검토(CDR) : '28. 3. • 설계검토 간 조선소, 해군, 사업팀, 기품원 등 수출연계형 모델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3.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의 전례를 참고하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체계업체·중소기업간 직접 계약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인센티브 제공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방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제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공고('26.2~3월) 後 수행기관 선정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용역 착수 수행 : '26.4 ~ 6월 ○ 방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개정 발의 : '26. 上 * 구체적인 추진방안 검토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4. K-2전차 등 방산물자에 희토류 사용하는데,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일정 물량을 비축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된 관계로 산업부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 관련 협조 추진 ○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희토류 관련 물자의 국산화R&D 과제 추진('26.2. 과제 선정)을 통해 관련 물자의 국산화를 통한 대비책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산업부와 협조하여 희토류 및 핵심광물 비축분을 방산업체도 충분한 양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추진 ○ 희토류 관련 물자 국산화 R&D과제 추진하여 향후 공급망 문제 대비책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5. K-9 등 수출 무기에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안티탬퍼링 기초연구 과제 추진 중('22년~'26년) •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적용 기술(국과연) • 무기체계 심층방어 안티탬퍼링 기술(국기연) **나. 향후 추진계획** ○ 안티탬퍼링 응용연구 과제 추진 ('26년~) • 해상 무인플랫폼 안티탬퍼링 통합 기술(국과연) 연구 개발 추진으로 다계층 안티탬퍼링 대응 기술, 암호응용 기술, 무기체계 통합 개발 등 추진 ○ 수출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적용 관련 지침 개정 ('26년~) • 방산기술보호지침 개정으로 수출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적용 프로세스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6.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탐지 시스템 구축 현황 파악 후 소관 규정 관리기관 (방첩사, 국정원)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무선백도어 국내 제조사와 업무협의('26. 1월) • 국내 무선백도어 탐지 장비 제조사 : 총 2개社 • 방산업체 대상 해당 장비 납품실적 : 없음 ○ 업체에서 무선백도어 탐지 장비 구축 또는 장비 임대 지원 요청 시,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서 절차(신청-심사-지원)에 따라 지원 가능함을 검토 완료('26. 1월) 【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중소 방산업체/방산협력업체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때 일정비율 구축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무선백도어 탐지 장비 구축(또는 임대) 신청 시 지원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7. AI시대를 대비하여 국방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 방산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방산 클라우드의 체계적 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방산클라우드 구축 관련 검토('25.10월) • 방산클라우드 개념(안) : 방위산업체 및 관련 기관이 보안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업무전반(행정, 운영, 연구개발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통합 제공하는 보안형 클라우드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위한 방산기술보호 가이드에 관한 연구 수행 중 (방첩사 보안연구소, '26.3월 ~ 1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방산 클라우드 구축 시 보안성 확보 방안 수립 예정('27년~) • 클라우드용 방산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8. 방산클라우드 사업은 현재 「방산보안업무훈령」과 「클라우드시스템 보안관리 지침」에 근거해 추진되는데, 방산업체 등과의 협업 등을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산기술보호 가이드에 관한 연구의뢰 • 방첩사 예하 보안연구소에 연구의뢰('26.3월) - 방산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방산자료, 방산기술 등 데이터 분류체계 연구 - 방산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준(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기준 관련 연구 수행 중(~'26.1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방산 클라우드 관련 법/지침 등 개정 • 방산기술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지침 개정 ('27년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9. 방산클라우드 사업을 국방 R&D・정보화 예산과 연계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방산클라우드 구축 관련 검토('25.10월) • 방산클라우드 개념(안) : 방위산업체 및 관련 기관이 보안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업무전반(행정, 운영, 연구개발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통합 제공하는 보안형 클라우드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위한 방산기술보호 가이드에 관한 연구 수행 중 (방첩사 보안연구소, '26.3월 ~ 1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방산 클라우드 관련 법/지침 등 개정 • 방산기술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지침 개정 ('27년 ~) ○ 일부 대형 방산업체에서 방산클라우드 시범 적용 예정이므로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수렴하여 확대 여부 검토 ○ 방산 클라우드를 구축 및 활용 시 방산기술 보호 관련 원칙(정책적 측면, 기술적 측면) 및 세부 기술보호 기준을 제시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0.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협력업체라도 방산 공급망에서 비중이 큰 경우에는 방산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5.12월 :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 방산사이버보안 관제 및 협력업체 기술보호기준 구체화 등 반영 ○ ‘26. 1월 : 방사청 전반기 정책연구과제 추진 * 방산·협력업체 사이버보안 및 기술보호 관리기준(점검가이드 구체화) 제시 ○ ’26. 2월 : 관제대상 확대(방산업체→방산협력업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요구 ○ ’26. 3월~ : 미.사이버보안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 기품원 방산기술보호센터 주관 17개업체 대상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 ‘26. 3.10. *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및 예산 확보 관련 개정 추진 등 관련 규정 명확화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1.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는 방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5.12월 : 기술유출 위협분석 등 관계기관 토의 * 청, 국정원, 방첩사 등 관계기관 토의 ’정례화‘ 예정 / 협력업체등 특별점검 / 국정원 정보보호 점검 대상 확대 ○ ‘26년 정기실태조사부터 “체계업체의 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점검” 항목에 대한 배점 강화 (1.7점 → 3.0점) **나. 향후 추진계획** ○ 청·국정원·방첩사 기관합동 현장 점검 : ~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2. 현행법상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렴 서약서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하므로 청렴서약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거나 업체명의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방위사업 관련 부정당 제재 공백을 막기 위해 아래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청렴서약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거나, 국가계약법과 같이 청렴서약을 매개하지 않고도 제재하는 방안 • 방위산업 기술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현행 5년의 제재시효를 7년으로 상향하는 방안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부정당업자의 주의·감독 의무를 다할 시 제재를 면할 수 있는 방안 ○ 다만, 방위사업법 제정('06) 및 개정('20) 논의 당시 제기된 제한사항을 바탕으로 신중 검토 필요 • 직원 위반행위 제재 필요성 인정되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문제 제기 가능성('06) • 대표성 없는 직원 행위에 따른 제재는 비례원칙 위배되고 안보 공백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20)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상반기 내 국방부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방산업체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사항 식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3. 인도네시아와 북한이 방산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KF-21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5.11월 : KAI, 안티탬퍼링 적용 최종 토의 * '무기체계 기술보호 안티탬퍼링 적용 지침' 수립·게시(KAI, '26.3월) ○ KF-21 안티탬퍼링 연구용역(공군사관학교, '25년) 실시 *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주요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KAI 주관 설명회 실시('26.2월) ** KF-21 지원체계를 대상으로 안티탬퍼링 적용 KAI 주관 검토 중(~'26.4월)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정기 실태조사 시 유출 방지대책 확인('26.10월) * KAI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대한 방첩사 보안측정('26.9월) ** 보안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 국정원, 방첩사 합동 현지 실태점검 예정('27년) ○ KF-21 양산 관련 안티탬퍼링 적용을 위한 핵심기술과제 연구 예정 ('26년) * 수출용 항공기 항공무기체계 보호기술 개발 및 실증(잠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4. 2023년 기준 80억 넘게 방위산업진흥회에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방위산업진흥회의 방만한 운영과 내부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상근임원 자격요건 및 절차 정비 • 경영 전문성 부족, 방만한 운영 등 지속 제기되어, 조직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 필요 - 기존 경영진 역량 및 정부 관리감독 절차로는 고도화된 방위산업 환경 대응 한계 • 이사회 정관변경 의결('26. 1월) / 방사청 승인('26. 2월) - (부회장자격) 내규 자격요건(육군 중장·소장) 폐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정관 명시 - (절차 투명성) 방진회 내부 진행절차를 폐지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임원 추천 - (감독강화) 상근임원 임명을 보고 사안에서 방사청장 승인으로 변경하여 절차적 적절성 확인 ○ 신규 상근임원 선발 중 ('26. 3월~) • 정관변경 반영하여 상근부회장 선발 공고(3.16) • 인사위원회 추천, 이사회 의결, 방사청장 승인으로 '26. 6월 말 취임 예정 • 상근 전무이사 등 후속 선발 추진(7월~) - 상근임원 임기가 3년으로 동일하여, 임기 종료 후 공석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순차적 선발 **나. 향후 추진계획** ○ 상근임원 취임 후 방진회 내부감사 개시 이행 독촉('26. 7월) ○ 방진회 운영성과에 따른 감독부처 관리강화 방안 검토(~ '26. 9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5. 선진국의 국방우주체계를 따라잡기 위하여 예산과 인원 확보에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예산) ’26~’30 국방중기계획 기준 ’26년 1,561억원, ’27년 2,702억원, ’28년 3,115억원, ’29년 4,516억원, ’30년 5,216억원 등 국방우주사업 추진을 위한 방사청 예산 요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상 ○ (인원) ’26년 1월 1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1개 사업팀을 신설(2명 증원)하여 사업관리 수행능력 보강 * 국방우주TF(4명) → 우주기반체계사업팀(6명) ※ 추가로 사업부서는 ’27년 정기직제에 국방우주 사업관리 분야 인력 4명 증원 요구(’26. 3.) **나. 향후 추진계획** ○ (예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조,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 *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 필요 ○ (인원) 국방우주 분야 사업팀을 현재 3개 팀에서 향후 5개 팀으로 확대하고, 정원을 현재 26명에서 향후 50명 이상 수준까지 확대하여 ‘가칭국방우주사업단’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나아갈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6. 블록화되고 있는 유럽 방산분야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컨트롤타워와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유럽 등 방산수출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산 전시·수출·국제협력 통합 지원을 위해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신설('26. 1월) ○ 對유럽 및 권역별 방산수출 수요창출 등을 위해 인력 보강 추진('26년 행안부 정기직제 요구) • EU 다자간 협력 및 북미·아시아중남미·중동 아프리카 방산협력 지원 인력 증원 **나. 향후 추진계획** ○ 정기직제 관련 행안부 협의 : ~ '26. 7월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 '26.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7.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일회성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금 마련하여 제도적 유연성과 재정적 지속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기금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안)을 한정애·추미애 의원('26.1월),안도걸 의원('26.3월) 입법발의 완료 • 한정애·안도걸 의원 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법률) • 추미애 의원 법률안 (방산수출 진흥기금법률) **나. 향후 추진계획** ○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세부 시행법안 검토(~'26. 上)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8. 방위산업 분야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부실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K-방위산업 ESG 지표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26.1.15.) ○ 산업부(한국생산성본부)와 방산업종 K-ESG 지표개발 추진 협의(’26.1월~) **나. 향후 추진계획** ○ 방위산업 ESG 지표 개발 : ~‘26.12월 • 의견수렴 및 지표 추진방향 협의 : ~‘26.4월 • 지표(안) 마련 : ~‘26.8월 • 간담회 개최 : ~‘26.12월 ○ 관련규정 개정 : ‘27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9. 정부의 지역공약과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국방신속획득 기술연구원의 이전 및 통합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을 보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ADD 111차 이사회결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민군협력진흥원과 통합하여 (가칭)민군융합기술원으로 통합 예정으로,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국방부 협의 하 舊 홍보원(용산)으로 ’26. 7월 이전 예정임. **나. 향후 추진계획** ○ ’26. 4~6월 : 구 홍보원 철거 및 내부공사 ○ ’26. 7월 : 신속원 이전(기상청 → 구 홍보원)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국방과학연구소는 미활용 특허를 정리하고 기술이전 및 무기체계 적용 등 실질적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미활용 특허 정리 및 이전가능기술 공개 확대 • 특허소멸 조사 정기적 시행 및 소멸 권고 - 보유특허 진단사업을 통한 특허 활용성 객관적 평가 * 정량/정성분석, 발명자 인터뷰, 특허 등급 선정 - 소멸특허 확대 및 특허 관리예산 절감 * 소멸특허: ('24년)275건→('25년)290건(+15건) • 실질적 활용을 위한 특허 민간 공개 확대 - 이전가능기술 발굴 및 국방기술거래장터 공개 * 이전가능기술: ('24년)238건→('25년)332건(+94건) * 특허 공개: ('25년)3,471건→('26년)3,803건(+332건) - 민간기술거래 플랫폼 협력 및 기술 공개 * 약 3,800건 특허 공개(발명진흥회 IP-Market, NTB 기술은행, 대덕특구 TIMS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미활용 특허 대상 진단 및 소멸조사 시행('26.4월) ○ 공개된 국방기술 특허 정보 최신화 • 국방기술거래장터 분기별 최신화(등록/삭제) • 민간기술거래 플랫폼 지속 업데이트 및 관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국방연구개발 시험장 이용 애로사항 중 1순위는 시험평가 관련 기관 협조의 어려움(사전 예약 등), 2순위는 시험평가에 적합한 시험장비・시설 및 시험장소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매년 연구소 내·외부로부터 요청되는 시험 소요를 제출받아 연간계획 수립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0조(시험평가계획 수립, 확정 및 수정), 「시험업무규정」 제5조(연간 시험일정계획 수립) ○ 확정된 연간계획에 기반하여 시험 수행 중이며, 시험장의 일정/자원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비계획 시험 최대한 수용 중 * '25년도 연간계획 총 1,860건 중 연구소 외부의 시험(기술용역) 건수는 1,123건으로 전체 시험의 60%수준 **나.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연구소 내·외부로부터 시험소요를 제출받아 차년도 연간계획 확정 후 시험수행 ○ 시험장비·시설 및 시험장소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확대 지속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등이 공동기술개발을 한 후 기술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소유권이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현행 법적 근거 검토 완료('26.3월)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21.4.1. 제정시행, 이하 '촉진법') 제10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 근거 -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의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 종료 후 방위사업청장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동소유 가능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관련 검토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지원 중 •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타당성, 국방연구개발사업 관점에서의 적정성, 공동소유 전환의 적합성 판단을 돕기 위한 검토 등 ○ 향후에도 관련 검토 요청 시 적극 협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사격 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상풍력발전 조성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와 조정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해상풍력TF에 참여하여 해상풍력 대응방안 수립('25.9월 ~ '25.12월) • 시험사격 구역을 '부동의' 구역과 '조건부동의' 구역으로 구분 • 각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해양입지컨설팅 협의요청에 대하여 구분된 기준으로 적극 회신 **나.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와 조정 등 노력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국방신속획득 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신속사업의 소요기간과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의 근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신속시범사업의 사업기간과 전문계약직 근무기간 간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채용 기준 개선 • 총 사업기간(30개월)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최대 33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인력 충원 소요 제출('25.9.17.) • 2025년 제13차 신속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문계약직 충원계획(안) 확정('25.9.30.) • 2026년 1차 공개채용에서 신속시범사업 관련 전문계약직 채용 완료(총 6명, '26.4.1. 입소 예정) - 계약기간은 임용일부터 사업 종료 후 3개월까지 **나.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신속시범사업 전문계약직 채용 시 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하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감사원의 무인기 관련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연구개발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징계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연구개발 위축 방지를 위한 감사 및 징계 절차 적절성 검토 완료('26.3월) • 감사 처분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감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징계 요구의 타당성 검증 • 피감사 대상 및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 감사 과정 내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불공정 감사 시 감사담당자 변경 요구권 부여 - 징계심의 전 소명자료 사전 제출 안내 및 위원회 출석 시 충분한 진술 기회 부여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징계 심의 절차 운영 - 변호사, 노무사, 공공기관 관련 종사자 등 외부위원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구개발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 지속 추진 • 감사·징계 우려 없이 소신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제도' 지속 운영 •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징계 요구 건 심의 시, 외부 징계위원 참여 확대 • 진술 시간 등 절차적 소명 기회를 적극 보장하여 연구활동위축 선제적 차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고성능 무기체계, 신규 무기체계 시험장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 협력을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우디아라비아 대상 시험장 협력 제안 * 과제명: 대공 무기체계 비행시험을 위한 공동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사우디 국방부 방문 시 현지 제안('24.5.) • 사우디 국가방위부 방문 시 현지 제안('25.1.) ○ UAE 대상 시험장 협력 제안 * 과제명: 대공 무기체계 비행시험을 위한 공동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두바이에어쇼 기간 중 타와준위원회 참석한 한국 공군 주관 '블랙이글즈 나이트' 행사 시 제안('25.11.) • 첨단기술연구위원회(ATRC) 방문 시 현지 제안('25.11.) ○ 방사청-UAE ATRC 간 국방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26.2.) • 협력범위에 '국방장비 시험시설의 활용' 포함 ○ 한-UAE 국방부 간 전략적 국방 파트너십(SDP) 프레임워크(안) 중 우선과제에 포함 제시('26.2) • 한.국방부 우선과제 중 '한-UAE 무기체계 시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UAE측에 제시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우디 및 UAE 협력대상 연구기관과 실무회의 시 우선 협력과제로 협의 추진 * 대상기관: GADD(사우디국방연구소), ATRC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특수조건을 개선하도록 표준지침 개정 또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계약특수조건 개정('24.12.9.) • 개정내용: 경쟁입찰로 체결된 개산계약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 ○ 시정처리요구 제기 의원(강대식 의원실) 대면설명 실시('25.10.28) • 수의계약건에 대한 계약금액 초과 추가정산을 위한 검토 내용 설명 - 정산 시 실발생 비용 보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의 어려움 *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또는 계획사업의 축소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차질 우려 - 과도한 정부 예산 지출 및 비용보상 형평성 문제 우려 *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유인 감소로 인한 과도한 정부 예산 지출 우려 및 동일 사업 내 계약 방법(경쟁 또는 수의)차이에 따른 비용 보상 형평성 문제 **나. 향후 추진계획** ○ 경쟁계약 건에 대한 계약특수조건 개정사항의 안정적 이행 ○ 수의계약 건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시험평가 과정에서 연구원이 잠수함과 비행기 탑승 시 위험수당 인상	**가. 시정·처리결과** ○ '27년 국과연 인건비 사업에 위험수당 증액 추진 • 잠수함/수상함 승선인원 : 국방 출연기관(기품원·국기연) 수준 요구 • 시험비행기술사(항공기 동승조종사) : 공무원(항공수당(갑) 영관급) 수준 요구 **나. 향후 추진계획** ○ 예산 증액토록 유관기관과 지속 노력

국 방 기 술 품 질 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국방 AI의 예측 불가능성은 실전 상황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향후 AI적용 무기체계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은 AI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국방인공지능안전 연구조직’ 등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인공지능법안 발의(‘26.1.27.) • 의안번호 2216355(유용원, 부승찬 의원 등 33인) •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치 포함(제12조) ○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기획 연구용역 추진 • 연구내용 - AI 안전 개념 정립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 - 안전연구조직 신설 필요성 및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 파급효과 분석 • 기간 : 계약일 ~ 150일 • 추진내용 : 계획보고(2월), 일상감사 및 입찰공고(3월), 계약(4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인공지능법안 제정 지원(~제정시까지) • 법안 추진내용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방위 법안소위 검토의견 제시 등 지속 지원 예정 ○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기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 연구용역 착수회의(5월) • 중간평가(8월) 및 최종평가(10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탄약시험장 인프라 부족 및 해외・해상 시험의 한계(기술 유출, 비용상승, 시험 제한 등)를 고려하여, 국방기술품질원 고성능 탄약 전용 시험장 구축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을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다목적 특화시험장 구축기획 연구용역 추진 • 연구내용 - 기존 시설 사거리 부족 등 물리적 한계와 민원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 시험장 구축계획 수립 • 기간 : 계약일 ~ 8개월 • 추진내용 : 계획보고(1월), 일상감사 및 입찰공고(3월), 계약(4월) **나. 향후 추진계획** ○ 다목적 특화시험장 구축기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 착수회의(5월) • 중간평가(9월) 및 최종평가(12월) • 연구용역 완료 후 기품원 국방중기계획 예산 반영 추진(~27년초)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정부가 강조하는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업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44.5%로 과도하므로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기간제 운영 효율화 추진 • 과제관리책임자(기간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인력의 고용안정성(최대 4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 「국기연 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자 운영지침」 제정('26.2.2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외조항 적용 ○ 정규인력 확보 추진 • ('26년 인력증원) 정부 국정과제 [방산 4대강국 진입] 이행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설립이래 최대규모 23명 정규인력 확보 • ('27년 인력증원) 방위사업청으로 정규직 인력 123명 증원소요 건의 **나. 향후 추진계획** ○ 정규인력 확보 추진(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단계적 독립 법인화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독립법인화 추진에 대한 국방부, 방사청 등 관련기관 공감대 형성 • 출연기관 혁신토론회 발제로 방사청 및 모기관(기품원) 등 독립법인화 추진 필요성 공감대 형성('25.12.19.) • 국방부 외청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속조치 사항으로 선정('26.1.14.) ○ '27년 독립법인화를 목표로 입법 추진 • 독립법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수립('26. 3.) •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실 대상 대면설명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독립법인화 추진(지속) •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대상 설명 - 입법과정에서 재경부(공공기관 관리), 기획처(예산관리) 의견 '동의' 확보를 위한 지속설명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서 심사기준인 ‘군 운용성 향상’ 평가항목 추가 이후 부품국산화 과제선정에서 탈락한 단종부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단종부품 확보 추진 • 규정개정으로 부품국산화 품목 선정기준에 ’군 운용성 향상‘을 반영하여 단종부품 개발 지원 中 * 패트리어트 발사대용 15kW 전원공급기 등 16개 과제 추진(’25년 기준) •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외 연구개발기관(기업)의 단종부품 국산화 개발을 장려하기위하여 시험평가비용을 지원 中 * 단일 개발사업에 한하여 최대 3억원 지원 ○ 부품국산화 예산확대 추진 • 부품국산화는 단종부품, 공급망 안정화 필요품목, 첨단 소재·부품 등 지원범위가 넓어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함 • 단종부품 등 국산화 개발품목 확대를 위해 방사청으로 ‘27년 부품국산화 예산(신규과제) 증액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부품국산화 예산확대 추진(지속)